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76-01

#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이 계 임 연구 위원  
한 재 환 전문 연구 원  
손 은 영 연구 원  
제 철 응 한 양 대 교수  
백 태 응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위 태 석 농 촌 진 흥 청  
봉 영 준 한 양 대 학교  
안 수 길 한 양 대 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 담당

이계임	연구위원	연구 총괄, 1~8장 집필
한재환	전문연구원	2장 집필
손은영	연구원	자료 수집 및 분석
제철웅	한양대 교수	5~7장 집필
위태석	농진청 박사	5장 집필
백태웅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	5장 집필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식품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1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참여자 : 한재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은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철웅 (한양대학교)

위태석 (농촌진흥청)

백태웅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

## 머 리 말

---

식품은 헌법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능 확립과 식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규제의 분산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성·통일성·책임성·신속성이 결여되어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상호 정보 공유 미흡으로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수요자 조사,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식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 선호변화에 대응한 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전문가 여러분과 설문에 응해주신 업체, 소비자단체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

2008.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 요 약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평가,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검토를 통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식품법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약 200건으로 식품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수법이 존재한다. 식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하면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들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품산업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는 5가지로 평가 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 중에는 전체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기본법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식품위험 정보 수집·위험평가기능·위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이 소홀해지며, 지자체에서도 업무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 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식품위생법도 기준·규격, 표시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

함하고 있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며, 진흥법제의 요소인 기금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관련법의 운용과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은 것(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과 관련법과 관리기관의 분산(전통식품·농업경영체와 소비자단체)을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본법’제정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단체가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의 소관부처로 가공업체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의 통합에 대해서 업체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업체에서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하는 것에, 소비자단체는 안전과 진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산지 표시’, ‘HACCP’, ‘유기식품인증’, ‘식품이력제’ 등이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평가와 법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기본법(178/2002/EC)”이 상위법 위치에 있으며, 그 아래 지침이나 명령 형태의 식품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식품기본법”의 기본 목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 관리이며, 사료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영국의 식품법은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식품성분·표시·위생·신종식품·위해물질 등을 모두 시행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식품법에서는 식품의 위험관리와 위험평가가 구분되어 있고 식품안보를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독일 식품법의 특징은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위생·안전을 모두 책임지고 식품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세부사항을 규칙(시행령)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가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차원의 식품검사청(CFIA)과 보건부가 식품안전에 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캐나다 식품법은 “식품의약품법”에 근거를 두고 그 외의 법은 “식품의약품법”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육기본법”이 내각부 소관이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대부분 법을 관장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법은 대체로 품목별로 통합되어 있으며, 안전성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식품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품 관련 법률은 국제적 기준과 소비자 선호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식품산업 정책의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식품 관련 법률 체계의 중장기 개편안은 ‘식품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안’이다.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이 상호 분리되기 어려운 식품의 품질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 품질 관련 법률들을 포괄하는 형태의 기본법을 구성하였으며, 식품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을 구분한다. EU, 영국, 독일의 식품법이 대표적 사례로 분산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나, 기존 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소관부처의 반발이 예상된다. 단기 개편안은 ‘식품품질관련 법률 통합안’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인 식품의 품질 표시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식품품질 표시법(가칭)”을 제정하는 안이다. 이 안은 캐나다와 일본 사례와 유사하며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여전히 법률적 중복과 모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제정과 관련 법률 간의 조정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현재 법률체계 하에서 법률 조항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의 품질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련된 항목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품질표시, 검사, 식품단체 및 기금 관련 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최소화 하고 법 개정의 시행자 및 수요자가 개정 시기를 예측하여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를 위해 해설서와 Q&A집 발행,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ABSTRACT

##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Food-Related Law Structure

Food-related domestic laws are administered in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his results in a lack of specialty, unity, and responsibility which could be accomplished in a single government department in implementing food-related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n improvement for food law structure for efficiently administering food law by examining the food law structures of several foreign countries and carrying out consumer and food company surveys.

There are four main problems in domestic food law structure. First,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have their own food-related laws and are in charge of many services, causing unnecessary cost and resource spending by bringing about redundancy and distribution of regulation. Second, various food operating systems make food agencies inefficient and delay coping with the food safety incidents. Third, food labeling-related law is separately operated in commodity units and the scope of target commodity is not clearly defined, thus making unclear the locus of responsible agency when coming about food accidents. Lastly, regulation of food law of each department is an obstacle to constructing mutual sharing among different agencies.

A domestic food-related law structure is evaluated in five aspects. First, currently, there is no food fundamental law covering all foods, and it is scattered accord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Second, since objectives of most food-related laws are associated with hygiene, safety, quality show and industry promotion, their roles are not clearly defined and related contents tend to be repeated. Third, food law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are independently worked in several departments. Fourth, laws related to food labeling are included in individual law in commodity units, and those are not regulated in the upper law. Fifth, a range of food industry is ambiguous in law for promoting food industry.

As a main problem of domestic food law structure, food manufacturers, processors, and food hospitality industries indicate that there are too many related laws, whereas traditional food industries, agricultural management groups, and consumer groups point out that food-related laws and departments

are dispersed. Food industries and consumer groups all agree with the unification of food-related laws.

A medium-and long-term plan for a food-related law structure is to enact food fundamental law including both the existing ‘food safety fundamental law’ and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fundamental law’, and to comprehend laws related to food qualities. An advantage of this plan is to solve many problems that the dispersed food law system could bring about by unifying food-related laws into one law. However, a disadvantage of the plan is an extensive adjustment of food law structure and an opposition of the existing institutions. A short-term plan is to extract common factors applicable to food quality labeling of agricultural, marine, livestock products and their processed products and enact a unified law about food qualities. This plan provides a benefit to maintain a balance among institutions by role assignment and mutual control, whereas legal overlapping and contradiction may occur due to a share of work responsibility.

For a rational improvement of food law operation law revision should be regularly enforced to minimize unnecessary cost and make law demander, such as consumers and food companies, cope with new law environment. In addition, the publication of law handbook or question and answer(Q&A) need to be considered for relevant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law demands.

Researchers: Lee, Kyei-Im, Han, Jae-Hwan, Son, Eun-Young

Research Period: 2008.6~11

E-mail address: lkilki@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2
3. 연구의 내용 .....	5
4. 연구 범위와 방법 .....	6

### 제2장 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1. 식품 관련 법령구조의 현황 .....	9
2. 식품 관련 법체계와 주요 식품 관련법 내용 .....	14
3. 식품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	19

### 제3장 식품 관련 법률의 체계 및 규정 평가

1.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 .....	20
2. 식품 관련 법 규정의 모순·불일치 .....	29

### 제4장 수요자의 식품 관련 법 실행 평가

1. 조사의 개요 .....	49
2.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 .....	50
3. 식품 제도 관련 규정 .....	54
4. 식품법 적용 관련 평가 .....	58

### 제5장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현황과 시사점

1. EU .....	61
2. 영국 .....	66

3. 독일 .....	71
4. 캐나다 .....	78
5. 일본 .....	85

## 제6장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방안

1. 법률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	101
2.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안 검토 .....	103
3. 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 .....	120

## 제7장 식품 관련 통합법률(안) 개요

1. 식품기본법(가칭)의 개요 .....	126
2.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개요 .....	129

## 제8장 요약 및 결론

부록 1. 유럽연합 기본명령 178/2002 .....	4
2. 영국 식품안전법 및 식품기준법 .....	179
3. 독일의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FGB) .....	27
4. 일본의 식품 관련법 .....	264
5. 국내 식품 관련 법률 .....	289
참고문헌 .....	372

## 표 차 례

---

### 제2장

표 2-1. 식품과 간접 관련 법률 현황 .....	3
------------------------------	---

### 제3장

표 3-1. 식품 관련 기본법 비교 .....	1
표 3-2. 식품 관련 법체계 내 용어 정의 .....	2
표 3-3. 식품별 관련 법 비교 .....	4
표 3-4. 식품안전 관련 법조항 비교표 .....	5
표 3-5. 품질관리 법조항 비교 .....	8
표 3-6. 식품에 대한 정의 비교 .....	9
표 3-7. 식품표시관련 법률에서 가공식품 범위규정 비교 .....	2
표 3-8. 식품 관련 업종의 허가 및 신고 관련 법률 비교 .....	4
표 3-9. 식품의 기준·규격 .....	5
표 3-10. 표시 및 인증 관련 법률 표시제도 현황 .....	7
표 3-11. 유기식품인증 관련 관리기준 비교 .....	8
표 3-12. GMO표시 관련 법 비교 .....	9
표 3-13. 원산지 표시 관련 법 비교 .....	11
표 3-14.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법 비교 .....	14
표 3-15. HACCP 관리 현황 .....	44
표 3-16. HACCP 관련 법 비교 .....	54
표 3-17. 식품별 표시항목 비교 .....	64
표 3-18. 가공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비교 .....	74
표 3-19. 표시기준, 표준규격의 법간 비교 .....	84

## 제4장

표 4-1. 식품 관련 법률체계 문제점 .....	6
표 4-2. 식품기본법 제·개정 필요성 .....	7
표 4-3. 식품기본법 소관 부처 .....	7
표 4-4. 식품 관련법 통합 방향 .....	8
표 4-5. 식품 관련법 통합 기준 .....	3
표 4-6. 표시 및 인증 사항 통합에 대한 평가 .....	3
표 4-7. 여러법에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 평가 .....	4
표 4-8. 업종별 HACCP 적용법률 수 .....	5
표 4-9.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	5
표 4-1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	6
표 4-11. 식품이력제에 대한 평가 .....	6
표 4-12. 벌칙형량에 대한 평가 .....	7
표 4-13. 벌칙조항 형량하한제로의 변경에 대한 의견 .....	7
표 4-14. 표시와 관련한 법의 개정 빈도 .....	8
표 4-15. 법 조항의 이해 정도 .....	9
표 4-16. 법 이해 어려움 발생 시 해결방법 .....	9
표 4-17. 식품 관련법의 홍보 수준 .....	10
표 4-18. 식품 관련법의 교육 수준 .....	10

## 제5장

표 5-1. 정부부처간 협력 예 .....	7
표 5-2. 영국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	9
표 5-3.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의 주요 내용 .....	47
표 5-4. 유제품에 관한 규칙 사례 .....	7
표 5-5. 온타리오 주 육류가공업자에 규정되는 법규 사례 .....	9
표 5-6. 식품의약품법 내 식품 관련 기본정책 조항 .....	8

표 5-7. 식품의약품법 내 운용과 집행 조항 .....	8
표 5-8.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내용 .....	8
표 5-9. 식품안전 관련 단계별 적용법률과 소관부처 .....	8
표 5-10. 일본의 식품표시관련 법 .....	8
표 5-11. 식품·첨가물 등의 성분규격기준의 예시 .....	9
표 5-12. 일본의 식품표시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관련 사항 .....	9
표 5-13. JAS규격의 품목과 규격의 예시(일반 JAS) .....	19
표 5-14. 건강과 영양에 관한 표시를 실시하는 제도 .....	2
표 5-15.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표시내용의 특징 .....	2
표 5-16. 식품안전 및 품질관련 분야별 소관부처와 관련법규 등의 개요 .....	3
표 5-17. 일본의 식품산업관련 주요대책 .....	6
표 5-18. 소비자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 .....	9

## 제6장

표 6-1. WTO 하의 식품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가 적법할 수 있는 기준 .....	12
표 6-2. 다른 나라의 식품에 대한 정의 .....	13
표 6-3. 식품산업관련 협회의 소속 법률에 대한 의견 .....	15
표 6-4. 진흥법에서 협회관련 조항 포함 사례 .....	15
표 6-5. 식품진흥기금의 소속 법률에 대한 의견 .....	16
표 6-6. ‘기금’이 언급된 법 .....	16
표 6-7.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별 주관법률 성격 검토 .....	18
표 6-8. 식품 관련 법률별 개정 건수(2007년 기준) .....	2
표 6-9. 법 해설서 및 Q&A집의 필요성 .....	14
표 6-10. 식품 관련법 홍보증진 방안 .....	15



## 그림 차례

---

### 제1장

그림 1-1. 연구체계도 .....	8
---------------------	---

### 제2장

그림 2-1. 소관부처별 식품 관련 법률 현황 .....	0
그림 2-2. 식품안전 관련 법 체계 .....	5
그림 2-3. 식품품질 관련 법 체계 .....	6
그림 2-4. 식품산업 관련 법체계 .....	8

### 제4장

그림 4-1. 법의 통합 중요성 .....	2
-------------------------	---

### 제5장

그림 5-1. 건강소비자국 체계도 .....	8
그림 5-2. 유럽연합 식품기본법의 체계 .....	6
그림 5-3. 정부기관 협력관계 .....	6
그림 5-4. 영국의 식품법 체계 .....	8
그림 5-5.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조직도 .....	27
그림 5-6.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 근거한 규칙의 체계 .....	37
그림 5-7. 일본의 식품 관련 법체계 .....	8
그림 5-8. 식품안전관련 법체계 .....	8
그림 5-9.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대응관계 .....	9
그림 5-10. 식품안전 및 식교육 관련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대응관계 .....	9

**제6장**

그림 6-1.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도(제1안) .....	6
그림 6-2.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도(제2안) .....	6
그림 6-3. JAS법에 관한 Q&A .....	13
그림 6-4. 법 해설서 .....	14



# 제 1 장

---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1. 연구의 필요성

식품은 헌법이 설정한 최고의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국가로부터 법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기능 확립과 식품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면 현행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다수의 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어 규제의 분산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고, 전문성·통일성·책임성·신속성이 결여되어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상호 정보 공유 미흡으로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 및 캐나다 등지의 식품 관련법은 상하위 법률체계가 명확하고, 상호 견제 및 역할 분담이 분명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역사적으로 식품 관련 법률 간의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관점과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 식품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식품법 사례를 참고하여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방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식품 관련 정보가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소비자 선호변화에 대응한 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체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1.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평가,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검토 등을 바탕으로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민의 복리후생 증진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식품법에 대한 기업체, 소비자, 농어업생산자, 식품 관련 전문가, 법률가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주요국의 법체계 식품 관련 '규제'와 '진흥'법 사례를 검토하여 식품법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식품법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식품안전관리와 표시제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양병우 외(2003)는 우리나라의 식품 관리체계가 포괄적 식료정책적 접근방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부처분산적 관리체제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반면 EU는 식품법의 대상에 가축의 사료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식품법 일반원칙에 식품과 관련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였다.

영국 역시 1999년 식품기준법을 시행하여 식품기준청을 설립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식품·필수품법’이라는 식품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식품위생정책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했던 법률체계를 개편하여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며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광명섭(2004)은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종류별, 소관별로 다원화 되어 있어 일관성 및 효율성이 부족하고 업무의 혼선, 안전관리 미흡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 캐나다는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을 설립하여 업무중복을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였고, 영국도 2000년에 분산된 수입식품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식품기준청(FSA)을 설립하는 등 우리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관리에 있어서도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교육청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협조를 통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류창호(2004)는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덴마크)의 식품안전법제에 관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을 분석하여 식품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식품은 단계별 위해원인 규명과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운 경우가 많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식품안전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최지현 외(2004)는 선진국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분석 원칙 도입을 위해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한 EU(EFSA), 프랑스(AFSSA), 영국(FSA)의 사례와 식품위험관리가 특정기구에 집중되고 일원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영국(FSA), 캐나다(NZFSA), 덴마크(DVFA), 스웨덴(NFA) 등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진국 검토 결과를 반영한 법령과 관련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이원우외(2007)는 식품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법제를 식품안전성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 다양한 소비자 요구의 반영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식품안전법제 개혁과제로 우선적으로 식품안전조직의 일원화를 위해 리스크 평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식품내용물, 취급·관리제도, 정보전달 등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내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외에, 해외사례만을 살펴본 케이스도 있는데 유영철(2004)은 주요 선진국 식품행정체제의 변화와 방향에서 영국의 경우 식품기준법의 승인에 의해 식품안전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식품기준청(FSA)을 설립하였다고 하였고, 일본에서도 후생성과 농림수산성의 역할분리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던 식품행정체계를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안전정책 총괄 및 위험평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이기현(2006)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험분석 체계를 도입한 선진 각국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 EU는 2002년 종합식품법 제정 및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하며 식품행정에 일정한 지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일본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위기감 및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뒤이어 식품안전위원회 설립, 식품위생법 개정등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식품안전기본법(안)에도 위험분석 체계가 반영되어 법제화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식품표시에 관한 연구로 이계임 외(2004)는 농산물관련 표시제도를 대상으로, 이계임 외(2005a)는 전체 식품표시제도를 대상으로 운영체계와 수요자 평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계임 외(2004)는 농산물품질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GAP등 주요 인증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방안에 대해 시사하였으며, 이계임 외(2005a)는 식품표시제도관련 법 통합화와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계임 외(2005b)는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법률적 분석, 소비자·가공업자·전문가의 의견, 주요국(일본, 미국,

EU)의 원산지표시제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안전과 표시 외에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이세정(2006)의 연구가 있다. 이세정(2006)은 건강기능식품법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서 분류되었던 품목을 건강기능식품법의 관리대상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용어의 혼재가 우려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허가, 수입/판매 신고등에 대해 과다 규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식품 관련 법률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내의 법체계를 검토한 사례가 다수이며, 그 밖에 GMO표시, 기능성식품 등 구체적인 제도 관련 검토 연구가 있었다. 반면 전체 식품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으며, 외국 사례조사도 주로 안전 관리 관련 정부조직 체계가 주로 검토되었으며, 식품법 체계 전반을 검토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의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 관련 법령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 관련 법률의 체계 및 규정 평가, 수요자의 식품 관련 법 실행 평가,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현황과 시사점,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방안 등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제3장 식품 관련 법률의 체계 및 규정 평가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당면 이슈를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평가하고, 식품 관련 법 규정의 모순·불



일치 현황을 검토하였다.

셋째, 제4장 수요자의 식품 관련 법 실행 평가에서는 식품업체, 농어민경영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넷째, 제5장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대상 국가는 EU,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이다.

다섯째, 제6장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방안에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과 효율적인 법체계 개편을 위한 법령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제7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통합법률(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다.

## 4. 연구 범위와 방법

### 4.1.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 식품 관련 법률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음식업, 물, 소금 등 모든 종류의 식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음식업 관련 법률이며, 간접적으로 산업, 상품, 국민 건강 등과 관련된 법률들이 검토된다.

외국의 식품 관련 법체계 조사의 사례국가는 국가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와 법체계 성격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EU 법은 유럽 국가의 식품 관련 법체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유럽 국가별 법률체계와 함께 검토대상에 포함되었다. 영국과 독일은 단일법체계를 가진 국가로서 동일하나 식품 관련 소관부처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어 각각 분석대상에 선정되었다. 캐나다는 프랑스법제·영국법제·미국법제가 혼합되어 독창적인 제도를 형성한 나라로서 검토대상이 되었

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법률 및 법제도에 많은 영향을 준 나라로서 구체적인 법체계 방향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 4.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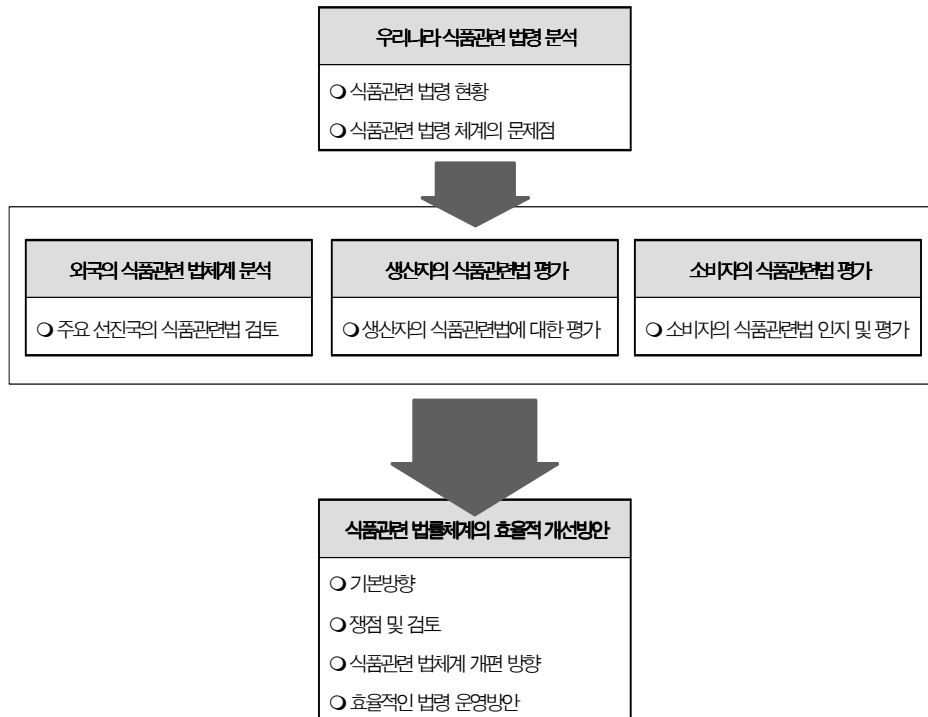
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국내외 법령과 관련 연구 검토가 추진되었다. 관련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양곡 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먹는물 관리법”, “주세법”, “학교 급식법” 등이다.

외국의 식품 관련 법률 현황 조사를 위해 전문가 연구위탁이 추진되었다. EU, 영국, 독일의 식품 관련 법률체계 검토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제철웅교수가 담당하였다. 캐나다의 식품 관련 법률 검토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법학과 백태웅교수가, 일본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의 위태석박사가 담당하였다.

식품 관련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식품업체, 농어업경영자, 소비자단체 각각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거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공업협회, 음식업중앙회, 농업CEO연합회, 김치절임조합, 장류조합 등과 소비자단체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편 및 방문조사를 하였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법률적 평가와 법률개선방안 검토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제철웅교수가 담당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 개선방안에는 법률적 검토, 외국 사례 조사, 수요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림 1-1. 연구체계도



## 제 2 장

---

### 식품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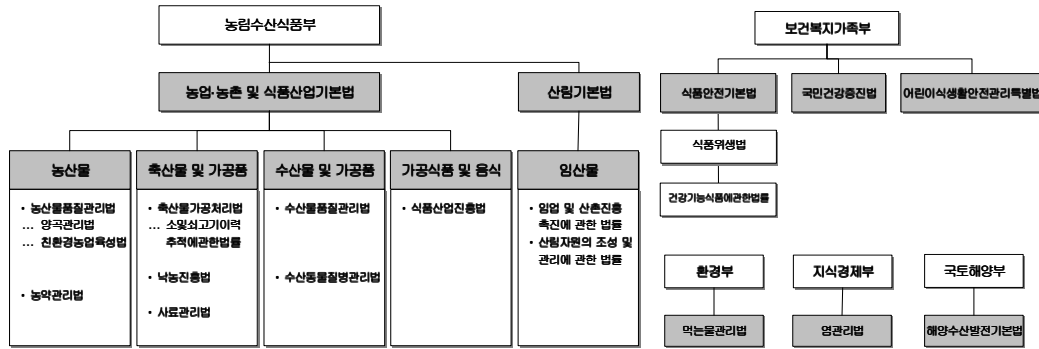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물, 소금, 건강식품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품법체계는 식품안전성, 식품품질, 식품산업으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이 검토되었다.

#### 1. 식품 관련 법령구조의 현황

##### 1.1. 식품 관련 법 현황

현행 식품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법의 목적과 관리대상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를 포함한 다수의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다원적인 관리체제를 취하고 있다. 법령은 시행규칙, 시행령, 고시 및 예규 포함 시 약 200건에 이르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이 식품과 관련된 법을 운영하고 있다<그림 2.1>.

그림 2-1. 소관부처별 식품 관련 법률 현황



식품류별로 농산물, 축산물과 그 가공식품, 수산물과 그 가공식품, 가공식품 및 음식, 물, 소금, 양곡,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들이 존재하며,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형태를 포함하고 있어 식품산업 관련법과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률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하에 농산물, 축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과 가공식품, 임산물과 가공식품, 가공식품 및 음식에 관한 법률이 존재한다. 임산물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품목이지만 산림청에서 별도 법률체계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된 것으로 식품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1999년 1월에 제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각각 8월에 전부 개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중 수산규정 등을 통합하여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 기본법”으로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 1962

년에 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1984년 “축산물위생처리법”, 1997년에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법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축산업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낙농진흥법”은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낙농업과 낙농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1967년에 제정되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마찬가지로 수산업 관련 산업 육성과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제정되었다. 수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항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토해양부의 소관법으로 위치하고 있다. 기존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폐지하고 2007년 12월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및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식품산업 기초 인프라 조성, 식품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농업연계, 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정책을 담고 있어 식품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산식품의 경우는 “산림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준규격, 품질인증, 임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의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식품과 관련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다. 2004년 만두소 파동이후 제정이 추진된 “식품안전기본법”은 2008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2년 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에 관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해 올바른 정보제공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준·규격,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조항 등이다.

그밖에 환경부 소관법률인 “먹는물 관리법”은 타부처의 “공중위생법”과 “지하수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1995년에 제정되었다. “먹는물 관리법”은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 관리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지식경제부의 “염관리법”은 염(鹽) 산업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963년에 제정되었다. 2007년에 11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 1.2. 식품 간접관련 법률 현황

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 장소, 산업일반, 상품일반, 국민 건강 및 식생활과 관련된 법들을 포함한다<표 2-1>.

특정장소의 식품과 관련된 법률로는 “학교급식법”(교육과학기술부)이 있으며, “유아교육법”(교육과학기술부)과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에도 급식관련 내용이 규정되어있다. “학교급식법”은 제2장에서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등 학교급식 관리·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의 제2장 17조와 “영유아보육법”은 제5장 33조에 유아 및 영유아의 급식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 식품과 간접 관련 법률 현황

구 분	소관부처	법 률
특정장소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보건복지가족부	영유아보육법
산업일반/ 상품일반/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지식경제부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
		상표법
		계량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기본법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산업일반에 관련된 법률로 지식경제부의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프랜차이즈 산업발전 관련 규정은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식품유통업과 “산업발전법”은 식품산업 전반과 간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영세·소규모 업체 비중이 큰 식품업계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이다. 다수의 식품업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경영기반 확충, 경영기술의 향상, 국제화, 제품판매촉진 등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상품일반과 관련된 법으로는 지식경제부의 “상표법”, “계량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상표법”은 상표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은 적정 계량 실시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을 가지고 1999년에 제정되었다.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과 관련된 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 보급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08년 3월에 제정되었다.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에서 개정된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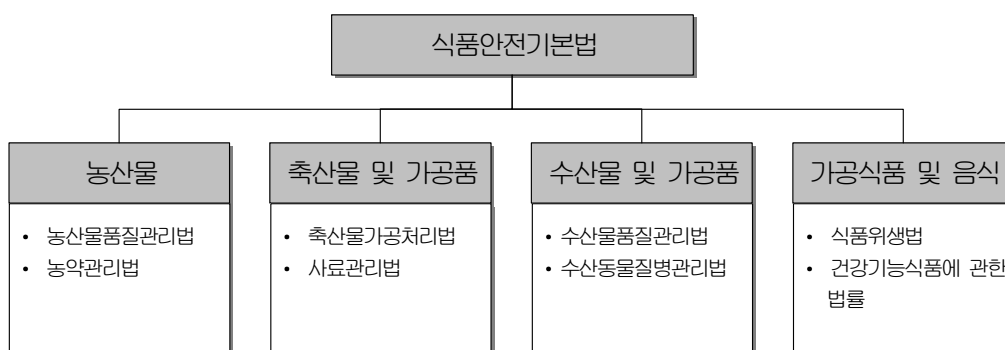
## 2. 식품 관련 법체계와 주요 식품 관련법 내용

### 2.1. 식품안전 관련 법체계

식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할 때 크게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그림 2-2>.

농산물, 축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위생관리와 유해물질 제거는 농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안전관리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제2장 12~14조의 안전성 조사 기준과 조치내용, 제4장 농산물의 검사 관련 조항이 관련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제3장에서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4장 검사,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이 관련된다. 제4장 7~9조는 가축의

그림 2-2. 식품안전 관련 법 체계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 등이 위생관리에 대한 규정이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제4~7장이 안전관리와 관련된다. 제4장에서는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며, 제5장에서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관련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제7장의 수산물 안전성조사도 국내외 수산물의 위해물질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식품위생법”은 대부분 위생 및 식품 위해 관리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반 식품의 안전관리와 폭넓게 관련된다. 제2~3장에서 기준 및 규격관련 내용을, 제6장에서 검사와 제7장에서 영업과 관련된 위생 및 안전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위생과 안전 관련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중요하므로 “농약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도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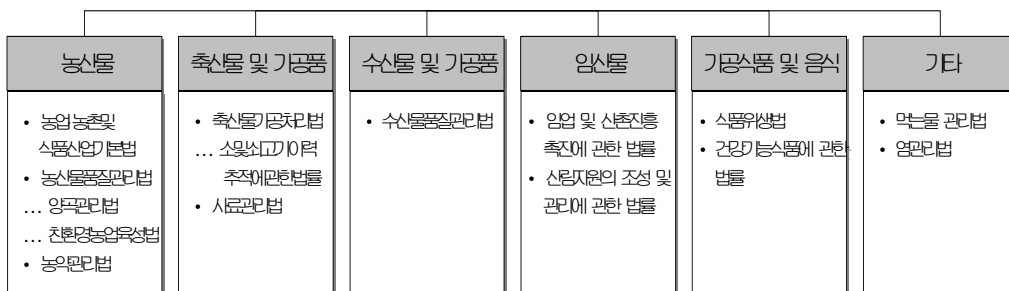
## 2.2. 식품품질 관련 법체계

식품의 품질 관련 법률은 표시기준 설정, 인증제도 운영, 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한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특징이 있다<그림 2-3>. 식품의 규격 및 품질·표시기준 관련 법률은 생산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

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식품의 품질 관련 법률도 품목별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품질관련 규정은 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양곡 및 친환경 등 대상 식품류에 대해 별도로 품질 관련법이 규정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장은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 4조는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능력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한 농산물의 표준규격화에 대해서, 5조에서는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품질인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를 명시하고 있다.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관련 법률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주로 규정되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장에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법조항은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에 관한 것이다. 임산물의 품질관련 조항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품질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임산물 규격의 고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의 제4장은 식품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그림 2-3. 식품품질 관련 법 체계



추진,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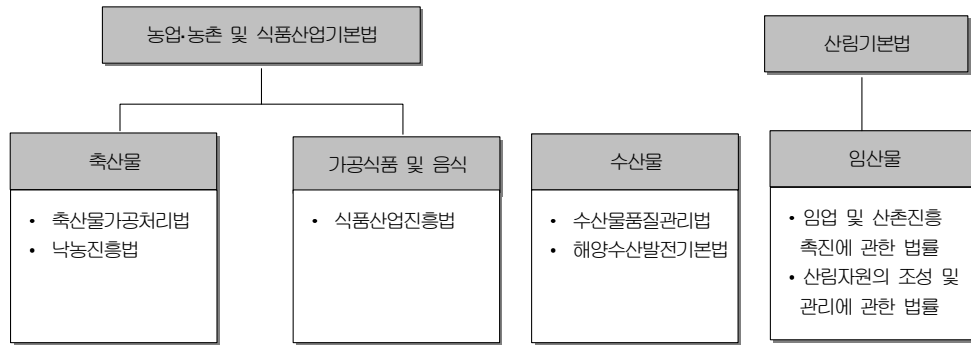
한편 “식품위생법”에도 품질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장의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3장의 기구의 용기·포장에는 품질과 관련된 기준 및 규격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4장에서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 표시기준, 영양표시, 음식점원산지, 허위표시 등과 관련된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도 품질 기준·규격과 표시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3장 14조에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17조에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명시하였다. 그 밖에 “먹는물관리법” 제5장에서는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제조·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과 규격뿐만 아니라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 사용에 필요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2.3. 식품산업 관련 법체계

식품산업 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산물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관련되며 임산물은 “산림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그림 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21조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정책 등 식품산업육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농산물 산지가공산업이나 전통식품산업 육성,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시책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식품산업진흥법”의 제2장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식품산업 통계 조사 등 식품산업의 진흥

그림 2-4. 식품산업 관련 법체계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제3장에서는 식품명인의 지정, 컨설팅 지원, 산지가 공산업의 육성,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등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축산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장 시행령 21조에서 축산물과 관련된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축산물가공업에는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이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의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으로 구분된다. “낙농진흥법”의 제5조는 낙농진흥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제6조에서는 유제품의 수매·비축·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제3장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육성시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주로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공기술 개발과 보급, 자금 지원, 수산전통식품 개발 등의 규정이다.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25조에서는 지속적인 수산물의 생산기반 유지·확충과 생태적 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19조에서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 등이 언급되어 있다.

### 3. 식품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현행 식품 관련법체계 하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많은 법령에 따라 각 담당 부처에서 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규제의 분산과 중복을 초래하여 자원 낭비와 관리비용이 증대하는 점이다. 즉, 동일제도가 소관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됨에 따라 생산업체가 다수의 법률에 의해 중복 규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둘째, 다원화된 운영체계는 전문성,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되어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다원화된 운영체계에서는 식품 관련 위험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한 예로, 2008년 9월 국내에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일어났을 때 식품안전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식품표시관련 법률이 품목에 따라 분리·운영될 뿐만 아니라 대상품목이 각 법에서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는 결국 생산자와 법 집행자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넷째, 상호 정보 공유 미흡으로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하다. 식품은 전후방 연계성이 크므로 식품 관련 정보관리, 연구개발사업, 검사규제업무 등의 정보를 공유하여 관리체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소관 부처 규정으로 상호공유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식품 관련 법체계의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008년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sup>1</sup>에 따르면 국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63점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제 3 장

---

### 식품 관련 법률의 체계 및 규정 평가

이 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를 평가하고, 식품 관련 법률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에서는 식품 관련 기본법 역할 부재, 식품 관련 법률 목적 중복, 안전관리 분담에 따른 관련 법 분산, 식품 품질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식품산업 법체계 정비 미흡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 규정 검토에서는 법률간 불일치 또는 모순점을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 1.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

##### 1.1. 식품 관련 ‘기본법’ 역할 부재

현행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은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이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산림기본법”은 산림, 임업진흥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은 정부조직 개편 이전 해양수산부에서 소관 하는 해양, 수산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하

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법률을 구성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법으로 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 관련 기본법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 임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대상 식품류별로 분산되어 있다. 또한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에는 안전, 품질표시, 산업관련 규정을 포함하며, “식품안전기본법”은 안전성관련,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은 수산 산업관련 기본법으로 기능별로도 식품 안전과 식품산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전체 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으며, 소관부처별로 기본법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식품 관련 기본법의 부재와 분산은 식품 관련 법률에서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파생한다. 식품 관련 정의는 상위법에서 기본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고 개별법에서는 세부 정책별로 정의 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법 간의 관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관련 용어 정의가 규정됨에 따라 식품 관련 용어 정의가 중복·모순되거나, 대상 식품의 정의 수위에 차이가 있거나, 법률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표 3-1. 식품 관련 기본법 비교

소관부처	법률	산업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영양	건강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	●		
산림청	산림기본법	●		○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기본법			●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					

●: 해당 내용 직접 언급 ○: 해당 내용 간접 언급



표 3-2. 식품 관련 법체계 내 용어 정의

소관부처	법률	식품 관련 용어
농림수산 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 식품산업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사업자,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 우수농산물관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원산지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집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작업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 이식용수산물, 수산가공품,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 수산물가공업,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원산지, 위해물, 병충해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산물
	양곡관리법	양곡, 양곡가공업자
	농약관리법	농약
	낙농진흥법	낙농, 원유, 유제품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	이력추적, 개체식별번호, 개체식별쇠고기
	산림기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 임산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사업자, 소비자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표시, 영양표시, 영업,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식품이력추적관리, 식중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고열량·저영양 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영업,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사업, 영양개선
	영유아보육법	보육, 보육시설, 보호자, 보육시설종사자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염, 천일염, 가공, 염제조업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정수기, 먹는물관련영업
교육과학 기술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학교급식공급업자
	유아교육법	유아, 보호자

기본법은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정책의 체계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므로, 본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기본법을 우선 제정한 후 관련 법률을 기본법 규정과 일관성 있게 구체화하거나, 개별법 체계 이후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사후적 조정과정을 거쳐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 관련 기본법은 대부분 기존 법률 제정 이후 상징적인 의미에서 제정되어 상위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2. 식품 관련 법률 목적 중복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내재되어 있다<표 3-3>.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는 품질향상, 안전·위생관리가 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 관련 법률들은 모두 위생관리 또는 품질표시가 동시에 목적에 명시되어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산업진흥, 위생관리, 품질관리가 모두 포함된 사례이며, 산림청 소관부처 법들과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산업진흥과 품질관리가 목적에 규정되어 있다.

표 3-3. 식품별 관련 법 비교

대상식품	소관부처	법률	산업	위생	안전성	품질 표시
농산물	농림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	●
		친환경농업육성법			●	●
		양곡관리법				●
		농약관리법			●	●
축산물 및 가공품	농림수산 식품부	축산물가공처리법		●	●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	●	
		낙농진흥법	●	●		
수산물 및 가공품	농림수산 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	●	●	●
임산물	산림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가공식품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			●
	보건복지 가족부	식품위생법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	●
먹는물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	●
소금	지식경제부	염관리법			●	●

### 1.3. 식품 안전 관리의 부처별 분담

식품의 안전 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표 3-4>. “식품위생법”은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원칙을 천명하고, 유해식품이 제조·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및 유통업자가 예방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및 이와 관련

표 3-4. 식품안전 관련 법조항 비교표

법률명	제조·판매금지	안전(위생)관리	행정청의 공권적 개입
식품안전 기본법	생산·판매등의 금지(16조)	위해성 평가(20조) 신종식품의 안전관리(21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22조)	검사명령(17조) 추적조사(18조) 식품등의 회수(19조)
식품 위생법	위해식품(4조), 병육(5조), 기준·규격 고시되지 않은 합 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포함 한 식품(6조), 유독기구(8조) 등의 판매 금지	자가품질검사의무(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32조 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32조의3)	위해평가(13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15조) 특정식품등의 판매 금지(16조 의2) 출입·검사·수거(17조) 위해식품의 회수(31조의2) 위생등급 부여(32조)
농산물품질 관리법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7조 의5)	농산물의 안전성조사(12조) 시료수거(13조)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14조)
농약 관리법	보관 및 판매금지(21조)		위해 우려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 고시(15조) 유통 농약의 검사(24조)
축산물가공 처리법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31조 의2)	위생관리기준(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9조)	출입·검사·수거(19조) 판매금지(33조) 위해평가(33조의2) 압류폐기 또는 회수(36조)
쇠고기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이력추적에 관한 세부내용을 법률로 정함	
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물이력추적관리(8조의2) 위생관리기준시(22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23조) 안전성조사(42조)	생산가공의 중지(28조) 수산물의 검사(29조) 폐기및판매금지(33조) 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39조)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관리(5조)	출입·검사·수거(42조)

된 행정기관의 임무, 유해식품이 판매될 때 행정기관의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위생관리와 유해물질 제거는 농수축산업 및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므로 안전관련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식품은 생산되는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농산물의 경우 토양에 대한 관리, 농약에 대한 관리, 특히 식물의 관점에서 본 농산물의 종의 다양성의 보장(유전자변형농산물의 관리), 수산물의 경우 그 성장하는 환경에 대한 관리, 외래종의 관리, 축산물의 경우 사료 관리와 동물 질병 관리 등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즉,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는 모든 식품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무일 뿐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원, 축산물위생관리기준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고유한 업무이기도 하다.

식품의 제조·가공·유통과정에서 위험관리업무의 경우도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영업자의 자가위험관리 규정 등에서 중앙부처별로 다원적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가 하여야 할 고유한 업무인 식품의 위험관리의 관제탑으로서의 역할, 즉 위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위험평가방법의 개선, 관리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역할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장에서도 기준을 제시하는 중앙행정부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사전·사후관리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인력·예산 등 국가자원이 중복·분산 투입되어 낭비요인이 발생한다.

#### 1.4 식품 품질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표 3-5>.

품질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거래의 균질화를 실현하기 위해 거래되는

표 3-5. 품질관리 법조항 비교

법률명	거래용 표시	품질인증 및 우수식품	기타
식품산업 진흥법		전통식품의 품질인증(22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23조)	
농산물품질 관리법	농산물의 표준규격화(4조) 원산지표시(15조, 15조의2)	품질인증(5조) 우수농산물인증(7조의2) 지리적 표시의 등록(8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소관업무가 많지만,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 회의 심의를 거침
친환경농업 육성법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17조)	인증에 관한 권한은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있음
축산물가공 처리법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4조) 용기등의 규격(5조) 축산물의 표시기준(6조)		국립검역원장의 권한사항
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물표준규격(5조) 원산지표시(10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11조)	품질인증(6조) 친환경수산물인증(8조의3) 지리적표시의 등록(9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인증관련 권한
식품위생법	기준과 규격(7조, 9조) 표시기준(10조) 식품의 영양표시(10조의2)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 의 원산지등 표시(10조의3)		

물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생산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품질기준과 관련된 규격 및 표시는 국민의 보건증진을 목적으로 삼는 “식품위생법”의 영역 이라기보다는 농업(축산업, 수산업 포함)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수산물, 축산물)의 표시, 우수농산물 및

그 가공품, 지리적 표시 및 특산식품의 표시 등 표시 및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그 가공품 등 식품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에 관하여 통일법(또는 기본법)을 두고 여기에서 공통사항을 규율하는 형태로 운영되지 않는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규격, 표시 등에는 식품위생과 관련이 없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항목들도 포함되어 있다. 「식품공전」의 정의 및 식품유형에는 품질 및 규격 기준이 정의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도 규정되어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시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관점에서 보면 적절할 수 있다. EU에서도 유전자변형물질의 제조·판매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일단 시판이 허용된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산자 간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의 규정들이 각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동일 항목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는 규율이 각 법률에 규정되기도 한다. 통일적 법률(Horizontal Act)이 없고, 개별적 법률(Vertical Act)로 규율되는 형태로 유럽연합의 초기 식품법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 1.5. 식품산업 관련 법체계 정비 미흡

식품산업의 성장을 배경으로 2007년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범위와 법 구성 측면 등에서 불완전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제기 되고 있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sup>2</sup> 쿡, 옥수수는 예외

우선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폐지되었으나 수산물 가공산업 및 임산물 가공산업과 관련된 법률이 존속됨에 따라 각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이, 임산물의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련된다.

둘째, 산업진흥법률은 진흥대상의 구체성, 진흥정책의 현실성, 진흥수단의 효율성 등을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진흥법제의 요소가 구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의 정의를 정확히 함으로써 진흥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책 대상으로 강조되고 있는 식재료, 외식, 한식 등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대상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다.

셋째, 식품산업 진흥 기금관련 조항과 식품산업 단체 설립 관련 조항이 “식품산업진흥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으로서는 “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의 1절 동업자조항과 2절 식품공업협회조항에 근거하여 식품산업 관련 협회 등이 설립, 제71조에 식품진흥기금조항 규정이 있다.

## 2. 식품 관련 법 규정의 모순·불일치

### 2.1. 정의, 범위

#### 2.1.1. 식품

식품에 대한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위생법”의 두 군데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에 차이가 있다<표 3-6>.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함으로써



식품과 의약품을 구분하고 있다.<sup>3</su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산물과 식품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품을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음식물은 먹거나 마시는 등 구강을 통해 도달되는 성분이므로, 바르거나 주사기로 주사하는 등의 특별영양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은 식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정의를 따를 경우 농산물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3조 6호)’이며, ‘농업은 농업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3조 1호)’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농산물로 명확히 분류되기 어려운 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 식품의 범위에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 수산식품은 입법예고 되어있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으나, 물, 소금, 기타 농산물로 분명하게 분류되기 어려운 물질을 원료로 하는 경우가

표 3-6. 식품에 대한 정의 비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제3조 (정의)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제2조 (정의)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식품과 의약품으로 양분하는 이유는 식품은 그 생산자가 자유롭게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행정청의 공권적 개입은 기본권의 침해이므로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근거, 가령 소비자의 건강·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공정한 경쟁 등이 있을 때 가능), 의약품은 금지된 것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약사법 제31조 이하의 의약품,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영역을 점하고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는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음(건강기능식품법 제5조 이하).

존재한다<sup>4</sup>.

## 2.1.2. 가공식품

식품표시관련 법률이 품목에 따라 분리·운영될 뿐만 아니라 대상품목이 각 법에서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생산자와 법 집행자 입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1차생산물과 가공식품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동일 식품에 대해 적용기준이 다르게 규정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표 3-7>.

가공식품의 범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서는 가공정도를 기준으로 포함여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률상에서도 적용범위 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시행령” 13조에 의하면 가공식품 범위에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된 반면 동 시행규칙 11조에 의하면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공식품에 대한 규정이 각각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가공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제품종류와 함량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는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기타식육가공한 것’으로 나열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을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농산가공품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으로 정의하여 수산물 함량을 기준으로 가공품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마다 가공식품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어 동일대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상품목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3-7. 식품표시관련 법률에서 가공식품 범위규정 비교

법 률		규 정
가공 식품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정의
	식품위생법시행령 (13조)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1조 별표6)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규정에서 가공과정을 거처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된 것을 포함
	식품공전(1.총칙)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2조)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 기타 식육, 우유류·저지방우유류·분유류·발효유류·버터류·치즈류, 기타 원유, 라황액·라백액·전란분, 기타 알 가공
	수산물품질관리법 (2조)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조)	수산물을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3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주류	주세법(3조)	주정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를 지칭
식용염	염관리법(2조)	① 천일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 ②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바닷물을 이온 교환막에 전기 투석시켜 함수를 제조하거나 그 함수를 증발시설에 넣어 제조한 결정체염
먹는물	먹는물관리법(3조)	먹는 데에 통상 사용하는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 해양심층수등을 지칭

축산물의 경우 육함량 50% 미만이면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품목이었으나, 최근(2008.3.25개정) 「식품공전」에서 50% 미만 축산물 함량 제품 대상 규정이 삭제되었다.<sup>5</sup> 「식품공전」에서 식육가공품에 대한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축산물가공기준에서 50% 미만제품에 대한 규격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 업종 허가·신고업무

1차생산 단계로부터 생산물을 공급받아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를 집적, 분류, 가공하는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관리차원에서 그 영업을 허가, 신고,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식품 관련 업종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식품가공 관련 업체의 허가 및 신고업무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물, 수산물, 소금, 양곡, 물, 건강기능식품 관련 가공업체는 각각 관련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표 3-8>.

식품제조·가공업종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허가, 신고, 등록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포함)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원 포함)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하는 등 중앙행정부처가 직접 이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좁은 범위의 권한만을 이양하는 측면이 있다. 중앙행정부처는 과중한 행정부담으로 인해 중앙부처가 하여야 할 고유한 업무인 식품의 위험관리의 관제탑으로서의 역할, 즉 위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위험평가방법의 개선, 관리방법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립 등의 역할이 소홀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기준을 제시하는 중

<sup>5</sup> 식품공전에서 ‘식육 또는 알가공품은 식육 또는 알이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양행정부처가 다를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영업자의 입장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영업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줄 수 있다.

표 3-8. 식품 관련 업종의 허가 및 신고 관련 법률 비교

법률명	허가·신고 업종	허가·신고 내역
유통산업 발전법	대규모점포	①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제외 ②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제외 ③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제외
식품위생법	① 식품 제조업·가공업·운 반업·판매업·보존업 ② 기구·용기·포장 제조업 ③ 식품접객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만 허가대상이며, 나머지는 신고 대 상 업종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식품 수입업·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만 허가 대상이며, 나머지는 신고 대상 업종
축산물가공 처리법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 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 업 등	운반업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만 신고 대상 나머지는 허가 대상 업종
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물가공업	신고
먹는물 관리법	먹는샘물 제조업, 수처리 제제조업,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정수기 제조업·수 입판매업	먹는샘물 제조업만이 허가 대상이며, 나머지는 신고 대상 업종임
염관리법	염제조업	허가
양곡관리법	양곡가공업	신고
주세법	주류제조업, 주류판매업	면허

## 2.3. 기준 및 규격

우리나라에서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7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등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위생기준과 성분규격(품질규격)을 제정하고 이 기준·규격에 위반되는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인데, 축산물·주류·소금·수산물 등 각 품목별로 부처별 소관 개별 법령에서 필요한 기준·규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하여 관리할 소지가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규격 설정 업무를 각 소관부처에서 분산하여 수행함으로써 위해 관련 기준 설정 업무의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생산자 측면에서 이중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측면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표 3-9. 식품의 기준·규격

근거법률	내 용
식품위생법(제7조)	식품 367개 품목, 식품첨가물 601개 품목 및 기구·용기·포장 31개 품목의 총 1011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5조)	○ 식육가공품(11개 유형), 유가공품(20개 유형), 알가공품(1개 유형) 등 32개 유형, 총 105개 품목의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 설정 ○ 축산물(원유)의 위생등급기준, 도살, 처리, 집유기준 및 기구, 용기, 포장, 검인용색소 규격 설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제12조)	○ 농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설정 ○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 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제22조, 제42조)	○ 수산물의 표준규격 설정 ○ 생산·가공시설·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설정 ○ 생산단계의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 -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에 대해 생산단계에서는 본 법을, 저장단계 및 출하전 단계에서는 식품위생법 준용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9조)	○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 설정 ○ 먹는 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등의 기준·규격 설정

자료: 광명섭(2004) p.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하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축산식품의 가공·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축산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 축산식품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축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첨가물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토록 설정되어 있는 반면, 용기와 검인용색소 등의 위생규격 등은 농림부 독자적 설정토록 되어 있어 “식품위생법” 등의 규격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

## 2.4. 표시 및 인증제도

식품의 표시기준이 식품별로 소관부처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고, 품질인증제도가 인증의 성격과 품목에 따라 구분되어 다양하게 실시됨에 따라 특별한 근거 없이 표시방식, 인증절차, 위반제재 등 시행규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3-10>. 인증업무 담당기관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관련 대부분(지리적표시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인증업무와 전통식품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을,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물을 담당하는 등 구별된다.

또한 인증제도의 경우 관련 제도 간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친환경농산물인증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육성법”,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유기식품 표시는 “식품위생법”으로 분산되어 규정됨에 따라 제도간의 조화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즉, 유기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근거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해 유기농산물 표시가 가능하다. 유기가공품인증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유기가공식품의 인증)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유기농산물을 95% 이상 사용하고 제조·가공과정이 적합해야 한다.

표시에 대한 단속업무를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품목과 제도별로 단속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후관리 법률 간의 연계성 미비는 법률 간에 불일치되는 조항들이

현실적인 모순·갈등관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표 3-10. 표시 및 인증 관련 법률 표시제도 현황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등의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li> <li>- 식품첨가물</li> <li>- 기구 및 용기·포장</li> </ul> </li> <li>·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li> <li>·식품의 영양표시</li> <li>·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li> <li>·허위표시등의 금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의 표준규격 표시</li> <li>·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li> <li>·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li> <li>·농산물의 GMO 표시</li> <li>·허위표시등의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 및 가공품의 표시</li> <li>·허위표시등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 및 가공품의 표준규격품 표시</li> <li>·수산물·특산물 및 전통식품 인증표시</li> <li>·수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li> <li>·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li> <li>·수산물 GMO표시</li> <li>·수산물 및 가공품 검사 결과 표시</li> <li>·허위표시의 금지</li> </ul>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생등급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li> <li>·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li> <li>·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표준인증</li> <li>·전통식품품질인증</li> <li>·유기가공식품인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물의 품질인증</li> <li>·우수농산물 관리의 인증</li> <li>·농산물이력추적관리</li> </ul>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 인증</li> <li>·수산물이력추적관리</li> <li>·친환경수산물인증</li> <li>·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li> </ul>



표 3-11. 유기식품인증 관련 관리기준 비교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법적근거	친환경농업육성법 17조	고시 2008-31호 제3조제1호바목
관할기간	농림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표시원칙	강제규정(강제인증제)	자율규제(자율표시제)
인증기관	정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	국내가공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 수입가공품: 수출국의 인증기관
사후관리	생산과정 및 시판품조사 및 농약 잔류검사서 등으로 확인	통관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첨부로 유기식품 확인
표시기준	종류명칭을 쓰는 곳에 녹색을 사용하여 “유기농산물”로 표시 유기로 전환중인 경우에는 표시문자의 뒤에 “(전환기)”를 표시	유기농산물 100%사용 → “유기농 100%” 또는 유사용어 유기농산물 95% 이상 사용 → “유기” 또는 유사용어 유기농산물 70~95%미만 사용 → “유기” 또는 유사용어

#### 2.4.1. GM식품

GMO 식품표시제도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의해 운영되며, 각 법에는 GMO의 용어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제도의 명칭과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16조)과 “수산물품질관리법”(11조)에서는 GMO를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로 명명하며,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로 규정한다. 반면 “식품위생법”(10조)에서는 GM식품을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2. GMO표시 관련 법 비교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상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 및 이식용수산물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품목 선정 절차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모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단, 함량이 5순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최종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표시 대상 품목에서 제외
표시 방법	·“유전자변형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활자체로 표시함.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표시	·“유전자변형수산물”,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활자체로 표시함.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한 방법으로 표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 식품” 등으로 표시
위반 제재	·17조의 허위표시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35조) ·유전자변형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8조)	·14조 2항의 허위표시에 해당되는 때는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53조) ·11조의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않거나, 13조의 시정명령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6조)	·허위표시금지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77조)

품목선정절차의 경우도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표시품목을 선정하여 고시하는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규정한다.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상에는 시정명령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4.2.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의 경우 가공식품과 농산물 관련 규정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다<표 3-13>. 원산지표시제도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대상 표시제도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정의·분류체계는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는 「식품공전」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영양보충용식품과 인삼·홍삼제품등은 구분됨에 따라 가공식품의 표시대상품목도 분산·운영됨에 따른 혼란과 불일치가 발생한다.

표시대상 지정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형태는 어떤 품목으로 가공하느냐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역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 등을 두어 원산지 표시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입원료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가공식품의 원산지 판정에서도 법률간에 규정 차이가 나타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될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원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단순 가공형태가 아니라면 국내산으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반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입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기준이 기본적으로는 “대외무역법”을 따르고 있지만, “농산물품질관리

표 3-13. 원산지 표시 관련 법 비교

원산지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대상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원료	수출입 물품
표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농산물은 “국산”, “국내산” 또는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li> <li>·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li> <li>·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국내가공포함)은 원료함량순위에 따라 원산지표시</li> <li>·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li> <li>·법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등의 품목은 표시 생략 가능</li> <li>·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표시, 포장 앞을 경우 당해 농산물 스티커 또는 표시판 또는 판매 용기에 표시</li> <li>·표시는 한글로, 다만 필요시에는 한문 또는 영문과 병기</li> <li>·위치, 글자크기, 색깔 등은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산” 또는 “연근해산”,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li> <li>·원양어선이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을 함께 표시</li> <li>·국내수산가공품 원산지표시</li> <li>·포장에 인쇄하거나 표지부착, 포장 앞을 경우 당해 수산물에 표지 또는 꼬리표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li> <li>·표시는 한글로, 다만 필요시에는 한문 또는 영문과 병기</li> <li>·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li> <li>·최종구매자가 쉽게 관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li> <li>·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li> <li>·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li> </ul>
위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조의 허위표시금지(17조1항)에 해당되면 7년 이하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벌금(34조의2)</li> <li>·17조2항에 해당되면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5조)</li> <li>·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8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위표시(14조2항)에 해당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53조)</li> <li>·10조의 원산지표시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5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해 시정조치(33조5항)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수입하여 가공후,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유통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3조5항)</li> <li>·원산지표시위반시 원상복구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정조치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 과징금부과</li> </ul>

법”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단서조항은 수입농산물로 가공시 제품의 원산지를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어 “대외무역법”과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조항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의 경우 수입농산물의 비중에 대한 언급이 없어 수입농산물(수입가공품)이 어느 정도 이용될 경우 수입산으로 규정되는 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률적인 모호성과 모순되는 측면은 실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사례를 낳기도 하였다. 그 밖에 위반제재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시정명령조치 단계를 두지만,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음식점 원산지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음식점과 표시품목 관련 규정이 불일치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표 3-14>.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모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으로 대상을 국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표시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용도에 따라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용에 한정하여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표 3-14.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련 법 비교

원산지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상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위탁급식업
표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li> <li>-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으로 제공하는 것</li> <li>·김치류</li> <li>- 절임, 양념 혼합, 발효, 가공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li> <li>·축산물</li> <li>-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축산물</li> <li>- 쇠고기의 식육·포장육,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 닭고기의 식육·포장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li> <li>- 밥으로 제공하는 것</li> <li>·김치류</li> <li>- 절임, 양념 혼합, 발효,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li> <li>·육류</li> <li>- 쇠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육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li> <li>- 돼지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li> <li>- 닭고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li> </ul>
표시 방법	<p>① 일반적인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 가능.</li> <li>·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에 따라 메뉴판·게시판·인터넷홈페이지 등 사용</li> </ul> <p>②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의 원산지등은 국내산(한우,젓소,육우로 구분)과 수입산(수입국가명 표시)으로 구분하여 표시</li> <li>·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는 “국내산(쇠고기의 종류, 수입국가명)”으로 표시</li> <li>·돼지고기·닭고기는 “국내산”, 수입산인 경우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li> </ul>	<p>① 일반적인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쌀·배추김치 및 육류의 원산지등은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표시 가능</li> <li>·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 가능</li> </ul> <p>②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물의 원산지등은 국내산(한우,젓소,육우로 구분)과 수입산(수입국가명 표시)으로 구분하여 표시</li> <li>·쇠고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쇠고기 종류,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함.</li> <li>·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국내산”, 수입산인 경우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li> </ul>
위반 제재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3. HACCP인증

“식품위생법”에서의 HACCP는 일반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은 각각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장과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HACCP 인증을 규정하는 등 품목별로 HACCP 지정기준 및 의무적용 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이 상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소관부처별로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업무적 및 경제적 부담 등이 가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사시설 및 공정으로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를 제조한 경우, 아이스크림은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의 대상으로 구분되며 HACCP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지정받음으로써 중복규제 받아야 한다.

HACCP 인증의 경우 절차와 표시방법은 제도간 유사하나, 위반제재규정에 큰 차이가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반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에서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도 각각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로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표 3-15. HACCP 관리 현황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육가공품중 어묵류</li> <li>-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li> <li>-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li> <li>- 빙과류</li> <li>- 비가열음료</li> <li>- 레토르트식품</li> <li>- 김치류 중 배추김치</li> <li>(총 7개 식품 의무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에 대한 의무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장 예외)</li> <li>-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임의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임의 적용</li> </ul>

표 3-16. HACCP 관련 법 비교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대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3조 1항 및 2항을 준수하는 수산물의 생산, 가공시설을 운영하는자	도축업의 영업자(21조1항1호)는 자체 HACCP을 작성·운영, 21조 1항2호(집유업)내지8호(기타)에 의한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	32조의2 제2항에 의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규칙 43조의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
절차	품질검사원장에게 신청-결정으로 등록되면 품질검사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하고,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적정여부검토 후 HACCP적용 작업장 지정서 발급	지정신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 후 지정서 교부
위반제재	생산가공의 중지명령등을 할 수 있고(28조), 28조 위반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54조)	9조2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47조)	32조의2 제7항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78조)

#### 2.4.4. 표시기준(표준규격)

일반표시기준의 경우 산물형태의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표시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포장제품에 대한 표시항목규정도 표준규격품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포장농수산물의 경우 표준규격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되며,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산년(곡류에 한함),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반면 포장농수산물 중에서 비표준규격품은 “식품위생법”에 분리되어 규정되며, 표시사항은 제품명, 식품유형(별도지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별도지정), 유통기한(식품첨가물



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내용량(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별도지정), 기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포장농수산물인 경우 표준규격품 여부에 따라 다른 법률이 규정되고 표시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비표준규격 포장농수산물은 산지, 품종, 등급의 품질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유통기한 등 가공식품과 동일한 항목이 적용되는 등 농수산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의 표시항목은 유사해 보이나, 여러 항목에서 이들 법률 간의 표시항목에 대한 기준도 상이한 경우가 나타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삭제(2002.7.28)된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 사용’의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는 조정이 되지 않아 라벨 사용이 허용되는 등 표시기준의 불일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냉장식품을 냉동식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표시규정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있으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다.

표 3-17. 식품별 표시항목 비교

표시사항	분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포장양곡	농산물규격품	수산물규격품	축산물(축산가공, 포장육)	가공식품, 포장농수산물(비규격품)
품목		●	●	●	●	●
산지		●	●	●		
품종		●	●			
등급		●	●	●		
산년		●				
내용량(무게 또는 개수)		●	●	●	●	●
제조연월일(별도지정)					●	●
생산자 주소		●	●	●	●	●
유통기한					●	●
원재료 및 함량					●	●
성분명 및 함량					●	●
영양성분(별도지정)					●	●
기타사항					●	●

표 3-18. 가공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 비교

구분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번호	영업신고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표시
제조연월일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	제품의 최종공정(포장공정은 제외)을 마친 시점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사용	삭제 2002.7.28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에 표시사항이 인쇄된 라벨을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알레르기 원인물질표시	표시 (고시 2003.5.23, 시행 2004.5.22)	표시
냉장식품의 냉동식품전환	-	‘본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

#### 2.4.5. 허위표시, 과대광고 관련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관한 규정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벌칙관련 규정에서 제도별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각각 11조와 32조에 ‘허위표시등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벌칙조항이 규정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금지’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또한 허위표시금지조항의 벌칙규정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벌칙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별, 법률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벌금’이 구분되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일반표시 규정의 허위표시와 허위 표시조항에 대한 벌칙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일반표시 위반이나 허위표시조항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일반표시와 허위표시 위반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허위표시와 관련하여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표시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일관성이 없으며, 우선적용 규정 등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단속에 의해 적발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른 벌칙을 받을 수 있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표시위반시 개별 표시관련 법 등에 동시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실제 1990년 판결에서 중복해서 시정명령이 떨어진 판례도 있다.

표 3-19. 표시기준, 표준규격의 법간 비교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위 반 체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위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혼합판매행위도 동일</li> <li>·표시변경, 정지, 판매금지 등의 처분위반에는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위표시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혼합판매행위도 동일</li> <li>·표시정지등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li> <li>·표시위반 시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적합한 표시를 않거나 허위표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위표시금지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제 4 장

### 수요자의 식품 관련 법 실행 평가

이 장에서는 식품업체, 농업경영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체, 전통식품·농업경영체 등 총 188개 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었다.

#### 1. 조사의 개요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관련법의 운용과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보기 위해 식품업체(3회)와 소비자단체(1회)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는 1차(2008년 8월~9월)는 관련 협회의 도움을 받아, 2차(2008년 10월)는 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다.<sup>6</sup> 설문조사

6 관련 협회는 한국식품공업협회, (사)한국농업CEO연합회,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사)한국육가공협회,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사)한국유가공협회, (사)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전통식품명인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한국장류협동조합, 구매협의회이다.

에 응한 업체는 총 188개 업체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 83개(44.1%), 식품접객업체 75개(39.9%), 전통식품·농업경영체 30개(16.0%)이다. 소비자의 식품법에 대한 의향 조사는 일반 소비자들이 식품법에 대한 관심과 인지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8곳이 설문에 응하였다.

## 2.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

현행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식품제조·가공업(35.8%), 식품접객업(37.3%)은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음을 지적한 반면, 전통식품·농업경영체(51.7%)와 소비자단체(50.0%)는 관련법과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부분 업체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이 다원적인 체계로 관리됨에 따라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식품 관련 법률체계 문제점

단위: 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전통식품· 농업경영체	소비자 단체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음	29(35.8)	28(37.3)	9(31.0)	1(16.7)
관련법과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	25(30.9)	16(21.3)	15(51.7)	3(50.0)
법이 너무 자주 바뀜	19(23.5)	11(14.7)	2(6.9)	-
관련 법률이 중복되어 있음	5(6.2)	11(14.7)	3(10.3)	2(33.3)
법의 해석이 어려움	3(3.7)	7(9.3)	-	-
관련 법률 조항이 부족함	-	2(2.7)	-	-

식품 관련 법률의 다원적 관리의 해결방안으로 식품 관련 법률들의 상위법으로서 기본법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4-2>. 기본법 제·개정의 필요성 정도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식품·농업경영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의 순서였다.

표 4-2. 식품기본법 제·개정 필요성

단위: 개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2(2.6)	3(3.9)	22(28.6)	20(26.0)	30(39.0)	3.95
식품접객업	1(1.7)	6(10.3)	22(37.9)	13(22.4)	16(27.6)	3.65
전통식품·농업경영체	-	-	4(19.0)	10(47.6)	7(33.3)	4.14
소비자단체	-	-	-	4(66.7)	2(33.3)	4.33

주: 평균 1점-전혀 필요하지 않음. 5점-매우 필요함

식품기본법이 제·개정 될 경우 적정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표 4-3>. 전통식품·농업경영체(86.4%)와 식품제조·가공업(44.2%)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63.2%)를, 소비자단체는 좀 더 상위부처인 국무총리(50.0%) 산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법률 및 사업 대부분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며, 소비자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의미에서 제3의 부처로서 국무총리 산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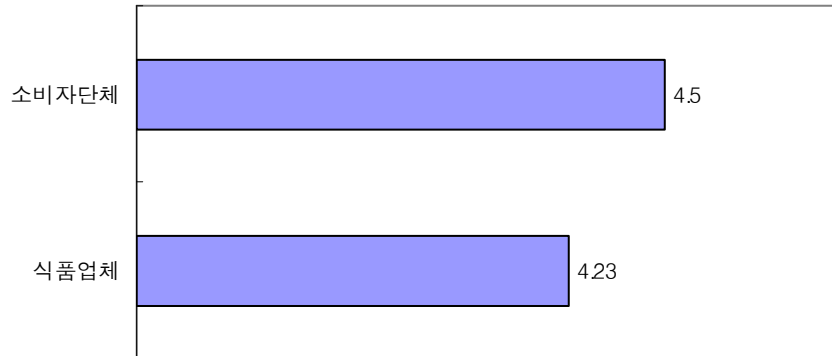
식품 관련 법률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식품업체는 4.23점, 소비자단체는 4.5점으로 평가하여 통합방향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식품기본법 소관 부처

단위: 개소(%)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무총리	기타부처
식품제조·가공업	34(44.2)	30(39.0)	5(6.5)	8(10.4)
식품접객업	19(33.3)	36(63.2)	1(1.8)	1(1.8)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9(86.4)	2(9.1)	1(4.5)	-
소비자단체	2(33.3)	-	3(50.0)	1(16.7)

그림 4-1. 법의 통합 중요성



식품업체=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전통식품·농업경영체  
 주: 1점: 전혀 중요하지 않음. 5점: 매우 중요함.

식품 관련 법 체계의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에 약간 차이가 있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의 경우는 안전과 진흥을 망라하여 통합법을 운영하는 안(식품제조·가공업 34.2%, 식품접객업 31.1%)에 대해 전통식품·농업경영체는 정부부처별 통합방향(40.0%)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조사대상의 83.3%가 안전과 진흥을 분리하여 안전관련 법률끼리 또는 진흥관련 법률끼리 각각을 통합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산업 진흥은 생산자 입장을 반영하므로, 생산부문을 견제하기 위해 안전성 관련 법률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4. 식품 관련법 통합 방향

단위: 개소(%)

	안전과 진흥 통합	안전과 진흥 분리	정부 부처별	품목별	제도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27(34.2)	15(19.0)	25(31.6)	9(11.4)	3(3.8)	-
식품접객업	19(31.1)	14(23.0)	16(26.2)	8(13.1)	2(3.3)	2(3.3)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24.0)	7(28.0)	10(40.0)	2(8.0)	-	-
소비자단체	-	5(83.3)	1(16.7)	-	-	-

표 4-5. 식품 관련법 통합 기준

단위: 개소(%)

	생산부터 소비 까지 한 번에	품목별	사업별	현 상태 유지
식품제조·가공업	49(62.0)	18(22.8)	11(13.9)	1(1.3)
식품접객업	29(45.3)	12(18.8)	17(26.6)	6(9.4)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1(42.3)	7(26.9)	8(30.8)	-
소비자단체	3(50.0)	2(33.3)	1(16.7)	-

식품 관련법 통합기준에 대해서는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품목별(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및 사업별(식품제조, 식품가공, 식품유통, 외식 등) 통합 보다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장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 식품제조·가공업체의 62.0%, 식품접객업의 45.3%, 전통식품 및 농업경영체의 42.3%, 소비자단체의 50.0%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식품의 표시 및 인증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각 법에 분산 규정된 것을 표시 및 인증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식품제조·가공업 56.8%, 식품접객업 52.4%, 전통식품·농업경영체 50.0%, 소비자단체 33.3%가 하나의 법 체계로 통합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일부라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할 경우는 80% 이상이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표 4-6. 표시 및 인증 사항 통합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	일부라도 통합	기존의 체제 유지	목적에 맞게 세분화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46(56.8)	23(28.4)	6(7.4)	5(6.2)	1(1.2)
식품접객업	33(52.4)	17(27.0)	8(12.7)	5(7.9)	-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3(50.0)	10(38.5)	1(3.8)	2(7.7)	-
소비자단체	2(33.3)	3(50.0)	1(16.7)	-	-



### 3. 식품 제도 관련 규정

식품 제도 중에서 ‘원산지 표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유기식품인증’, ‘식품이력제’를 대상으로 법률적 근거 조항과 운영방식 등의 적합성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전통식품·농업경영체, 소비자단체의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식품제조·가공업체 69.2%, 식품접객업 69.0%, 전통식품 및 농업경영체 57.2%, 소비자단체 83.4% 수준이었다<표 4-7>.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우선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중복되어 규정됨에 따른 모순과 혼란문제가 지적되었다. 그 밖에 원산지 변경에 따른 표시 비용 문제 부담 문제와 표시단속자의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 등이 제기되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명시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이며, HACCP와 관련하여 업계에서 적용받고 있는 평균 법률의 수는 1.4개로 조사되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HACCP 인증 시 4개 이상 법률에 적용받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매우 부적합함	부적합함	보통임	적합함	매우 적합함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33(42.3)	21(26.9)	17(21.8)	5(6.4)	2(2.6)	2.03
식품접객업	40(54.1)	11(14.9)	18(24.3)	3(4.1)	2(2.7)	1.86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28.6)	6(28.6)	1(4.8)	5(23.8)	3(14.3)	2.67
소비자단체	1(16.7)	4(66.7)	-	1(16.7)	-	2.17

주: 평균 1점-매우 부적합함. 5점-매우 적합함

표 4-8. 업종별 HACCP 적용법률 수

단위: 개소(%)

	평균	1개	2개	3개	4개
전 체	1.39개	97(71.9)	26(19.3)	10(7.4)	2(1.5)
식품제조·가공업	1.35개	52(73.2)	15(21.1)	2(2.8)	2(2.8)
식품접객업	1.45개	33(67.3)	10(20.4)	6(12.2)	-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33개	12(80.0)	1(6.7)	2(13.3)	-

HACCP가 여러 법에 나뉘어 운영되는 것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전통식품·농업경영체, 소비자단체 모두 절반 이상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표 4-9>. 특히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서는 59.2%, 전통식품·농업경영체의 57.2%가 부적합함을 지적하여 HACCP 관리 부처 분산에 따라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CCP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받는 기준에 대해서 업체의 상당수가 인증기준이 대규모 업체 중심이며, 인증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함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설기준 마련과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와 식품이력제가 여러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다<표 4-10, 4-11>.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의 66.7%가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여 부정적 평가가 가장 우세한 반면, 식품이력제는 전통식품·농업경영체에서 75%로

표 4-9. HACCP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매우 부적합함	부적합함	보통임	적합함	매우 적합함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21(27.6)	24(31.6)	23(30.3)	7(9.2)	1(1.3)	2.25
식품접객업	14(26.9)	14(26.9)	19(36.5)	4(7.7)	1(1.9)	2.31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28.6)	6(28.6)	6(28.6)	2(9.5)	1(4.8)	2.33
소비자단체	-	3(60)	-	2(40)	-	2.50

주: 평균 1점-매우 부적합함. 5점-매우 적합함

표 4-1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매우 부적합함	부적합함	보통임	적합함	매우 적합함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9(25.0)	15(41.7)	9(25.0)	3(8.3)	-	2.17
식품접객업	6(18.2)	10(30.3)	14(42.4)	3(9.1)	-	2.42
전통식품·농업경영체	2(25.0)	1(12.5)	4(50.0)	1(12.5)	-	2.50

주: 평균 1점-매우 부적합함. 5점-매우 적합함

표 4-11. 식품이력제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매우 부적합함	부적합함	보통임	적합함	매우 적합함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9(23.7)	15(39.5)	11(28.9)	2(5.3)	1(2.6)	2.24
식품접객업	10(23.3)	5(11.6)	23(53.5)	2(4.7)	3(7.0)	2.60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75.0)	-	2(25.0)	-	-	1.50

주: 평균 1점-매우 부적합함. 5점-매우 적합함

부정적인 응답 비중이 높았다. 유기가공식품인증의 경우 표시와 인증관련 법의 분리에 따른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식품이력제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대규모 경비가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식품의 표시 및 인증제도 위반 시 벌칙형량에 대해서는 ‘보통’이 절반정도를 점하였으나, 가중하다는 의견도 식품제조·가공업 29.6%, 식품접객업 31.9%, 전통식품·농업경영체 27.2%로 상당 수준에 달하였다<표 4-12>. 반면 소비자단체는 대체로 벌칙형량이 가볍다는 의견(66.7%)을 나타내어 업체와 대조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벌칙조항 중 형량상한제가 형량하한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37%는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여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에 대해서도 과한 처벌규정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표 4-12. 벌칙형량에 대한 평가

단위: 개소(%)

	가볍다	보통이다	가중하다
식품제조·가공업	6(7.4)	51(63.0)	24(29.6)
식품접객업	7(9.8)	42(58.3)	23(31.9)
전통식품·농업경영체	2(9.1)	14(63.6)	6(27.2)
소비자단체	4(66.7)	2(33.3)	-

소비자단체는 벌칙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응답자 전원이 찬성의견을 나타내었다. 일부 업체에서는 법 규정 위반 시 위반사항이 여러 법률에 적용받게 되어 중복 처벌을 받거나, 법률 간의 모순된 규정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과 축산물가공처리 및 성분 규격의 차이에 따른 경우와 음식업에서 영업과 관련되어 여러 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이다.

표 4-13. 벌칙조항 형량하한제로의 변경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식품제조·가공업	23(28.4)	30(37.0)	28(34.6)
식품접객업	20(27.8)	21(29.2)	31(43.1)
전통식품·농업경영체	9(36.0)	11(44.0)	5(20.0)
소비자단체	6(100)	-	-

## 4. 식품법 적용 관련 평가

### 4.1. 개정 시기 관련

대부분 식품 업체에서는 식품표시와 관련된 법 개정으로 포장지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표시관련 식품법의 개정 빈도에 대해서 자주 바뀐다는 평가가 많았다. 식품업체에서는 식품시 관련 법률이 너무 자주 바뀐다 30.8%, 자주 바뀐다 35.3%로 응답하였다.

표 4-14. 표시와 관련한 법의 개정 빈도

단위: 개소(%)

	너무 자주 바뀐다	자주 바뀌는 편이다	보통이다
식품업체	48(30.8)	55(35.3)	53(34.0)
소비자단체	1(16.7)	3(50)	2(33.3)

주: 식품업체=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전통식품·농업경영체

### 4.2. 법 해설서 관련

업체에서 식품 관련 조항을 적용할 때 법 조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 48.1%, 식품접객업 66.6%, 전통식품·농업경영체 52%, 소비자단체 66.7%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업체에서는 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소관부처에 문의하거나(식품제조·가공업 65.4%, 전통식품·농업경영체 71.4%, 소비자단체 66.7%), 관련 협회에 문의하는 방식(식품접객업 78.1%)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 해설서 및 Q&A집 발간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 단체 모두 찬성(78.3%)하는 입장을 보였다.

표 4-15. 법 조항의 이해 정도

단위: 개소(%)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통이다	이해하기 쉽다	매우 이해하기 쉽다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7(8.9)	31(39.2)	27(34.2)	11(13.9)	3(3.8)	2.65
식품접객업	16(24.2)	28(42.4)	21(31.8)	1(1.5)	-	2.12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24.0)	7(28.0)	9(36.0)	3(12.0)	-	2.36
소비자단체	-	4(66.7)	2(33.3)	-	-	2.33

주: 평균 1점-매우 이해하기 어려움. 5점-매우 이해하기 쉬움

표 4-16. 법 이해 어려움 발생 시 해결방법

단위: 개소(%)

	소관부처에 문의	협회에 문의	인터넷 검색	내부에서 사례찾아봄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53(65.4)	8(9.9)	14(17.3)	6(7.4)	-
식품접객업	7(10.9)	50(78.1)	5(7.8)	1(1.6)	1(1.6)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5(71.4)	1(4.8)	5(23.8)	-	-
소비자단체	4(66.7)	-	-	-	2(33.3)

### 4.3. 법 홍보 관련

업체들은 업체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법의 홍보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업체 대상 법의 홍보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 48.1%, 식품접객업 50.8%가, 국민 대상 홍보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65%, 식품접객업 58.2%,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1.5%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잘 되어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표 4-17. 식품 관련법의 홍보 수준

단위: 개소(%)

		매우 잘 되어있지 않다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매우 잘 되어있다	평균
식품제조 가공업	업체대상	13(16.9)	24(31.2)	32(41.6)	7(9.1)	1(1.3)	2.47
	국민대상	25(32.5)	25(32.5)	20(26.0)	5(6.5)	2(2.6)	2.15
식품 접객업	업체대상	14(20.9)	20(29.9)	30(44.8)	3(4.5)	-	2.36
	국민대상	11(16.4)	28(41.8)	25(37.3)	3(4.5)	-	2.32
전통식품 농업경영체	업체대상	6(24.0)	5(20.0)	11(44.0)	3(12.0)	-	2.44
	국민대상	7(26.9)	9(34.6)	9(34.6)	1(3.8)	-	2.15
소비자단체	국민대상	2(33.3)	4(66.7)	-	-	-	1.67

주: 평균 1점-매우 잘 되어있지 않음. 5점-매우 잘 되어있음

식품 관련법에 대한 교육수준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대다수이었다. 업체 대상 교육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 46.1%, 식품접객업 47.8%, 전통식품·농업 경영체 53.9%가, 국민대상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74.1%, 식품 접객업 59.7%, 전통식품·농업경영체 69.2%가 미흡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4-18. 식품 관련법의 교육 수준

단위: 개소(%)

		매우미흡	미흡	보통이다	우수	매우 우수	평균
식품제조 가공업	업체대상	11(14.5)	24(31.6)	33(43.4)	8(10.5)	-	2.51
	국민대상	30(39.0)	27(35.1)	16(20.8)	4(5.2)	-	1.94
식품 접객업	업체대상	12(17.9)	20(29.9)	29(43.3)	5(7.5)	1(1.5)	2.43
	국민대상	15(22.4)	25(37.3)	22(32.8)	5(7.5)	-	2.28
전통식품 농업	업체대상	4(15.4)	10(38.5)	8(30.8)	4(15.4)	-	2.46
	국민대상	9(34.6)	9(34.6)	7(26.9)	1(3.8)	-	2.00
소비자단체	국민대상	2(33.3)	4(66.7)	-	-	-	1.67

주: 평균 1점-매우 잘 미흡함. 5점-매우 우수함

## 제 5 장

### 외국의 식품관련 법체계 현황과 시사점

#### 1. EU

##### 1.1. EU 조직과 식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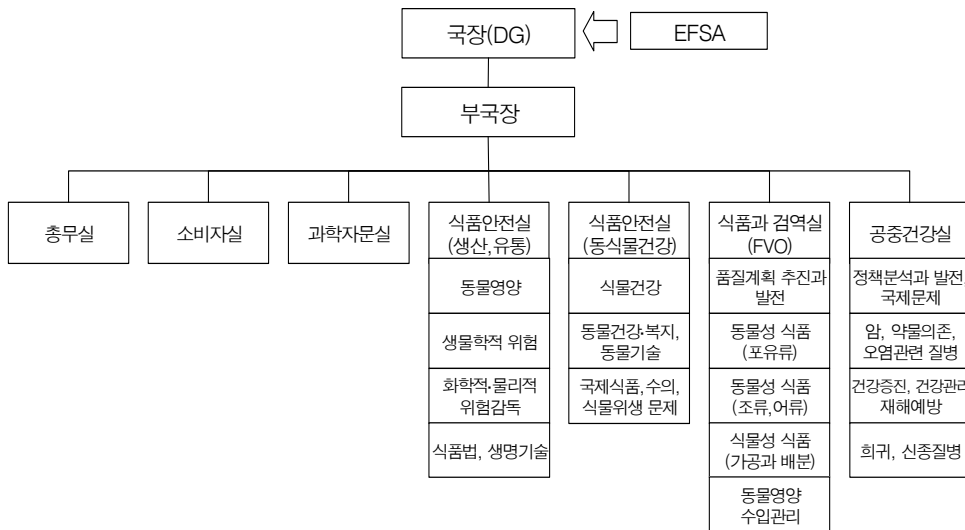
식품과 관련한 유럽연합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에 맡겨져 분권화되어 있다. 회원국의 조직 및 절차는 자율성 원칙에 따라 회원국의 법에 따른 행정관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법은 회원국에서의 집행과 동일한 집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효율적 집행원칙과 동등성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행정자율성과 행정조직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회원국이 식품에 관한 유럽연합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감독한다(EC 제226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행정청에 대한 지시권한을 갖지 않으나, 회원국 행정청은 일반 및 특별 협력의무를 지닌다. 유럽연합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에 이견이 있으면, 유럽연합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제소할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식품관련 정책은 역내시장, 건강소비자, 농수산, 환경의 4개 국(DG)의 상호협조 하에 추진되며, 건강소비자국이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식품정책 등을 감독하는 업무는 건강소비자국 산하의 식품수의청(Food and Veterinary Office:FVO)에서 수행한다. 한편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gency:EFSA)<sup>7</sup>은 식품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의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에 있어서 학문적 자문, 학문적 기술적 지원을 맡고 있다<그림 5-1>. FVO가 건강소비자국의 산하기관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한다면, EFSA는 건강소비자국과 독립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평가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 건강소비자국 체계도



7 이탈리아 파르마에 소재하며, 2002년 기본명령 제22조 내지 제49조에서 그 창설, 과제, 업무집행방식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기구는 사무국, 업무집행책임자인 청장, 자문위원회, 학문적 분과위원회, 학자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청은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기구는 아니다. 식품에 관하여는 기본명령에서 위험관찰, 위험관리를 구분하는데, EFSA는 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럽위원회는 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EFSA는 독립성 원칙, 업무집행의 투명성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식품위험과 관련한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속한 식품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인 역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EFSA가 수집한 정보제공청구권을 가진다.

## 1.2. 유럽연합의 식품법

### 1.2.1. 식품법의 특징

초창기에 유럽연합은 농업정책 및 농산물, 식품의 역내 자유로운 교역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식품법을 제정하였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유럽협약 제152조, 제153조에서 건강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도 유럽연합의 관할범위에 포함되면서 식품에 관하여 건강보호와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었다. 이후 광우병을 비롯하여 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자 식품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가 2000년 1월 12일의 식품안전에 대한 백서로 공표되었다. 그 후 식품법의 정책적 관점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2년 “식품기본법(178/2002/EC)”가 제정되었다. “식품기본법(178/2002/EC)”은 소비자의 건강보호,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식품상품선택권의 보장, 식품산업의 공정한 경쟁보장, 공정한 식품시장의 형성이라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 목표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식품의 안전 관리이며, 사료에 대해서도 식품기본법(178/2002/EC)에서 규율하고 있다.

### 1.2.2. 유럽연합 식품법의 체계

“식품기본법”이 상위법 위치에 있으며, 그 아래 지침이나 명령 형태의 식품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법으로 전환할 때 각 회원국은 어느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질서에 부합되게 할 수 있다.<sup>8</sup> 명령(Regulation)은 그 자체로 회원국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회원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 개별 식품에 관

<sup>8</sup> 독일은 통상 이를 법률을 제정, 개정하여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만, 영국은 행정부의 시행령(Regulation)을 통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다. 후자는 보통법의 전통이 강하므로 이를 굳이 법률로 제정, 개정하지 않아도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 다수의 유럽연합차원의 법률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sup>9</sup>

그림 5-2. 유럽연합 식품기본법의 체계

유럽의회(EP)와 이사회(Council)의 명령(Regulation-EC) 178/2002 (식품기본법)					
↓	↓	↓	↓	↓	↓
위생패키지법	일반표시법*	품질표시	신종식품	안전 및 건강 관련	식품감독에 관한 일반법
생산자자체위험관리	GMO	지리적 특산물 표시	GMO 식품, 사료에 관한법	식품첨가물*	
동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위생관련법	영양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없음	원산지 특산물 (1차산물 및 가공품) 표시	신종식품	다이어트식품*	
동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감독에 관한법		친환경농업의 표시		영양 보충물*	

주 1) \*표시로 된 것은 지침이며, 그 외는 명령임.

- 2) 위생패키지법: 식품위생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52/2004; 동물성식품의 특별위생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53/2004; 특정 동물성 물질의 인간소비의 행정적 특별감독절차에 관한 명령(EC) 854/2004; 식품 및 사료법 준수의 조사를 위한 행정통제와 동물의 건강과 보호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82/2004
- 3) 일반표시법: Directive 2000/13/EC. 소비자 및 식당 등에 공급되는 식품의 표시 일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수평적 법)이지만 지침
- 4) 생산자자체위험관리: 식품위생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52/2004.
- 5) 동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위생관련법: 동물성식품의 특별위생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53/2004.
- 6) 동물에서 유래하는 식품의 감독에 관한법: 이온화광선으로 처리한 식품과 식품구성물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2/EC; 이온화광선으로 처리한 식품과 식품구성물의 공통목록확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3/EC

9 우유와 우유산출물의 표시보호에 관한 각료이사회 명령(EEC) 1898/87; 주류의 개념정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일반규정확립을 위한 이사회 명령(EEC) 1576/89; 발라먹는 지방에 관한 규정을 위한 각료이사회 명령(EC) 2991/94; EC 명령 2991/94, EEC 명령 1898/87의 실행규정을 정하기 위한 유럽위원회(Commission)의 명령 577/97

- 7) GMO: EC 1829/2003에 의해 GMO 식품으로 시판이 허용된 것(유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시판이 가능함)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규정
- 8) 영양에 관한 구체적 법률 없음: 식품의 영양가표시에 관한 이사회 지침 90/496/EEC은 있지만, 규정(Regulation)이 아니어서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 9) 지리적 특산물 표시: Regulation 2081/92
- 10) 원산지특산물(1차산물 및 가공품)표시: VO 2082/92
- 11) 친환경농업의 표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및 식품의 관련 표시에 관한 이사회 명령(EEC) 2092/92.
- 12) GMO식품, 사료에 관한법: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 1829/2003; 유전자변형유기물질의 표시와 이력추적, 유전자변형물질로부터 생산된 식품, 사료의 이력추적, 그리고 EC 지침(Directive) 2001/18의 개정을 위한 유럽연합 및 이사회 명령 1830/2003
- 13) 신중식품: 신식품 및 신식품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명령(EC) 258/97
- 14) 식품첨가물: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첨가물에 관한 회원국 법률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이사회 지침 89/107/EEC;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감미물질(Süßungsmittel)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35/EC;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색소물질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4/36/EC; 색소와 감미물질이 아닌 여타의 식품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5/2/EC
- 15) 다이어트 식품: 특별한 영양섭취(Ernährung)를 위한 식품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정 통일화를 위한 이사회 지침 89/398/EEC; 유아의 최초섭취와 후속섭취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 91/321/EEC; 유아와 소아를 위한 곡물보충식 및 여타의 보충식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 96/5/EC; 체중조절을 위한 저칼로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품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침 96/8/EC; 특별한 의료적 목적을 위한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침 1999/21/EC; 특별한 영양섭취를 위한 식품에 특별한 영양섭취목적에 의해 첨가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침 2001/15/EC
- 16) 영양보충물: 이온화광선으로 처리한 식품과 식품구성물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정의 통일화를 위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2/EC; 이온화광선으로 처리한 식품과 식품구성물의 공통목록확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9/3/EC
- 17) 식품감독에 관한 일반법: 식품 및 사료법 준수에 대한 조사를 위한 행정통제와 동물의 건강과 보호에 관한 EP 및 Council 명령(EC) 882/2004. 사료에서부터 식품까지 위생과 안전을 감독하는 내용 규정

### 1.3. 시사점

EU의 식품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구호 하에,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식품의 1차산업(농업, 수산업, 축산업)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다. 농업진흥정책 역시 이런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2003년의 CAP 개혁안 중에 ‘안전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과 연계하여 농민,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에 반영되었다.

전체 식품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2002년 “식품기본법(178/2002/EC)□□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위생에 관하여도 전체 식품에 적용되는 통일법을 만들었다. 표시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명령과 지침이 있는데, 이 전체를 통일하는 지침 또는 명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0</sup>

## 2. 영국

### 2.1. 영국의 정부조직과 식품법

현재 식품 관련한 업무는 2001년 새롭게 창설된 환경·식품·농업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 독립외청인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 FSA)이 담당하고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이 FSA의 책임자는 아니며 FSA는 DEFRA와 DH로부터 독립하여 식품안전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DEFRA 및 DH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식품과 관련하여 DEFRA, FSA, DH 간의 협력 예는 <그림 5-3>과 같다.

<sup>10</sup> 2006년 12월의 건강소비자국 보고서

그림 5-3. 정부기관 협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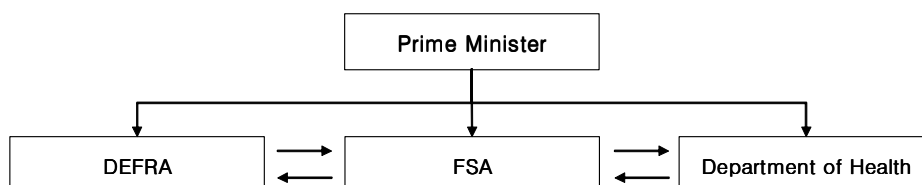


표 5-1. 정부부처간 협력 예

식품전략사업	DEFRA가 주축이 되어 DH와 FSA가 협력
소비자의 건강관련 정보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정책	FSA가 주축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선택을 쉽게 하기 위한 정책	FSA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전체 식품을 연결하여 접근 (food-chain approach)하는 정책	FSA
동물사료, GM 식품에 대한 정책	DEFRA와 FSA 협력
저이산화탄소 시대의 식품산업의 미래	미래전략팀, DEFRA DfID
농가로 하여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도록 도움으로써 농업에서 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DEFRA
새로운 식품포장전략	DEFRA, BERR
식품쓰레기 감축	WRAP, DEFRA, FSA
식품영양기준을 높이는 정책	DH, FSA
식품에 대한 공동연구	DEFRA 주축, DIUS, DH, FSA

FSA 출범 이후에도 식품과 관련된 위험관리 및 품질관리는 여전히 DEFR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부(DH)도 국민의 건강과 보전에 관련된 식품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SA는 유럽연합의 EFSA와 유사하게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위험방지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FSA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SA는 식품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의 권한을 가지지 않으며, 이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DEFRA와 DH)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책건의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FSA 출범 이후에도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정책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 2.2. 식품 관련 법률체계

영국의 식품법은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식품성분, 표시, 위생, 신종식품, 유해물질, 감독 등을 모두 시행규칙(Regulation)으로 처리하고 있다. 물론 식품과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거의 없으며,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해서 단일한 법률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칙은 □□식품안전법□□을 근거로 제정·시행되지만 유럽연합의 명령(Regulation), 지침에 기초해서 곧바로 규칙의 형태로 시행되는 것도 있다.

그림 5-4. 영국의 식품법 체계

식품안전법						
식품성분	첨가물관련	유해물질	가공과포장	식품표시	위생과 보건	신종식품
빵/밀가루 규칙	색소관련 규칙	호르몬주입 동물 및 동물 성식품규칙	냉동식품 규칙	식품표시 규칙	식품위생 규칙 (EC178/2002)	신종식품 규칙
코코아, 초코 렛산물규칙	향 물질에 관 한 규칙	잔류유해물질 기준규칙	추출용매물질 규칙	어류표시 규칙		GMO와 신종 식품규칙
커피추출물 규칙	다양한 첨가물 에 관한 규칙		방사선조사 식품규칙	식품첨가물 표시규칙		
과일주스, 과 일넥타 규칙	설탕물질첨가 에 관한 규칙		식품접촉 플라 스틱물질규칙	유기식품 규칙		
꿀 규칙				쇠고기표시 규칙		
식육규칙						
마시는 우유 규칙						

□□식품안전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관련 장관은 각종의 시행규칙 (regulations)을 제정할 수 있는데, 제정 권한은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가령 보건부장관도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도 관련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여타 부서의 장관도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sup>11</sup>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산 명령인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dissolution) Order 2002<sup>12</sup> 이전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품안전법□□에 기초하여 시행규칙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정하였다. Order 2002 이후에는 식품의 위생에 관하여는 주로 보건부장관이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고,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영역, GM 식품 등에

표 5-2. 영국 식품안전법의 주요 내용

총칙적 규정	정의	식품의 정의 및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
	법의 적용대상과 관할관청	판매목적의 인간소비식품을 적용대상으로 함/농수산식품장관이 관할관청이었으나, 법개정으로 Department로 변경됨(DEFRA와 FSA). 규칙을 발할 수 있음을 정함.
식품 안전	유해식품 규율	유해식품, 안전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도축관련사항/의심스러운 식품의 조사압류/개선 명령·판매금지명령등
소비자 보호	사기로부터 보호	성분, 물질, 표시 등 제반의 허위표시로부터 소비자보호
	위생으로부터 보호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보호
	식품의 안전문제	식품추출물, 첨가물, 신종식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함.
	위생교육규정	-
	조개류위생규정	-
감독	직무집행을 위한 각종명령/벌칙	-

11 이와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에서는 관련 장관이 단독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 때에는 단수로 “Minister”라고 표현하며, 여러 부처가 식품안전법에 기초하여 관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복수를 사용하여, “Ministers 또는 Minister and Secretary of State jointly”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Secretary of State”라고 표현하고 있다.

12 Statutory Instrument 2002 No. 794(통칭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Dissolution) Order 2002로 인용됨)



대해서는 환경농수산식품부(DEFRA)의 장관이 □□식품안전법□□에 근거해 시행 규칙을 제·개정한다. 식품안전법은 총칙, 식품안전 관련 규정,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감독규정으로 구성된다<부록 2 참조>. 총칙에서는 식품과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법의 적용대상 및 관할관청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에 대한 정의에서는 식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는 약품이나 의료제품의 경우 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유해식품의 제조·판매 규제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허위표시, 식품 안전으로 부터의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 2.3. 시사점

영국 식품법의 시사점은 위험관리와 위험평가의 구분, 식품안보 중시, 단일 일반법과 다수의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법률체계로 요약될 수 있다.

2002년 이후 영국에서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보건부가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품질 업무를 관장하는 DEFRA도 식품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식품의 위험관리는 보건부와 DEFRA가, 위험평가업무는 독립외청인 FSA가 담당하고 있다. FSA는 보건부 및 DEFRA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FSA는 위험평가 기관이지만 위험관리에 관한 긴급명령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중요한 농업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질 좋은 식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동식물의 다양성의 확보(유전자변형동식물의 규제)를 구체적 목표로 한다.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도 이런 목표와 관련 하에 설정하고자 하였다.

식품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을 가지고 있다. 식품에 적용되어야 할 개별 항목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규칙(Regulation)으로 정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일한 법률(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보건부와 DEFRA가 각각 시행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고,<sup>13</sup> 부처간의 상호협조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특징이다.

### 3. 독일

#### 3.1. 정부조직과 식품법

독일은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BMELV)에서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보건부는 식품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지 않는다.

식품 관련 업무는 연방차원에서는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의 책임이지만, 식품위험감시 및 관리업무는 각 주(Land)에서 맡아서 담당한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식품법의 집행을 위해 2002년 건강관련 소비자보호의 새로운 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연방위험평가연구소(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BfR)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Das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을 설립하였다. 전자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의 산하연구소이지만, 위험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험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이다. 후자는 연방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의 외청이지만 기능적으로 BMELV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독립의 행정관청으로 식품과 관련된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BVL의 설립으로 연방 건강관련 소비자보호 및 수의약 연구소(Bundesinstitut für gesundheitlichen Verbraucherschutz und Veterinärmedizin)는 해산되었다.

<sup>13</sup> 식품안전법에 근거를 둔 시행규칙(Regulations) 중 DEFRA가 제정한 것을 보면(2008년 기준), the Drinking Milk R; the Products of Animal Origin R; Pesticide R; GMO R; Egg and Chicks R 등 다수가 있다. 한편 보건부가 제정한 것에는 the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 Contact with Food R; the Meat Products R 등이 있다.

그림 5-5.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조직도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는 위험평가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영국의 FSA나 유럽연합의 EFSA와 유사하지만, 농림수산물식품부 산하 연구소라는 점에서는 FSA나 EFSA와는 형식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BfR는 실질적인 중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FSA나 EFSA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2. 독일의 식품법

#### 3.2.1. 전체 식품법의 체계

독일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식품기본법(178/2002/EC)□□을 독일 국내에서 실행하고 기타의 식품 관련물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2005년 9월 1일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을 제정

하였다. 독일의 식품법이 개별법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전체를 통합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6.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 근거한 규칙의 체계

MilchFettG <sup>1)</sup>	건강식품규칙	식품성분규칙	위생규칙	식품표시규칙	안전	감독
HWG <sup>2)</sup>	LMvitV <sup>6)</sup>	MilchEV <sup>8)</sup>	TLMV <sup>15)</sup>	LMKV <sup>18)</sup>	RHmV <sup>20)</sup>	LKonV <sup>23)</sup>
WeinG <sup>3)</sup>	DiätV <sup>7)</sup>	ErukasäureV <sup>9)</sup>	EiProdV <sup>16)</sup>	NKV <sup>19)</sup>	LMBestrV <sup>21)</sup>	
FleischG <sup>4)</sup>		BierV <sup>10)</sup>	MHmV <sup>17)</sup>		SHmV <sup>22)</sup>	
LSG <sup>5)</sup>		THV <sup>11)</sup>				
		ZVerkV <sup>12)</sup>				
		NLV <sup>13)</sup>				
		KaffeeV <sup>14)</sup>				

- 주 1) 우유, 유제품, 지방의 유통에 관한 법. 1951년 제정되었고, 2006.10.31.최종개정.  
 2) 건강분야에서의 광고에 관한 법. 1965.7.11.제정되었고, 2006.4.26 최종 개정  
 3) 와인법. 1994년 7월 8일 제정되었고, 2006년 10월 31일 최종개정.  
 4) 육류법. 2008년 4월 9일 제정됨.  
 5) 특수식품법. 1993년 10월 29일 제정.  
 6) 비타민첨가식품에 관한 규칙(Verordnung).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관할 부처 장관이 Verordnung를 제정하고, 연방상원(Bundesrat)과 협의를 해야 한다. 우리의 시행령에 일견 비교될 수 있음.  
 7)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명령  
 8) 유제품에 관한 규칙. 근거법률은 LFGB와 MilchFettG 양 법률에 근거  
 9) 식품에서 Erukasäure의 최대량에 관한 명령으로 근거는 LFGB 제9조에 의거  
 10) 맥주규칙. LFGB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문, 제19조 제1호, 제4호 a, b에 근거.  
 11) 식품생산시 추출용매와 기타 기술적 보제제의 사용에 관한 규칙. LFGB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문, 제19조 제1항 제1호 b, d, 제3호에 근거.  
 12) 식품첨가물의 요건 및 기술적 목적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유통에 관한 규칙  
 13) 신중식품 및 신중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칙.  
 14) 커피 및 치커리커피 추출물에 관한 규칙. LBGB 제19조, 제44조에 근거.  
 15) 냉동식품에 관한 규칙. LBGB(LFGB로 통합됨) 제19조에 근거.  
 16) 알, 알가공품 및 낱알을 함유한 식품의 위생상의 요건에 관한 규칙. LBGB(LFGB로 통합) 제9조, 제10조, 제19조에 근거.  
 17) 식품에서의 곰팡이균의 최대량에 관한 규칙. LFGB 제9조 제1항 1호 a, 제4호 a, 제5호에 근거.

- 18)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임. 근거법률은 도량법(Eichgesetz)과 LFGB임.
- 19) 식품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규칙.
- 20) 식품에서의 농약,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최대잔류량에 관한 규칙. 식품사료법 제9조 제2항 제1호 a에 근거.
- 21) 전자선, 감마선, 펄트겐선, 중성자선, 자외선을 이용한 식품의 취급에 관한 규칙. LFGB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a에 근거.
- 22) 식품에서의 유해물질의 최대량에 관한 규칙. LBGB에 근거.
- 23) 식품및사료법 제42조 제1항 제1호 3문 b에 따른 식품감독관 전문요건에 관한 규칙.

### 3.2.2. LFGB의 내용 개관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항목, 식품첨가물 항목, 식품보호제, 건강과 관련한 광고 금지,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사기방지를 위한 권한을 식품농업소비자부(BMELV)가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표 5-3>.

표 5-3.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규율항목	내용
총칙	개념정의	식품, 첨가물, 화장품, 생필품등의 개념정의/기타 법률 내의 용어의 개념정의
	적용범위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살아있는 동물에도 적용/식당, 단체급식소의 업주도 소비자로 보고 이 법 적용/식품첨가물
식품 유통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건강에 해로운 것은 모두 유통이 금지
	식품첨가물	환경부와 협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식품첨가물 사용하도록 함.
	방사선	환경부, 교육연구부와 협의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 방사선 사용된 식품유통허용
	식품보호제, 유해물질잔류	환경부, 교육부와 협의하여 방부제, 유해물질잔류 최대치기준을 정함.
	약효가 있는 식품의 유통금지	약효있는 물질이나 변형물의 유통을 금지
	사기방지: 소비자보호	표시, 포장, 설명, 성분, 질량, 원산지, 제조과정, 영양표시 등등 소비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

표 5-3.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의 주요 내용(계속)

적용 대상	규율항목	내용
	건강관련광고	질병에 관한 효력있다고 광고,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
	권한부여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사기방지를 위한 세부적 조치에 관하여 연방상원의 승인 하에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식품부가 가짐. 환경부, 경제기술부등과 협의함. 식품공전은 법무부, 경제기술부와 협의하여 공시함.
사료 유통	금지사항	인간의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사료는 생산, 유통, 판매를 금지함. 사료에 대해 착오에 빠뜨리는 모든 표시는 금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권한	식품부는 사료에 유해물의 잔존치, 기능성 사료의 목적, 사료첨가물 등등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화장품 등	건강과 사기방지	화장품 및 기타 생필품이 인간의 건강에 유해해서는 안되고, 소비자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서도 안 됨.
식품부의 권한	모든제품에 적용되는 일반규정	생산·유통·판매에 관하여 식품부가 권한을 가짐. 식품부는 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표시의 내용과 종류, 제품의 포장, 용기에 관한 규정, 특정제품의 생산·취급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가짐.
감시	자체감시	기업자체감시
	행정청의 감시·감독	정보공개, 샘플조서, 수인의무, 모니터링, 처벌.

### 3.2.3. 독일의 식품 관련 개별 법률 및 시행령 개관<sup>14</sup>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에 직접 규율하지 않는 개별법률로는 “건강분야에서의 광고에 관한 법(HWG)”, “육류법(FleischG)”, “특수식품법(LSpG)”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육류법”은 도살육의 등급분류에 관한 법률이며, “특수식품법”은 농산물 또는 식품의 특수한 성질의 증명에 관한 유럽연합규칙의 실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sup>14</sup> 개별 법률과 시행령의 세부 내용은 부록 참조

한편 식품첨가물, 식품성분, 영양보충물, 위생, 식품표시, 유해물질, 감독 등에 관련된 다수의 시행명령(Verordnung)이 있는데, 이들 시행명령은 우리나라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식품사료법(LFGB)”에 근거한다.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비타민첨가식품에 관한 규칙(LMitV)”, “다이어트 식품에 관한 규칙(DiätG)”, “유제품에 관한 규칙 (MilchEV)”, “맥주규칙(BierV)”, “식품첨가물의 요건 및 기술적 목적을 위한 식품첨가물의 유통에 관한 규칙(ZVerkV)”, “신종 식품 및 신종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칙(NLV)”, “커피 및 치커리커피 추출물에 관한 규칙(KaffeeV)”, “냉동식품에 관한 규칙(TLMV)”, “알, 알가공품 및 낱알을 함유한 식품의 위생요건에 관한 규칙(EiProdV)”,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LMKV)”, “식품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규칙(NKV)”, “식품에서의 농약,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잔류최대량에 관한 규칙(RHmV)”, “식품에서의 유해물질 최대량에 관한 규칙(SHMV)” 등이 있다.

표 5-4. 유제품에 관한 규칙 사례

- 제1조 [적용범위] : 이 규칙에서 유제품이란 부칙 1에 열거된, 식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며 이 규칙은 유제품의 영업상 생산 또는 유통에만 적용됨. 협동조합 및 이와 유사한 기구, 단체급식을 위한 기구를 위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유제품은 영업상 생산 또는 유통되는 유제품으로 봄.
- 제2조 [생산과 포장의 요건] 유제품의 생산과 포장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함.
- 제3조 [일반적 표시규정], 제4조 [특별한 표시규정] 유제품의 일반적 표시규정 및 특별한 표시규정에 관하여 규정함.
- 제5조 [첨가물의 허용], 제5조a [분석방법] : 부칙 2에서 열거한 첨가물만 그 한도치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 및 이에 관한 분석방법을 규정함.
- 제6조 [외국 제품] : 이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함.
- 제7조 [처벌 및 질서위반] : 규칙 위반행위는 처벌됨.

### 3.3. 독일 식품법의 시사점

독일 식품법의 특징은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식품의 위생·안전 및 품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점, 통합된 LFGB(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평가기관과 위험관리기관을 구분하면서, 위험평가기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위생·안전을 관리할 책임지고 있다. 소비자, 생산자, 식품기업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산된 영국 MAFF와 달리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생산자, 기업자에 대한 관리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는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 식품산업에서 법령의 잦은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만, 엄격한 통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식품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시행령)으로 처리하는 것도 적절한 입법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신속한 대응과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험관리업무와 위험평가업무를 형식적으로는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모두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BMELV의 외청인 BfR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유하면서 위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위험관리와 위험평가업무가 사실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 4. 캐나다

### 4.1. 식품 관련법의 법령구조와 현황

#### 4.1.1 법령구조 개괄

캐나다의 식품 관련법은 연방차원의 법과 다양한 주 차원의 법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연방차원에서는 “식품의약품법”이 식품 관련 사안을 다루는 기본 법으로 되고 있고, 그 외 식품산업진흥, 식품 안전, 식품 표시, 식품 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 여러 분야의 법에 의해 보충되어 식품 관련법을 구성하였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식품산업관련법규와 기타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연방 정부의 기본 방향과 조율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진행되었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과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은 캐나다 전체를 포괄하는 식품 관련 기본법으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 외에 연방차원의 식품 관련 법률로는 “캐나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어류검역법(Fish Inspection Act)”, “동물보건법(Health of Animal Act)”, “육류검역법(Meat Inspection Act)”, “소비자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 등이 있다.

각 주 차원에서도 식품과 관련한 법과 규정들이 제정되어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온타리오주 차원의 “건강보호 증진법 1990 (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 1990)”에서 식품산업체의 설립과 운영, 식품 가공,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15</sup>. 또한 온타리오 식품안전 품질법 (Food Safety and Quality

15 온타리오주의 건강보호 증진법 1990(Health Protection and Promotion Act 1990)의 제2조에는 공공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제공, 병의 전염 방지 및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6조에는 식품업체(food premises)와 관련하여 온타리오주의 모든 식품업체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 96조 3항에서는 주민건강보호를 위하여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에 입각하여 R.R.O. 1990, REGULATION 562 Food Premises라는 식

표 5-5. 온타리오 주 육류가공업자에 규정되는 법규 사례

- 온타리오주 식품안전 품질법 (Ontario Food Safety and Quality Act)
- 온타리오 주 육류 규정 (Meat Regulations (Ontario))
- 캐나다 육류 검사규정 (Meat Inspection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식품의약품규정 (Food and Drug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소비자 포장 표시 규정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Canada))
- 캐나다 가축 및 가금 사체 등급분류 규정 (Livestock and Poultry Carcass Grading Regulations (Canada))

Act 2001)과 온타리오 육류 규정 31/05 (Ontario Meat Regulation 31/05)이 있어서 해당 식품산업의 내용을 규정하게 된다<sup>16</sup>.

식품 표시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법 및 관련 규정에서 다루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포장 표시법과 소비자포장 표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주단위로 제정된 주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해당 주 또는 자치단체와 관련한 규정을 덧붙여서 규율하고 있다.

품업체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하였다. 식품업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위의 규정 562호는 식품업체의 설립, 건물의 정비(maintenance), 조명, 환기, 설비, 식품의 취급, 육류와 육류가공품 관련 규정, 유제품 관련 규정, 위생설비 기타 등등의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16 온타리오 식품안전 품질법 (Food Safety and Quality Act 2001)은 식품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육류를 다루는 업체일 경우 온타리오 육류규정 31/05 (Ontario Meat Regulation 31/05) 등의 규정의 규제도 받게 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연방차원의 법 뿐만아니라 주차원의 여러 법이 식품업체의 상이한 여러측면을 규제하고 있다.

#### 4.1.2.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은 1953년에 캐나다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캐나다의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시스템의 핵심을 이루며, 음식 뿐만 아니라 의약품·화장품과 치료기기 등을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보건부 (the Minister of Health)가 주무 기관이지만, 그 정책과 법 및 규정의 집행은 농업부 산하의 특별기관인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에서 법제목과 용어의 정의는 1조와 2조에서 다루고 있다. “식품의약품법”에 명시되어 있는 식품은 “인간이 먹는 음식 또는 음료, 씹는 껌, 그리고 음식에 첨가되는 각종 재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판매되거나, 표현된 모든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전통적인 식품의 개념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유전자 조작 생산물이나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로서 새로이 식품시장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식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식품에 대한 보다 진전된 가치와 원칙을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정책과 기준 등은 3조 ~ 21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조항(General), 식품(Food), 의약품(Drugs), 화장품(Cosmetics), 의료기기(Devices)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5-6. 식품의약품법 내 식품 관련 기본정책 조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조: 특정 질병 등과 관련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기구와 관련한 광고 금지, 위의 물품 판매 금지 피임기구의 허가 없는 광고 금지</li> <li>· 제4조: 유해 및 유독 물질 함유 등 음식물 판매금지</li> <li>· 제5조: 음식물의 표시, 포장, 취급, 처리, 판매, 광고 등에서의 거짓, 오도, 기망 등의 행위 금지</li> <li>· 제6조: 설정된 기준이 있는 음식물의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판매용 물품 또는 그렇게 오인될 물품의 수입, 탁송, 수송, 수취, 보관의 금지</li> <li>· 제7조: 비위생적 음식의 판매를 위한 제조, 준비, 보관, 포장, 저장 등의 금지</li> </ul> |
|--|

운용과 집행(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에 대한 내용은 22조 1항부터 37조 2항까지로 구성되어있으며, 검사(Inspection), 압류(Seizure) 및 압수(Forfeiture), 분석(Analysis), 규정(Regulations), 잠정명령(Interim Orders), 잠정판매허가(Interim Marketing Authorizations), 범위반(Offences) 및 처벌(Punishment), 수출(Exports)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5-7. 식품의약품법 내 운용과 집행 조항

- 제22조 보건부 장관의 검사관 임명
- 제23조 검사관의 권한
- 제24조 검사관에 활동에 대한 방해, 저지, 거짓진술, 간섭 등의 금지
- 제25조 압수물품의 저장 또는 이전조치
- 제28조 보건부 장관의 분석관 지명

#### 4.1.3. 연방차원의 식품 검역관련 법

연방차원의 식품 검역 관련법은 “캐나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어류검사법(Fish Inspection Act)”,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 등이 있다.

“캐나다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은 농산물의 수출입 등에 관련하여 검사, 기준, 등급을 규정하는 법으로 검사기관과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검사와 수색 절차, 압류물품에 대한 처리, 불법 수입품에 대한 처리, 처벌규정 등을 담고 있다.

□□어류검사법(Fish Inspection Act)□□은 농업부의 관할 하에서 식품검사청에 의해 진행되는 어류와 수산물의 검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 등의 집행은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은 육류생산품의 수입과 수출, 주경계를 넘어선 교역과 관련하여 동물과 육류가공품의 검사와 시설의 등록, 그리고

동물 도축과 육류가공의 기준을 다루는 법으로 검사 등의 집행은 식품검사청이 담당하고 있다.

#### 4.1.4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은 생산물의 포장, 표시, 판매, 수출 및 사전포장품의 광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법으로 표시사항, 포장용기 표준, 처벌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5-8.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내용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소비자 포장 및 표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용범위 Application of Act</li> <li>• 금지 Prohibitions</li> <li>• 표시 Labels</li> <li>• 용기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Containers</li> <li>• 연구 및 학습 Research and Studies</li> <li>• 집행 Enforcement</li> <li>• 규정 Regulations</li> <li>• 규정의 발간 Publication of Proposed Regulations</li> <li>• 법 위반 및 처리 Offences and Punishmen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 조항의 예외 등</li> <li>• 영어, 프랑스 공동 사용 요건 및 그 예외</li> <li>• 사전포장 제품의 표시의 적용</li> <li>• 보여질 정보 표시 위치</li> <li>• 보여질 정보 표본 크기</li> <li>• 실제 수량의 신고 (Declaration of Net Quantity)</li> <li>• 실제 수량 신고의 예외 (Exemption from Net Quantity Declaration)</li> <li>• 십진법에 따른 실제 수량 신고 및 표본 크기 요건의 예외</li> <li>• 실제 수량 신고의 방식 (Manner of Declaring Net Quantity)</li> <li>• 척도 단위</li> <li>• 별도 포장 제품으로 되는 사전 포장 제품</li> <li>• 광고</li> <li>• 명칭 및 다른 정보</li> <li>• 복용 횟수 관련 표현</li> <li>• 식품 표시에 대한 그림을 사용한 표현</li> <li>• 용기 크기의 표준화</li> <li>• 용기 용량</li> <li>• 오차 허용도</li> <li>• 조사</li> </ul>

포장과 표시 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법 및 식품안전규정에도 일부 규정이 있지만, 포장 및 표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는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Consumer Packing and Labelling Act)□□이며, 식품의 포장 및 표시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들을 식품에 적용되는 실제적 표시 사례등과 함께 자세하게 규정된 □□소비자 포장 및 표시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이 있다.

캐나다는 식품의 포장 및 표시의 경우, □□식품안전법□□ 및 규정은 물론이고, □□소비자 포장 및 표시법□□과 □□소비자 포장 및 표시 규정□□의 내용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4.2. 식품 관련 기관

연방차원에서 식품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과 보건부(Minister of Health Canada)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농업식품부(Minister of Agriculture and Agri-Food), 수산해양부(Minister of Fisheries and Oceans)와 환경부(Minister of Environment)가 식품의 생산 가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주정부에도 식품 관련 정부 부서가 존재하고, 그 기관들이 연방정부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997년에 제정된 □□캐나다 식품검사청법(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ct)□□에 따라 설립되어 식품안전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담당해 왔다. 캐나다는 심각한 식품안전 관련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법규 준수는 주로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고 CFIA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계도와 감시를 중심에 두고 있다.<sup>17</sup> CFIA는 농업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식품안전,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

<sup>17</sup>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2007),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p.68.

장접근 문제 등 광범위한 업무범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CFIA는 식품의약품법 상의 식품 관련 규정 및 소비자 포장 표시법 관련 규정의 실제적 이행과 수입식품 감시 및 수출상품 인증 업무를 담당한다.<sup>18</sup> 더불어 건강이나 안전 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음식 표시정책과 규정을 개발하고, 식품 표시 및 광고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다.<sup>19</sup>

### 4.3. 우리나라 식품 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캐나다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법이 존재하나 캐나다에서 식품 관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품의약품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법은 그 법의 내용에 근거를 두거나 또는 그것을 강화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등한 차원의 다양한 법이 다투는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법에 비하여 한결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법”에 근거하여 식품 정책과 실질적 기준을 세우는 역할은 보건부에 부여하고 정책과 기준을 집행·관리 감독하는 역할은 농업부 산하의 식품검사청에 부여함으로써 역할분담과 견제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 때 이를 식품검사청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의회 내에서의 심의로 폐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 기준 설정과 집행 및 감시 기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진흥과 위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식재료의 기준과 규격 등을 규정하는 방법은 캐나다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식품의약품법”, “식품의약품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그에 더하여 농산물, 수산물, 육류 등 산업별 법이 있고, 주정부 차원에서 해당 산업별 라이선스 부여 및 기준 설정을 다루는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복잡한 권한의

18 Serge Frechette(2000). *Biotechnology, Food and Agriculture Disputes or Food Safety and International Trade*. 26 Canada-U.S. L.J. pp.253-254 참조.

19 Id. pp.253-55.

배분에도 불구하고 크게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이유는 연방 차원의 “식품의약품법”이 기본법으로서 모든 주법의 상위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기타 관련 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식품에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표시 및 광고와 관련하여서도 캐나다에는 “소비자포장 및 표시법”이 별도의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보충적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연방차원의 “식품의약품법”의 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식품검사청은 식품안전 검사 뿐 아니라 소비자 포장 표시등에 대해서도 관할하고, 그에 더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여러 기관이 서로 권한을 배분, 분산, 견제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시장 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식품법의 벌칙과 규제의 권한은 약한 편이다. 세계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 국제적 수출입의 확대 등으로 식품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의 폭과 크기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이 점진적으로 캐나다의 법 체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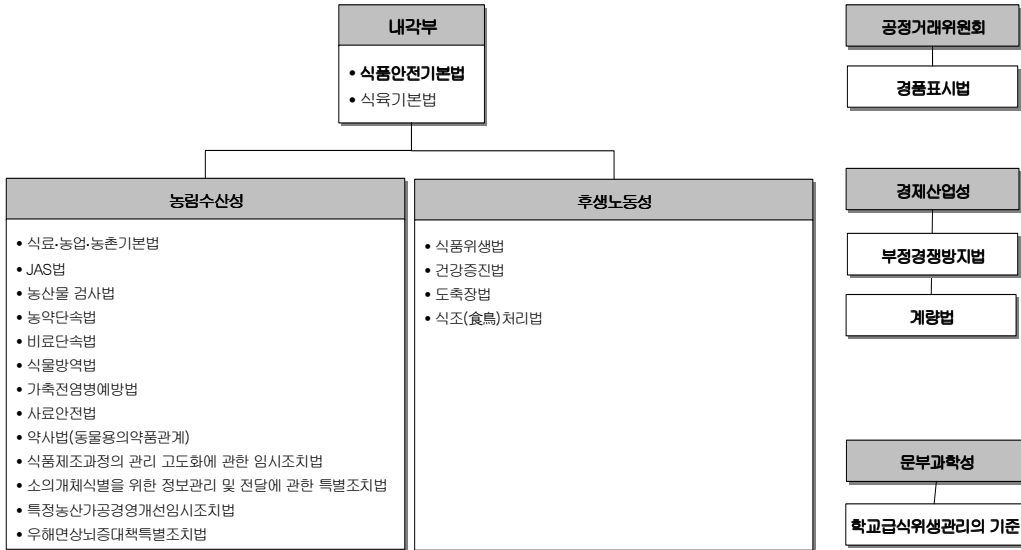
## 5. 일본

### 5.1. 법률 개요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육기본법”이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법으로 내각부 소관으로 상위법 위치에 있으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대부분 법을 관장하고 있다.



그림 5-7. 일본의 식품 관련 법체계



## 5.2. 법 체계 현황

### 5.2.1. 식품안전성 확보관련 법률

일본에서는 1996년 병원대장균 O157 식중독사건, 2001년의 BSE(소해면상 뇌증)문제, 식품허위표시사건 등을 배경으로, 2003년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련법(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일부)이 제·개정되었다. 이로써 식품안전위원회(식품안전기본법)가 위험평가기관 및 위험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고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각각 위험관리기능과 위험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도록 정부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명확해졌다.

특히 식품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관련법을 살펴보면 농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이 관할하고, 유통 및 소비단계에 대해서는 후생성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 5.2.2. 식품의 표시기준 관련사항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건강증진법” 등이 있다<표 5-10>.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표시 등이나 허위표시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이며 식품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표시 관련 법률은 크게 “식품위생법”과 “건강증진법”, “JAS법”에 한정된다.

“식품위생법”은 후생노동성소관으로 ‘음식을 인한 위생상의 위해발생 방지’를 입법취지로 하고 있으며, 용기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표시항목은 명칭, 식품첨가물, 보존방법, 소비기간 또는 상미기간, 제조업자 성명, 제조업체소재지 등, 유전자변형식품, 알레르기식품, 보건기

표 5-10. 일본의 식품표시관련 법

	식품위생법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법률(JAS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경품표시법)	건강증진법
소관 부처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공정거래위원회	후생노동성
제정 연도	1947년	1950년	1962년	
제도 목적	·음식을 원인으로 하는 건강상 위해발생방지, 공중위생향상·증진에 기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보호	·식품 등의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시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선택을 지원	·부당표시로 인한 고객의 오인(우량오인, 유리오인)방지 ·독점금지법 특례로 공정경쟁을 확보하고 소비자이익 보호	·건강·체력의 유지·향상에 기여
대상 식품	용기포장 된 가공식품 (일부 신선식품 포함), 계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모든 신선식품, 가공식품 및 현미·정미		판매되는 식품에 영양개선이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표 5-11. 식품·첨가물 등의 성분규격기준의 예시

대상식품		검사항목 및 기준
식육제품	비가열 식육제품	대장균최적수(100/g 이하)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특정가열 식육제품	대장균최적수(100/g 이하) 크로스토리지움속(屬)균(1000/g 이하)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가열 식육제품	포장후가열 대장균균(음성) 크로스토리지움속(屬)균(1000/g 이하)
	가열후포장	대장균(음성) 황색포도구균(1000/g 이하) 살모넬라속(屬)균(음성)

능식품에 관한 사항 등으로 소비자의 건강보호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표시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관계된 규격·기준은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규격 등에 관한 후생성령”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에 관한 고시”로 정해져 있다<표 5-11>. 식품에 대해서는 성분규격, 제조·가공 및 조리기준, 보존기준, 사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며, 첨가물에 대해서는 통칙, 일반시험법, 시약·시액, 제조기준·사용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은 농림수산물 소관법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에 기여하기 위한 정보표시’에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JAS법”에서의 표시대상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음식료품으로, 표시항목은 명칭,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원료원산지명,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보존방법, 원산지명,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유전자변형식품, 유기식품에 관한 사항 등이다. “JAS법”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품질표시기준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농림수산성의 지시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

표 5-12. 일본의 식품표시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관련 사항

	식품위생법	JAS법
표시대상	용기포장 되어 판매하는 식품 및 첨가물 (성령으로 대상품목규정) ·마가린 ·주청음료 ·청량음료수 ·식육제품 ·냉동식품 ·계란류 ·건강기능식품 ·첨가물 ·방사선조사식품 ·GMO농산물 ·어육햄 및 어육소시지 등 ·시안화합물 포함하는 두류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우유 및 유제품 및 이들을 주 원료로 한 식품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음식료품 ·모든 신선식품 ·모든 가공식품 (2000년7월부터 모든 신선식품, 01년 4월부터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의무화 실시)
의무표시항목	공통표시항목	
	·명칭 ·소비기간 ·상미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명칭 등 ·GMO	<가공식품> ·명칭 ·상미기간 ·소비기간 ·보존방법 ·제조업자명칭 등 ·GMO
	·첨가물 ·알레르기물질 ·살균방법 ·음식으로 사용될 때의 가열의 필요성 유무 ·생식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	<가공식품> ·원재료명 ·내용량 ·원산지 ·국(지정품목) <신선식품> ·명칭 ·원산지 ·내용량(수입품) ·제조업자명칭 등(수입) <현미 및 정미> <유기농산물>
·영업허가취소, 금지, 정지 ·식품 등의 폐기명령 ·2년 이하징역, 200만엔 이하벌금 (법인 1억엔 이하)	지시→명령→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법인 1억 엔 이하)	
표시금지사항	·허위·과대표시 또는 광고 ·보건기능식품이외의 식품에 대해 혼란스런 명칭, 영양성분기능, 특정보건목적표시 ·영양기능식품으로 특정보건용식품이 아닌 식품에 특정보건목적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	·표시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그 내용물을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 ·GMO기술로 생산되는 작목에 속하지 않은 작목이나 그것을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에 GMO가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
입의	·GMO가 아니라는 취지문구 ·보건기능식품 ·알레르기물질(장려사항)	·GMO가 아니라는 문구 ·유기 등의 표시규제

표 5-13. JAS규격의 품목과 규격의 예시(일반 JAS)

품목	규격	정의
베이컨류	베이컨(상급/표준)	돼지 안심(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析) 및 훈연한 것
	로스베이컨	돼지 로스(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析) 및 훈연한 것
	숄더베이컨	돼지 어깨살(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析) 및 훈연한 것
	미들베이컨	돼지 가슴살(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析) 및 훈연한 것
	사이드베이컨	돼지 지육(뼈가 붙은 것을 포함)을 정형하여 염석(塩析) 및 훈연한 것

한편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부처간의 이원화된 제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식품표시제도의 정합성확보 위해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공동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개최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위생법”관계의 약사·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 표시소위원회 식품표시조사회를 설치하고, 농림수산성에서는 “JAS법” 관계의 농림물자규격조사회 표시소위원회가 설치하고 있다. 현재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에서 각각 7명의 위원을 내세워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공동회의에서는 식품에 대한 표시항목과 표시방법, 용어의 통일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은 ‘건강 및 체력의 유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으며, ①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등(계란 포함)으로, 일본어로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표시항목 : 영양성분, 열량)와 ②특별용도식품(표시항목 : 상품명, 원재료명, 허가받은 이유, 허가받은 표시내용, 영양성분량 및 열량, 허가증표 등)에 표시를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식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것에 대해 건강유지증진효과 등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식품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표시관련제도는 <표

표 5-14. 건강과 영양에 관한 표시를 실시하는 제도

	식품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표시관계 제도		
관련내용	특정보건용식품 특별용도식품	영양기능식품	영양성분표시
표시방법 (관련제도)	허가제 (건강증진법 제26조)	규격에 적합하면 표시 (건강증진법 제31조)	영양성분량과 열량 등을 표시하는 기준 (건강증진법 제31조)

표 5-15.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표시내용의 특징

특정보건용식품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의능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으로 혈압, 혈중콜레스테롤 등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돕거나 특정보건용도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
특별용도식품	환자용, 유아용, 임신부용 등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표시하는 식품
영양기능식품	영양소의 보급을 위해 이용되는 식품으로, 영양소의 기능을 표시하는 것
식품전반	허위/과대한 광고 등의 표시금지 영양표시기준에 근거한 영양성분표시

5-14>와 같으며, 각각의 식품별 표시에 대한 내용은 <표 5-15>과 같다.

이상과 같이 현재 일본의 표시관련 법률은, “JAS법”과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 각각의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일부 개념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정도로 판단된다. 특히 JAS규격은 생산자가 선택하는 임의표시 사항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나, “식품위생법”의 성분규격 등은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표 5-16>.

표 5-16. 식품안전 및 품질관련 분야별 소관부처와 관련법규 등의 개요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기타 성청·단체
식품위생 품질확보	(JAS법) ·모든 음식료품 ·감시·지도(모니터링 등)	(식품위생법)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등, 국내식품감시, 수입식품감시 검사 ·제조, 사용 등의 규격·기준	문부과학성 ·학교급식위생관리의 기준
규격·표시	(JAS법) ·모든 음식료품 ·표시의 적정화 (명칭, 원산지, 내용량, 원 재료명, 제조업자 등)	(식품위생법·건강증진법) ·알레르기물질의 표시(영양개선법) ·영양성분의 표시 ·열량, 단백질, 지방, 당질, 나트륨, 표시하려는 영양성분	경제산업성(계량법) ·내용량의 표시 ·표시하는 자의 명칭·주소 ·강제의무
고도위생 관리	(HACCP수법지원법) ·위생관리의 고도화 ·시설의 정비에 대한 금융· 세계상 지원 ·농림수산대신에게 신청	(식품위생법) ·[종합위생제조과정]의 승인제도에 따른 HACCP시스템 ·우유·유제품, 식육제품, 어육제품, 용기포장가압가열살균식품, 청결 음료수 (HACCP수법지원법) ·후생노동대신에게 신청	(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9001, ISO22000에 따른 위생관리시스템
안전·안심 리스트대책	·소비·안전국설치(농림수 산물 등에 관한 위험관리) ·이력추적시스템의 확립 ·식육의 추진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의 재편, 수입식품안전대책실의 설치(식품 위생에 관한 위험관리) ·식육의 추진	식품안전위원회(내각부)(식 품안전기본법) ·식품건강영양평가 (위험평가)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시책 의 책정(리스크 매니지먼트) ·관계자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리스크 커뮤니케이션)
BSE대책	(소해면상뇌증 대책특별조 치법) ·BSE발생시의 조치에 관 한 기본계획 ·소의 육골분을 원료로 하 는 사료사용 금지 ·도축장에서 소해면상뇌증 에 관한 검사 등	(소해면상뇌증 대책특별조치법) ·BSE발생시의 조치에 대한 기본계 획 ·소의 육골분을 원료 등으로 한 사 료의 사용 금지	



표 5-16. 식품안전 및 품질관련 분야별 소관부처와 관련법규 등의 개요(계속)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기타 성청·단체
가축예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라기, 말, 염소, 산양, 벌꿀 ·가축의 전염성질병 발생 예방 ·가축전염병의 만연 예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람으로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성과의 의견교환	
농약	(농약 단속법) ·등록된 농약이외의 판매 금지 ·무등록농약의 제조·수입 및 사용 금지 등 ·농약의 사용기준 설정 ·특정농약의 지정	(식품위생법) ·농약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작성	
비료	(비료 단속법) ·보통비료, 특수비료 ·공정규격, 등록의무, 생산·판매·수입·시용규칙	(식품위생법) ·비료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 작성	
기타	(사료안전법) ·소 및 돼지, 닭 및 메추라기, 벌꿀, 양식어 ·사료 ·사료첨가물의 지정, 기준·규격의 제정, 공정규격의 제정	(약사법)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부외품, 동물용 의료용구 ·제조업·수입판매업의 허가, 제조승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더욱 약국개설 및 판매업의 허가	
기타 관련 사항	농림수산성(종묘법), 특허청(특허법) 경제산업성(제조물책임(PL)법) 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대학 등 기술이전촉진법) 내각부(소비자 기본법)		

### 5.2.3. 식품산업진흥 관련사항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추진방향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상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은 크게 ‘식품산업의 사업기반강화’, ‘식품산업과 국내농업과의 연계강화’, ‘식품유통의 합리화’, ‘식품산업에 의한 환경오염의 억제 및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실현’ 등 4가지로 구분·제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세부시책들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총합식료국에서는 경제산업성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정책의 기본 틀을 이용하여 식품제조업관련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 정책 중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총합식료국의 정책은 식품산업내의 수평적인 경쟁관계보다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수직적 경쟁관계에 대한 관심이 강했다. 따라서 당초 총합식료국의 관심은 각각의 품목에 대한 진흥에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국내농산물의 판매처확보를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농업과 1차 가공에 대한 정책을 필연적으로 결합시키지 않을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

그림 5-9.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대응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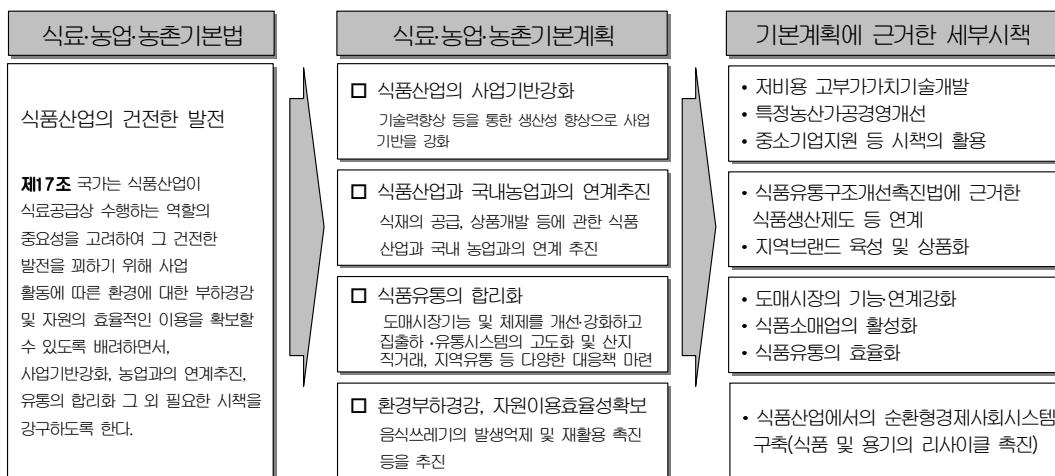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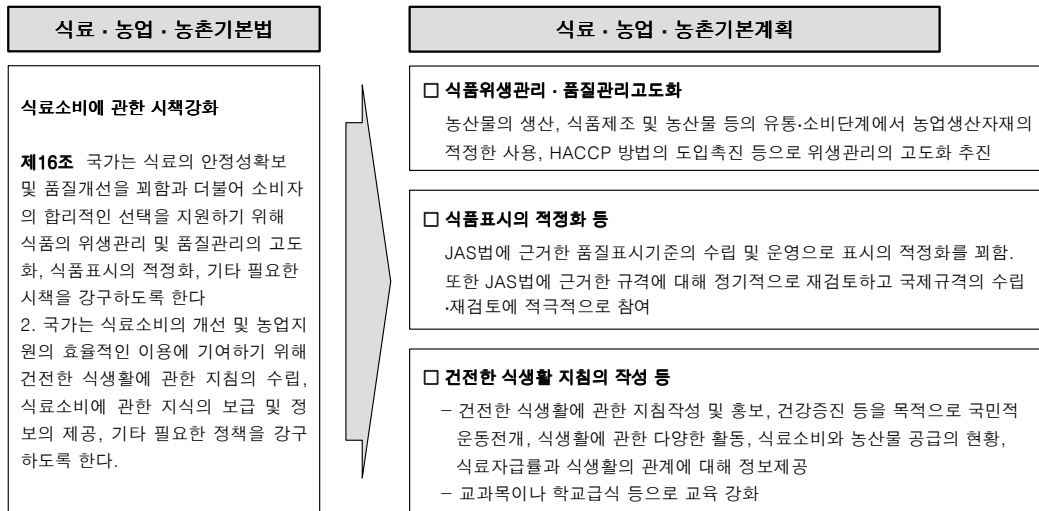


그림 5-10. 식품안전 및 식교육 관련 식료농업농촌기본법과 기본계획의 대응관계



한편 일본의 식품산업관련 주요 대책은 ①식품산업기술대책, ②중소기업대책, ③지역식품대책, ④환경대책, ⑤공업입지대책, ⑥외식산업대책, ⑦산업구조대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대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표 5-17>과 같다.

표 5-17. 일본의 식품산업관련 주요대책

식품산업기술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대책</li> <li>- 식품산업전체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대책</li> </ul>
중소기업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조직화대책</li> <li>- 중소기업 융합화대책</li> <li>- 중소기업 근대화·합리화대책</li> <li>- 중소기업의 구조전환대책</li> <li>- 중소기업의 분야별 조정대책</li> <li>- 중소기업의 고용대책</li> <li>-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대책</li> <li>- 중소기업의 중산간지역 활성화대책</li> </ul>

표 5-17. 일본의 식품산업관련 주요대책(계속)

지역식품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식품산업고도화 총합추진사업</li> <li>- 국산원료 정보시스템화 촉진대책</li> <li>- 향토식품 마케팅력 강화대책사업</li> <li>- 향토인증식품 개발보급사업</li> </ul>
환경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자원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리사이클법)</li> <li>- 식품산업의 재생자원화대책</li> <li>- 농림수산물관련기업 공해방지관련 사업</li> <li>- 공해방지관리제도</li> </ul>
공업입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입지법</li> <li>- 공장재배치 촉진법</li> <li>- 고도기술공업 집적지역 개발촉진법</li> <li>- 식품공업단지형성대책</li> <li>-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특정사업집적의 촉진에 관한 법률</li> </ul>
외식산업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식산업의 조직화 추진</li> <li>- 외식산업의 식재대책의 추진</li> <li>- 외식산업 경영기술혁신</li> <li>- 중소음식업경영개선지도자 육성사업</li> <li>- 외식산업활성화 추진사업</li> <li>- 외식산업표시합리화모델사업</li> <li>- 조사연구의 추진</li> <li>- 지역외식산업 경영합리화대책사업</li> </ul>
산업구조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구조전환원활화임시조치법</li> <li>- 노동시간단축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li> <li>- 식품산업우량기업 등 표창사업</li> </ul>

### 5.3. 소비자청(가칭) 설립에 따른 법률 정비 방향

2008년 1월 소비자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조직설치구상이 제시된 후, 2월에 “소비자행정추진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9월 현재 정부에서는 소비자행정추진회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3개 법안을 170회 임시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소비자청 설치관련 3개 법안은 ①소비자청 설치법안, ②소비자청설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에 관

한 법률, ③소비자안전법안의 제정이다. 정부의 안에 따르면 2009년 4월 1일에 소비자청(가칭)이 발족될 예정이다.

“소비자청설치법”의 시행에 따라 식품 관련 법령의 일괄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식품 표시와 관련하여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 소비자청에 이관되고, “JAS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표시기준의 기획입안과 집행업무가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등도 소비자청 이관을 전제로 일부 규정에 대해 소관부처와의 관계 설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5-18. 소비자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

법률명		구체적 내용
표시	경품표시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JAS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 책정·개정시 농림수산성에 사전 협의·동의 구함 농림수산성은 안을 마련하여 표시기준 책정·개정요청 가능 법집행의 일부에 대해 농림수산대신에 위임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책정 및 개정시에 후생노동성과 사전 협의 후생노동성은 표시기준의 책정·개정요청 가능
	건강증진법	표시기준의 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기준의 책정 및 개정시 후생노동성과 협의
	가정용품품질표시법	표시의 표준기획입안, 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시의 표준책정시에는 경제산업성과 사전 협의 경제산업성은 안을 마련하여 표시기준책정·개정요청 가능 법의 집행의 일부에 대해 경제산업성에 위임
	주택품질확보촉진 등에 관한 법률	표시 등의 기획입안, 표시기준의 책정은 공동관리 집행은 국토교통성이 하지만, 소비자청이 권고
거래	소비자계약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무한연쇄강(講)방지법	
	특정상품예탁법	
	전자소비자계약법	내각부소관부분에 대해 소비자청으로 이관

표 5-18. 소비자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방안(계속)

법률명		구체적 내용	
안전	특정상거래법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획입안·집행을 소비자청으로 이관 경제산업성은 상품의 일반적 사항 등의 입장에서 연계	
	특정전자메일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조치명령 등은 소비자청으로 이관	
	금융상품판매법, 출자법	소비자청도 소관부처에 추가됨	
	업 법	대부업법, 주권업법	기획입안은 공동관리, 등록·면허, 검사, 처분은 부처별 실시 소비자청은 처분에 대해 권고권과 검사권한을 가짐.
		할부판매법, 여행업법	처분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음.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안전	식품안전기본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다만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검토	
	소비생활용품안전법	중대사고정보보고·공표제도를 이관 안전기준설정시에 해당부처의 협의를 받음	
	식품위생법	안전기준설정시에 해당부처의 협의를 받음	
	유해물질가정용품규제법	안전기준설정시에 해당부처의 협의를 받음	
소비자·생활자가 주역이 되는 사회구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청으로 이관	
	국민생활센터법, 개인정보보호법		
	공익통보자보호법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국민생활안전긴급조치법		
	매점매석방지법, 물가통제법		

#### 5.4. 시사점

일본의 식품 관련 법·제도의 특징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식품과 관련된 부처별 소관법률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별로 분산되어 있으나, 품목별로는 대체로 법률이 통합되어 있다.

둘째, 식품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전성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식품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품위생법”에는 기금·조직 등과 같은 산업진흥과 관련된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부처 간 이원화된 관리운영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정례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식품의 안전문제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다양한 개별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바탕으로 개별법과 특별법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농림수산성의 기본목표는 산업진흥이지만 직접적인 산업진흥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추진방법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성확보는 농림수산성내의 소비·안전국이 담당하고, 산업진흥은 농림수산성내의 총합식료국과 생산국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업진흥의 측면에서는 품목횡단적인 산업진흥과 품목별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제 6 장

---

###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방안

이 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개편의 기본방향과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편방안은 개편방향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제시하며, 대안별 추진방향을 명확히 한다. 또한 식품 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사항들을 검토한다.

#### 1. 법률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 1.1. 국제적 기준에 부합

개방화 시대에 식품의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국제적인 통상마찰 가능성을 피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식품법의 내용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국제적 기준을 벗어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으로 판단될 경우 통상마찰을 빚게 되고,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인 Panel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기준을 고려할 때 Codex 위원회의 식품기준을 참조할 수 있다. Codex 위원회는 식품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시 소비자 건강 보호, 식품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보장,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표 6-1. WTO 하의 식품 관련 산업 지원과 규제가 적법할 수 있는 기준

협약	식품에 대한 각종 규제와 관련	농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부분
	위생과 식물위생에 관한 협약(SPS 협약)	WTO의 농업협정
기본내용	식품안전(오염물질, 유해물, 조사, 표시 등), 동식물의 건강과 관련한 국내정책에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농업수출에 대한 기술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협약. 사람·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핑계로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위생 등의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기준, IOE,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및 지역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함.	국내지원, 시장접근, 수출 등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짐. 농업협정 하에서는 농업정책이 식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는 것은 친환경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의 유리한 기초를 형성함. EU의 2003년 CAP Reform(공통농업정책)이 농업보조금정책을 친환경농업,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농업과 관련지은 것도 그 예임.

## 1.2. 소비자 선호에 부응

소비자들이 식품섭취로부터 얻는 포만감 이외에 맛, 포장형태, 영양, 안전성 등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법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1.3. 식품정책의 효율적 운영

식품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이 분명하고, 법률간 연관관계가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법률의 목적이 상충되지 않으며, 법률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위생·안전 관련법과 품질관련법과의 관계, 식품법과 진흥법의 위상 등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 관련 법률 규정의 통합·조정과 합리적 실행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 1.4. 식품산업 정책 활성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식품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흥대상 범위를 분명히 규정하고, 진흥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 2.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안 검토

### 2.1. 식품 법체계 개편안 비교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개편안을 중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1안은 중장기 개편안으로서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안’이며, 제2안은 단기 법률 개선안으로서 ‘식품 품질표시 관련 법률 통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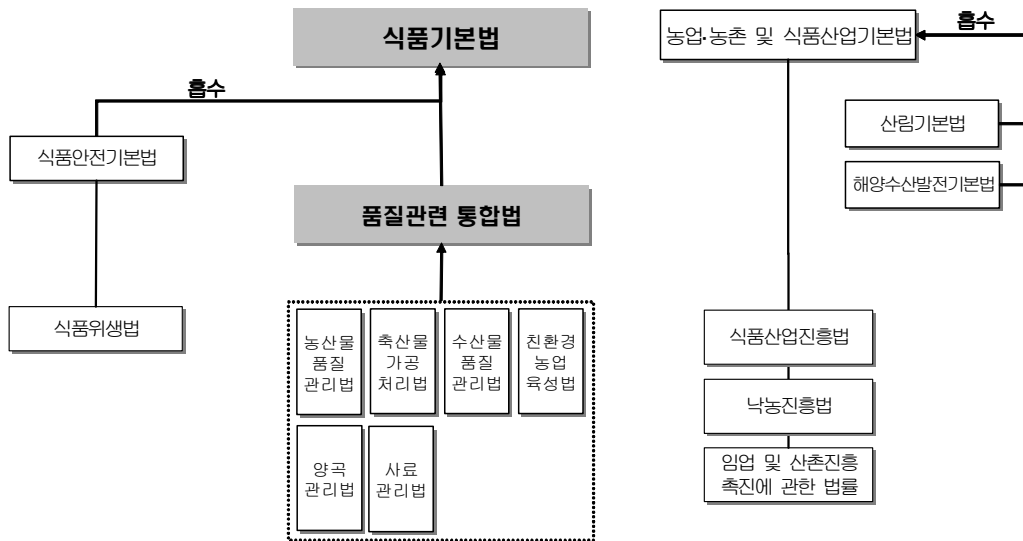
## □ 제1안: 식품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안(중장기 개편안)

식품과 관련된 위생·안전·품질의 문제를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식품법(가칭 식품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관점에서나 식품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은 상호 분리되지 않은 채 그 전체가 식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유럽연합의 예를 보더라도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은 모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건강소비자국에서 관장하고 있고, Codex의 식품규정 위원회 역시 위의 모든 요소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위원회의 업무로 삼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건부(DH)와 환경농림수산식품부(DEFRA)가 식품 업무를 분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법률인 “식품안전법”에서 통합하여 규율하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DH와 DEFRA가 각각 위생, 안전, 품질에 관련한 명령들을 제정하고 있다. 독일의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그 전체를 자신의 업무로 관장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림 6-1>의 개편도와 같이 “식품기본법(가칭)”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식품안전기본법”, 식품 품질관련 법률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통합식품법 체계는 모든 식품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생·안전에 관하여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장치로서 중립적인 위험평가기관을 설치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통합 대상 관련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성식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이며, 통합대상 법률 중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규정들은 분리된다.

식품기본법 통합안은 식품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분산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모순이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존의 기본법을 통합하여 대체해야 하므로 식품 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조정 필요하고, 기존 소관부처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림 6-1.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도(제1안)



□ 제2안: 식품품질표시법 통합안(단기 개편안)

제2안은 식품의 품질관련 법률체계를 통합하여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안으로서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기 개편안이다. 2안에서는 기존 행정의 업무분장이나 식품산업의 새로운 경향 등을 감안하여 식품에서 영양 및 의료와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인 위생 및 건강 관리업무는 “식품위생법”에서 관장하며, 1차 생산물(농산물, 수산물, 축산물)과 이를 반가공·가공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식품 안전관리 영역에서의 업무 분담으로 법률상 중첩되는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이 우선하며, 식품 안전 관련 상위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식품위생법”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관련 법률 각각의 유기적 관련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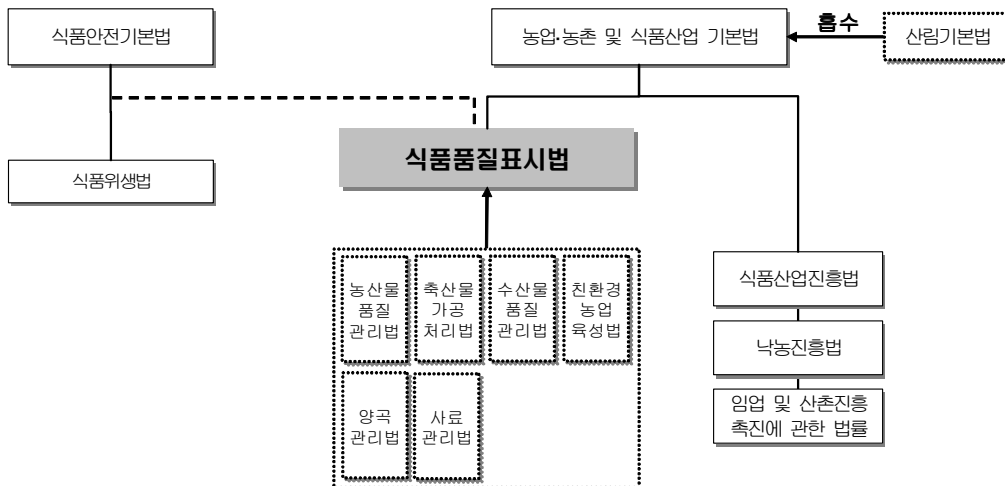
품질 표시와 관련하여 현재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관련규정 중에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

여, 그들을 모아 식품의 품질에 관한 통합법(가칭 식품품질표시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통합 대상은 농산물 등과 그 가공식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이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경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이 “식품품질 표시법(가칭)”과 식품산업 관련 법률의 기본법 역할을 하게 된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 제정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한 것이므로 세부 조항 마련과 관련 법률 간의 조정과정에는 상당 시간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법률체계 하에서 법률 조항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의 품질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련된 항목이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서 품질표시, 검사, 식품단체 및 기금 관련 조항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형태의 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위생 및 건강관련 업무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산업의 품질 관리와 산업 진흥 관련 업무는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식품품질 관련 법 통합 안은 캐나다와 일본과 같은 식품위생·안전 법체계와 품질표시 법체계 분리 사례와 유사하다. 이러한 법체계는 부처간 역할분담 및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정책목표가 명확한 장점이 있다. 또한

그림 6-2.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도(제2안)



기존 식품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소관부처의 반발을 축소할 수 있다. 반면 분야별 관리업무 분담으로 법률적 중복과 모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 2.2.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중·장기적 개편 방향

### 2.2.1. 식품 위생·안전·품질의 통합 관리

소득향상과 식품위해물질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영양, 안전성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과거 식품에 대한 품질 평가 시 규격이나 맛을 중시하였으나, 최근 식품 구입 시 안전성을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sup>20</sup> 따라서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이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 등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확보될 수 있다.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WTO 체제에 가입해 있고, 주요국가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위생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문제는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직전의 유통의 전체과정을 통해 문제될 수 있고, 1차 생산물의 생산단계와 제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특히 식품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농약, 중금속오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생산단계부터 가공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sup>21</sup> 생산단계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

20 소비자들은 채소 구입 시 품질(맛)(36.1%), 안전성(21.1%)을, 육류 구입 시 원산지(43.8%)와 안전성(23.6%)을 우선 고려하고 있었음(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21 농산물: 토양, 농약, 식물 종의 다양성 보장(유전자변형농산물 관리), 검역 등의 관리

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약관리법”, “동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을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토양·농약·식물 중·검역 관리가, 수산물은 성장환경·외래종·검역 관리가, 축산물은 사료관리·동물방역·검역 등의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의 통합관리는 1차생산물부터 가공단계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 2.2.2. 식품의 위험관리 부처로부터 독립된 위험평가기관의 설립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한 제3의 독립행정관청에서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평가기관을 독립한 예는 유럽의 식품안전청, 영국의 식품기준청, 독일의 식품안전청 등이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중립적인 위험평가기관에서 위험평가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상황에서의 긴급명령권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위험평가기관에서 각각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업무와도 일정 부분 중첩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청을 매개로 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식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의 관계 역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2.2.3. 식품 관련 법률의 개편방향: 식품 관련법과 산업육성법의 분리

수산물: 성장 환경 관리, 외래종, 검역 등의 관리

축산물: 사료관리, 동물 방역, 검역 등의 관리

관련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동식물 방역법”, “사료관리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식품에 관한 각종의 규제(위생, 안전성, 품질, 표시 등)는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WTO 체제 하에서는 WTO 분쟁기구인 Panel에서 이런 기술적 장벽이 국제기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이를 시정해야 하므로 많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PS 협약에서는 소비자의 건강·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동물·식물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보존하는 것을 위한 규제는 무역을 저해하는 기술적 장벽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또한 AoA에서는 환경보존 등을 위한 농업지원이 허용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농산물등과 관련된 식품법을 정비할 때에도 그 기준은 생산자의 측면에서는 환경보존, 동식물의 생존과 다양성의 보장을,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건강,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식품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식품에 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 상충이 가능하므로 식품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가 불분명하며, 국민의 불신이 우려된다. 또한 위생은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서 진흥과 같이 두는 것은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농림수산물 및 가공식품과 관련된 식품법을 정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적 관점에서 친환경농업 및 관련 식품산업의 육성법으로 양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농업 등의 육성 및 관련식품산업의 육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은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법 형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 2.2.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통일 식품법을 정비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이다. 중앙부처는 정보 수집과 분석, 연구역량 강화, 외부와의 정보교류 등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행정부처로부터 독립한 중립적인 의



견을 제시하는 집단을 육성하고, 그 집단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정부의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위험관리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에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촉진할 수 있다.

식품의 영업 허가·신고·등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이어야 할 것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영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청장이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든 중앙행정부처는 허가, 신고, 등록업무에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력추적등록업무 역시 각기 분산되어 있어서 집행에서의 혼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력추적등록에 있어서 중앙부처가 이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위험관리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타당한지 재고가 필요하다. 중앙부처는 이력추적등록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공무원의 집행 감독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안전과 관련한 감독업무는 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예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3. 단기적 개선방향

### 2.3.1. 식품위생·건강관리 업무와 1차 생산물 등 안전관리 업무의 분리, 품질관련 법 통합

식품의 위생·안전·품질 관련 통합 법률을 제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관부처로 식품 업무를 담당하는 안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부

처 간 업무 조정이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지향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식품의 안전 관련 업무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역할 조정이 필요하며, “식품위생법”은 위생 및 건강 관련 관리업무와 안전기준 정립 등의 역할을 정립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1차 생산물과 그 가공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한다. 특히 1차생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에 관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인증·소비자 정보 제공 등과 관련 조항 등을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관한 통합법(가칭 식품품질표시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양 법률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서 중첩되는 영역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소관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된다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법 간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 2.3.2.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와 농림수산식품부 간의 업무 협조 관계의 확립

식품 일반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업무는 “식품위생법”에 기초하여 수행되지만, 1차생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위생·안전관리업무는 통합된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양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업무협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의 감독 업무를 직접 일선에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혼선과 혼란이 발생하여, 업무의 집행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식품의 위생, 안전 관련된 시행령의 제정, 개정, 각종의 지침의 마련에 앞서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② 긴급한 명령은 어느 부서에서라도 하되 사후협의를 의무화, ③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절차 등을 통일

(가령 시민식품감사인, 식품감사인, 명예식품검사인 등 용어의 통일, 모범업소, 우수업소 등의 제도를 들지 여부 등) 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식품안전법”을 근거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부(DH)와 협의하여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관련된 명령을 내려 왔고, 환경농수산식품부(DEFRA)의 설립 이후에는 DH와 DEFRA가 “식품안전법”에 근거하여 각각 필요할 때마다 관련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식품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과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치 단일한 법률(가령 영국의 식품안전법)에 기초하여 두 개의 부서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양자의 협조체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현행의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4.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선방안

### 2.4.1. 정의와 범위 명시

진흥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정의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식품의 정의에 기초할 경우 농수산물 원료가 강조됨에 따라 식품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산물 가공산업의 경우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됨으로써 진흥의 대상인 식품산업의 범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식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되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정책 대상과 일치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정책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에 정의가 누락됨에 따라 정책대상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7.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

표 6-2. 다른 나라의 식품에 대한 정의

국가	법률	정의
유럽연합	식품기본명령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섭취하는,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에 따라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
영국	식품안전법	(a) 음료 (b) 인간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가치없는 품목과 물질 <sup>22</sup> (c) 씹는 껌과 기타 이와 같은 제품 (d) 식품의 준비에 구성 재료로서 사용되는 물질 또는 이러한 것
독일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FGB)	EU의 기본명령 178/2002에서 규정한 식품
일본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로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의 품은 포함하지 않음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인간이 먹는 음식 또는 음료, 씹는 껌, 그리고 음식에 첨가되는 각종 재료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판매되거나 표현된 모든 물품

생산...) 등 식재료에 대한 정의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 식재료를 언급하고 있어 “식품산업진흥법”의 대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용어 정의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와 누락된 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관련 법에 누락되어 있는 외식과 한식, 식재료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에서 식재료(43.8%), 한식(30.4%), 외식(29.0%)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2.4.2. 진흥정책의 효율적 운영 위한 진흥수단 보완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진흥수단으로서 진흥사업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조항이 법률 내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sup>22</sup> 영국은 common law 국가로 법률 이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집적되어 온 법이 있기 때문에, 식품(food)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영양목적으로 인간이 섭취하는 것”도 인정하고, 그 밖에 이러저러한 것도 포함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영양가치없는 품목”의 원문은 “of no nutritional value”이다.

식품산업진흥을 위해 식품기업 및 협회와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할 책임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10장의 제1절, 동업자조합 관련 규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또는 통합식품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산업 관련 협회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법률적 근거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48.8%)와 전통식품·농업경영체(53.3%), 소비자단체(75.0%)의 과반수가 “식품산업진흥법”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표 6-3>. 식품접객업체는 61.3%가 “식품위생법”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앙부처 관련 업무가 대부분 위생단속을 중심으로 주로 식약청과 관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진흥법에 협회 및 진흥회 설립조항을 포함한 사례는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낙농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이다 <표 6-4>.

표 6-3. 식품산업관련 협회의 소속 법률에 대한 의견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39(48.8%)	4(5.0%)	12(15.0%)	25(31.3%)
식품접객업	6(19.4%)	3(9.7%)	3(9.7%)	19(61.3%)
전통식품·농업경영체	8(53.3%)	3(20.0%)	2(13.3%)	2(13.3%)
소비자단체	6(75.0%)	1(12.5%)	1(12.5%)	-

주: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6-4. 진흥법에서 협회관련 조항 포함 사례

진흥법	협회&진흥회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3장 41조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5장 20조
낙농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제5조
식품산업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제5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보건복지가족부)	제2장 6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지식경제부)	제14조 2&3, 제30&31조

현재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도 식품제조·가공업체(50.0%)와 전통식품·농업경영체(66.7%), 소비자단체(75.0%)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5>. 식품접객업체의 51.6%는 기금이 주로 식품접객업체의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에 위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금관련 조항은 대체로 기본법이나 진흥법에 포함되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표 6-6>. 기본법에 기금관련 조항이 포함된 사례는 “과학기술기본법”, “관광기본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수이다. 진흥법에 기금관련 조항이 포함된 사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이 있다.

표 6-5. 식품진흥기금의 소속 법률에 대한 의견

	식품산업진흥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제조·가공업	40(50.0%)	1(1.3%)	14(17.5%)	25(31.3%)
식품접객업	9(29.0%)	2(6.5%)	4(12.9%)	16(51.6%)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0(66.7%)	3(20.0%)	-	2(13.3%)
소비자단체	6(75.0%)	-	2(25.0%)	-

주: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표 6-6. ‘기금’이 언급된 법

법률명	기금
청소년 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제8장 53, 5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제5장 39 ~ 42조
문화예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제4장 16 ~ 19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보건복지가족부)	제3장 21조
산업디자인진흥법(지식경제부)	제12조

## 2.5.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조항 검토

### 2.5.1. 표시기준 관련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국민 보건의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식품위생법”에는 품질관리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조항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표 6-7>. 즉,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 중에서 위생과 관련이 없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은 식품 담당 부처로 이관되어야 한다.

제10조의 표시기준을 근거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고시되고 있는데, 위생 기준을 제외한 품질관련 기준이 해당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고시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부처 간 협의 없이 중요한 품질기준 관련 개정이 시행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제10조의 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의 경우 원산지 표시가 위생 등과 직결되지 않고 품질관리와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므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법률의 조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가 중복 규정되므로 통합조정되어야 한다.

제5장 12조를 근거로 한 「식품공전」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유형 및 품질기준은 기본적으로 산업의 보호 측면이 강한 부분이다. 「식품공전」 중 산업경쟁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원칙에 부합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 2.5.2. 검사 관련

제6장 ‘검사등’의 제17조(출입·검사·수거등)에도 영업질서에 관한 표시위반이 검사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검사가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식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sup>23</sup> 또한 검사규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중앙부처(식품안전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는 긴급한 경우 출입검사수거를 하되, 원칙적으로 평가업무 및 관리업무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에서 출입검사를 할 때 처리지침에 관하여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평가, 허위표시에 대한 규제 등을 일선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여야 하고, 중앙부처는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위생기관의 지정, 자가품질검사의무, 위생감시원제도 등도 부처간 협의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장 29조의 ‘품질관리 및 보고’ 조항은 전형적으로 식품 품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식품산업진흥법”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하고, 중앙부처는 보고처리기준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업기준의 경우 위생과 관련이 적은 기준 항목이 존재하므로 부처간 협의를 필요하며, 허가·관리·제한업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제 감독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2의 HACCP 규정은 위생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 하되, 시설 및 자금 지원 등 식품산업에 HACCP를 활성화시키는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2조3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관련 조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원칙하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

---

23 출입·검사·수거 등(식품위생법 제17조 1항)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영업상 사용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을 검사…수거…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



표 6-7. 현행 식품위생법 조항별 주관법률 성격 검토

법조항		주관해야 할 법률		
		식품 위생법	식품산업 진흥법	부처간 협약
제4장 표시	제10조 (표시기준)		○	
	제10조의2 (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	
	제10조의3 (쌀·김치류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	
제5장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	○
제6장 검사등	제13조(위해평가)	○		
	제15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등)	○		
	제16조의2 (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17조(출입·검사·수거등)			○
	제17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
	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
	제20조(식품위생감시원)			○
	제20조의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제20조의3(시민식품감사인)			○	
제7장 영업	제21조(시설기준)			○
	제22조(영업의 허가등)			○
	제24조(영업허가등의 제한)			○
	제25조(영업의 승계)			○
	제26조(건강진단)	○		
	제27조(위생교육)	○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	
	제30조(영업의 제한)			○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31조의2 (위해식품등의 회수)			○
	제32조(위생등급)	○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제32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절 동업자 조합		○	
	제2절 식품공업협회		○	
제12장 보칙	제66조(국고보조)	○	○	○
	제67조(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	○		
	제69조(집단급식소)	○		
	제71조(식품진흥기금)		○	

### 2.5.3. 식품단체 및 기금 관련

제10장에서 식품단체의 조합에 관한 사항과 제12장 보칙 제71조에서 식품진흥기금 등은 위생과 관련이 없으며, 식품산업부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 징수된 과징금으로 상당부분 충당되지만, 위생시설지원·교육 및 홍보사업 등 식품산업체 진흥을 위한 지원과 관련이 된다.

### 2.5.4. 건강기능식품법 위상 검토

식품과 의약품은 섭취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의약품과 달리 식품은 생명과 건강, 소비자 보호라는 일반 목적을 추구한다. 한편 최근 들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의약품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이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제조 자체에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위해성 평가 및 위해기준 또는 안전기준을 정하는 역할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관여·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건강기능성 식품은 약제와는 섭취 목적에서 엄격히 구분되며, 건강에 유익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건강식품에 관한 관리도 식품을 관리하는 부처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약제와의 엄격한 구별을 전제로 기능성 식품의 활성화는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

#### 3.1. 법 개정 시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은 필수적이거나 잦은 법률 개정은 시행자는 물론 업체 및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포장지 변경 등을 수반함으로써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실제 식품업체와 소비자 조사결과 표시와 관련한 법의 개정 빈도가 자주 바뀌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법률 조항의 개정 건수가 125회에 달한다<표 6-8>.

일본의 경우 법 개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며, 개정법의 시행자 및 수요자가 개정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 “JAS법” 등을 5년 주기로 개편하고 있다.

표시관련 개정 빈도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개정 시기를 맞추거나, 기간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체 및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부처별로 개정 시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 75.2%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예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7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법의 홍보, 교육

##### 3.2.1. 법 해설서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법 조항에 대한 이해 정도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소관부처나 관련 협회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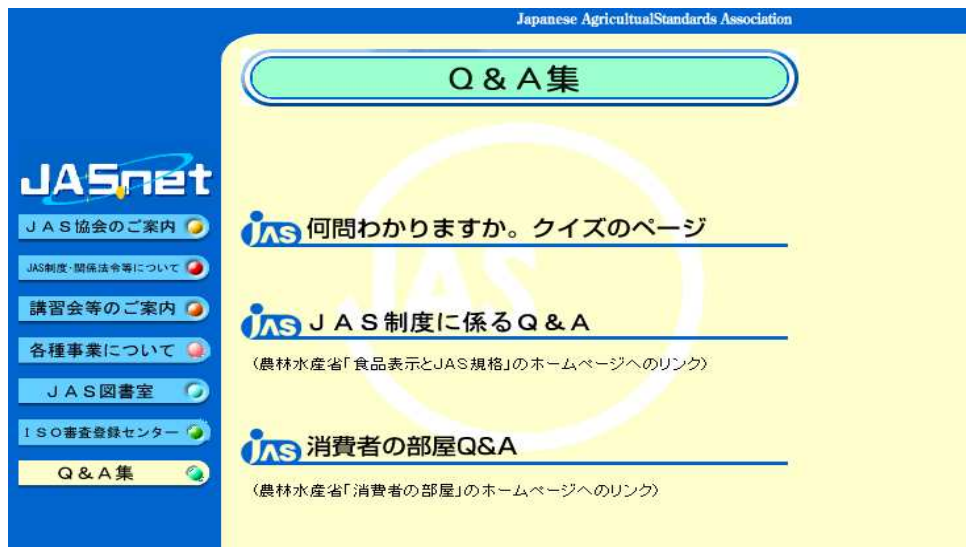
표 6-8. 식품 관련 법률별 개정 건수(2007년 기준)

소관 부처	법률명	개정일	개정 및 신설 건수(건)
농림 수산 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07.6.26 2007.9.10 2007.12.6	신설 1건, 전문개정 2건, 개정 5건 개정 2건 개정 2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07.6.29	신설 3건, 개정 8건
	축산물가공처리법	2007.4.11 2007.12.21	개정 1건 신설 2건, 개정 8건, 삭제 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2007.12.13	개정 1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07.6.28	개정 2건
	수산물품질관리법	2007.1.19 2007.1.26 2007.4.11 2007.8.3 2007.12.21	개정 1건 신설 3건, 전문개정 1건, 개정 7건 개정 6건 신설 3건, 개정 11건 개정 2건, 삭제 1건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2007.9.10 2007.10.31 2007.12.13	개정 2건 개정 1건 전문개정 1건, 개정 3건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2007.10.18 2007.12.20	개정 3건 전문개정 1건, 개정 1건	
보건 복지 가족부	식품위생법	2007.12.21	신설 6건, 전문개정 1건, 개정 12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7.3.27 2007.12.13	개정 1건 개정 3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07.11.30	개정 1건
	식품공전	2007.5.23 2007.10.30	신설 3건, 개정 1건 개정 1건, 통·폐합 1건, 완화 1건
	식품등의 표시기준	2007.1.12 2007.10.19	도입 2건 개정 및 개선 8건

현재 법무부와 농림수산물식품부 홈페이지에 민원인의 질의에 응답(Q&A)해주는 코너와 민원인의 상담사례(FAQ)코너가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식품 관련 법에 관한 해설서를 발간한 예는 없는 상황이다. 식품법과 관련된 해설서로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서 ‘개정 학교급식법’ 해설서가 유일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부분 법률에 대해 해설서나 Q&A를 발행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6-3, 6-4>.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식품업체와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법 해설서나 Q&A집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업체의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9>. 특히 식품제조·가공업체(87.6%)과 전통식품·농업경영체(100%)의 거의 대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림 6-3. JAS법에 관한 Q&A



주: 농림수산물 외곽단체인 JAS협회의 HP를 통해 제공되는 Q&A

그림 6-4. 법 해설서



[ 개정 JAS법을 소개하는 팸플릿 ]



[ 식품용기포장 리사이클에 관한 팸플릿 ]

표 6-9. 법 해설서 및 Q&A집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식품제조·가공업	1(1.2%)	-	9(11.1%)	15(18.5%)	56(69.1%)	4.55
식품접객업	1(1.6%)	5(7.8%)	20(31.3%)	12(18.8%)	26(40.6%)	3.91
전통식품·농업경영체	-	-	-	11(47.8%)	12(52.2%)	4.52
소비자단체	-	-	2(33.3%)	2(33.3%)	2(33.3%)	4.00

주 1)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2) 평균 1점-전혀 필요하지 않음. 5점-매우 필요함

### 3.2.2. 법의 홍보

식품 관련 법률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적 운영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나 업체, 소비자단체에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고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식품 관련 법의 홍보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업계에서는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한 언론홍보(식품제조·가공업 50.7%, 식품접객업 40.6%, 전통식품 및 농업 34.6%)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과 홍보, 해설서 작성, 소비자의 식품표시관리 참여 확대 등도 긍정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표 6-10. 식품 관련법 홍보증진 방안

	매스컴 및 인터넷을 통한 언론홍보	소비자단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	해설서 (Q&A집) 작성	소비자의 식품표시 관리 참여확대	기타
식품제조·가공업	38(50.7%)	13(17.3%)	15(20.0%)	7(9.3%)	2(2.7%)
식품접객업	26(40.6%)	14(21.9%)	13(20.3%)	10(15.6%)	1(1.6%)
전통식품·농업경영체	9(34.6%)	8(30.8%)	4(15.4%)	5(19.2%)	

주: 식품업체 188곳, 소비자단체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 제 7 장

---

### 식품 관련 통합법률(안) 개요

이 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 방안에서 제시한 통합법률안의 개요를 제시한다. 통합 대상 법률과 통합법률안의 특징을 설명하고, 개략적인 법률 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식품기본법(가칭)의 개요

##### 1.1. 통합될 법률

통합대상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이다. 관련 법률들의 식품의 위생, 안전, 품질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한 식품기본법을 제정한다.



## 1.2. “식품기본법(가칭)”의 특징

“식품기본법(가칭)”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감독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식품 생산자·제조자·유통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차적인 책임이 식품의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들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밝힌다. 즉, 위생 및 안전관리의무, 이력추적의무를 명시한다.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식품의 기준과 규격, 식품접촉물질의 위생과 안전규정, 식품첨가물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다.

식품생산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식품의 표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높은 품질의 식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식품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친환경식품, 유기농산물, 전통식품, 지리적 특산물 등 우수한 식품에 관한 인증제도가 규정되며, 인증식품을 제조하는 산업에 대한 육성은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한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의 규제에 관한 규정으로 GM 식품, 신종식품, 식품의 영양표시, 건강표시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 이는 GM 식품과 신종식품의 생산, 제조, 판매의 요건(허가)과 영양표시 및 건강표시의 요건(허가)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식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위험관리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며, 위험관리업무의 실제적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함을 분명히 밝히고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식품의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중립적인 위험평가기관에 관한 규정과 식품의 위생·안전 및 품질에 관한 학문적, 과학적 자문을 담당할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 1.3. 개요

법률의 구조	포함될 내용	기본특징
제1장 총칙	- 법률의 목적 - 용어정의 - 여타 법률 및 국제적 기준과의 관계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접촉물질, 영양표시, 소비자, 생산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
제2장 식품법의 일반원칙	- 식품법이 추구하는 목표 - 위험분석과 위험관리의 일반원칙 - 예방원칙 - 소비자의 이익보호 - 생산자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	- 공중의 생명과 건강,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되, 동물, 식물의 안전과 건강, 다양성의 유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밝힘 -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초한 위험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식품제조, 생산,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음을 밝힘
제3장 위생과 안전	- 사료 및 생산 단계에서의 위생 및 안전관리 - 식품의 안전기준과 식품의 성분 규격 - GM 및 신종 식품에 관한 사항 - 이력추적의무와 등록 - HACCP 등록	
제4장 표시와 인증	-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 - 영양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각종의 인증 표시(유기농산물, 지리적 원산지 표시, 전통식품 등)	-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가 식품표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예외규정 - 식당 등 조리업체에서 부담하는 표시의무와 예외규정 등이 포함됨 -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 효력
제5장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감독 권한	-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권한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긴급명령권한의 공유	- 중앙행정부처 장관은 감독의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는 것임을 밝힘 - 긴급명령권한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위험평가기관 등에서 각각 공유하도록 함(식품안전기본법도 동일한 취지임).
제6장 식품기본법상 의 권한 위임 규정	- 위생과 안전, 표시와 인증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할 권한을 위임 - 감독집행권한의 위임	- 단일한 시행령이 아니라, 독일, 영국처럼 위생에 관한 규칙,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 등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함. - 가령 식품 표시에 관한 명령/식품 위생에 관한 명령/식품의 위생 및 안전 검사에 관한 명령 등
제7장 위험평가 기관 규정	독립된 위험평가기관의 구성, 권한 등에 관한 규정	
제8장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부처의 위험관리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두도록 함	
제9장 벌칙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2.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개요

### 2.1. 통합될 법률

단기적으로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을 제정한다면 개별 법률의 품질 표시와 인증에 관한 법률규정들이 통합될 수 있다. 통합대상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중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 및 관련규정(별칙)’, “양곡관리법” 중 제20조 내지 제21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별칙 포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중 제2장, 제3장 및 관련규정(별칙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제2장 및 관련규정(별칙 포함), “식품산업진흥법” 중 제4장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규정(별칙포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관련규정 등이다.

“식품위생법” 중에서 통합되어야 할 규정으로는 ‘표시기준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제10조),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규정’,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제10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제32조의3) 등이다.

### 2.2.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특징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법률 규정으로는 안전성관리(자체관리와 행정청에 의한 공권적 개입), 거래를 위한 기본적 표시사항, 품질표시규정, 담당관청/시행을 위한 권한위임, 별칙 등이다. 안전성 관리는 토양관리, 농약관리, 사료(축산, 수산을 위한 사료)

관리 등 1차 생산물의 생산 환경에서부터 필요하며, 이력추적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유전자변형동식물과 1차 생산물을 가공하는 신종식품의 제조·유통에 관한 허가사항도 규정된다. 또한 위원회, 품질관리기관, 등록·허가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규정에서 2009년부터 시행될 “식품안전기본법”은 통합될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상위법이고, 식품위생과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이 일반법이 된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서 식품위생과 관련된 규정을 두면 그것은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식품위생법”에서의 위생관리부분과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서의 위생관리가 중첩할 경우 후자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각기 다르게 규율하던 벌칙규정들도 “식품품질표시법(가칭)”에는 통일적으로 규율될 것인데, 공정위 소관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의 처벌규정과의 관계에서 2중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통합식품법이 특별법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2.3. 통합식품에서의 개념정의

### 2.3.1. 현행법의 개념정의

	현행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부분 등 식육과 그 포장육, 원유, 식용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

	현행
농산물가공품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 및 민예품
식육가공품/유가공품 /알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농축립산물을 포함)
유기가공품	식품산업진흥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 2.3.2. 식품품질표시법에서의 개념정의

	식품품질표시법에서 개념정의할 경우
농·수·축산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축산물,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농·수·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에서 상세한 내용을 정함)
친환경농·수·축산물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	친환경 농·수·축산법에 따른 유기 농·수·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우수식품	우수농산물(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농산물), 우수축산물, 우수수산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산물, 친환경수산물, 지리적표시(농산물등과 그 가공품), 유기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통합한다

## 2.4. 개요

법률의 구조	포함될 내용	기본특징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목적</li> <li>- 적용범위</li> <li>- 용어정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생산물 및 그 반가공 또는 가공식품을 적용 대상으로 함.</li> <li>- 이 법에서 적용될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그 가공식품을 정의함.</li> <li>- 기타의 용어는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준용함.</li> </ul>
제2장 식품품질 표시법의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품질표시법이 추구하는 목표</li> <li>- 소비자의 이익보호</li> <li>- 생산자의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의 생명과 건강, 소비자의 선택권의 보장,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되, 동물, 식물의 안전과 건강, 다양성의 유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밝힘.</li> <li>-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가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1차적인 의무를 부담함을 명시</li> </ul>
제3장 위생과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 및 생산 단계에서의 위생 및 안전관리</li> <li>-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의 안전기준과 식품의 성분 규격</li> <li>- GM 및 신종 식품에 관한 사항</li> <li>- 이력추적의무와 등록</li> <li>- HACCP 등록</li> </ul>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식품의 안전기준과 식품의 성분 규격에 관하여 규정할 근거법규가 식품품질표시법임을 밝힘. 대신 관련 분야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세부적으로는 연락선을 설정하여 협의하도록 함).
제4장 표시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li> <li>- 영양표시</li> <li>- 건강기능식품의 표시</li> <li>- 각종의 인증 표시(유기농산물, 지리적 원산지 표시, 전통식품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제조자, 유통업자가 식품표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과 예외규정.</li> <li>- 식당 등 조리업체에서 부담하는 표시의무와 예외규정 등이 포함됨</li> <li>-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적 효력</li> <li>- 식품위생법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를 둔 사항(영양표시,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함.</li> </ul>
제5장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부처 장관의 권한</li> <l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li> <li>- 긴급명령권한의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부처 장관은 감독의 기준과 지침을 설정하는 것임을 밝힘.</li> <li>- 긴급명령권한은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각각 공유하도록 함(식품안전기본법도 동일한 취지임).</li> </ul>
제6장 권한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과 안전, 표시와 인증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정할 권한을 위임</li> <li>- 감독집행권한의 위임</li> </ul>	단일한 시행령이 아니라, 독일, 영국처럼 위생에 관한 규칙, 식품표시에 관한 규칙 등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시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함.
제7장 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부처의 위험관리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도록 하기 위해 자문기관을 두도록 함.	
제8장 벌칙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제 8 장

---

### 요약 및 결론

#### ■ 연구의 목적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식품 관련 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국내 식품 관련 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수요자 조사를 통한 실행평가, 주요국의 식품법 사례 검토를 통해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식품법 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 국내 식품 관련 법체계 분석

제2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령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법률의 목적과 실태를 중심으로 법령 체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법령은 약 200건으로 식품류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밖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수법이 존재한다. 식품 관련 법률을 내용면에서 구분하면 안전, 품질, 산업진흥으로 나눌 수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상위법은 “식품안전기본법”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법률이 하위법률로 위치하고 있다. 식품 품질 관련 법률체계는 식품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들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는 것이 특

징이다. 식품산업관련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간으로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및 음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를 평가하고, 식품 관련 법률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평가에서는 식품 관련 기본법 역할 부재, 식품 관련 법률 목적 중복, 안전관리 분담에 따른 관련 법 분산, 식품 품질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식품산업 법체계 정비 미흡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국내 식품 관련 법률체계는 5가지로 평가 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식품과 관련된 기본법 중에는 전체식품을 망라하는 기본법이 없고, 소관부처별로 기본법이 분산되어 있다. 이는 관련 정의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식품 관련 법률의 목적이 위생, 안전성, 품질표시, 산업진흥 중 2~4개의 목적과 관련됨에 따라 법률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관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식품의 안전관리가 부처별로 분담됨에 따라 안전 관리와 관련한 법률들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다. 중앙부처의 식품위험 정보 수집·위험평가기능·위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이 소홀해지며, 지자체에서도 업무 수행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넷째, 식품의 품질표시 관련 법률은 품목별로 개별 법률에 포함되어 분산·규정 되어 있으며, 상위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식품위생법”도 기준·규격, 표시 등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하며, 진흥법제의 요소인 기금이나 단체설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식품 관련 법률 규정 검토에서는 법률간 불일치 또는 모순점을 중심으로 세부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식품의 정의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다르고, 가공식품에 대한 규정도 “식품위생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업종의 허가 및 신고에서도 대상 식품류를 기준으로 관련 법률을 근거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사한 기준·규격 설정 업무를 각 소관부처에서 분산하여 수행함으로써 위해 관련 기준 설정 업무의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



다. 식품의 표시기준도 식품별로 소관부처에 따라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허위표시금지조항에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법률별로 벌칙규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수요자의 법 실행 평가

제4장에서는 식품업체, 농어민경영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 시 문제점과 법체계 운용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식품제조·가공업(35.8%)과 식품접객업(37.3%)은 관련 법률이 너무 많음을, 전통식품·농업경영체(51.7%)와 소비자단체(50.0%)는 관련법과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을 식품 관련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기본법’ 제정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의 소관부처로 가공업체에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법의 통합에 대해서도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통합 방향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하는 안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소비자단체는 안전과 진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기준은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생산부터 소비까지 관장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통합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식품의 표시 및 인증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원산지 표시’, ‘HACCP’, ‘유기식품인증’, ‘식품이력제’ 등이 여러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 대체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식품접객업은 원산지 표시제(1.86점)에 대해, 전통식품·농업경영체는 식품이력제(1.50점)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평가와 법 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 해설서 및 Q&A집의 발간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체의 87.6%와 전통식품·농업경영체 100%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 법의 홍보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 외국의 식품관련 법체계 검토

제5장에서는 EU,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의 식품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U의 식품법은 “식품기본법(178/2002/EC)”과 관련 지침·명령 체계이다. EU의 식품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구호 하에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1차 산업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며, 전체 식품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표시에 관한 다양한 명령과 지침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의 식품 관련 업무는 환경·식품·농업부(DEFRA)와 독립외청인 식품기준청(FSA)이 담당하고 있다. 위험관리는 보건부(DH)와 DEFRA가, 위험평가는 FSA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식품법은 “식품안전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식품성분, 표시, 위생, 신종식품, 유해물질, 감독 등은 모두 규칙(Regulation)으로 처리하고 있다. 독일 식품법의 특징은 식품농림소비자보호부(BMELV)에서 위생·안전을 모두 책임지고 식품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세부사항을 규칙(시행령)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식품법은 개별법 중심으로 발전해 오다가 전체를 통합하는 법인 유럽연합의 기본명령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해 2005년 “식품·생활필수품·사료법(LFGB)”을 제정하였다. 또한 식품에 대한 모든 업무를 BMELV에서 처리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진 연방위험평가연구소(BfR)가 위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농업부 산하기관인 식품검사청(CFLA)과 보건부(Minister of Health Canada)가 식품안전에 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며, 여타의 연방정부 관련부서 및 주정부의 식품 관련 부서는 연방정부의 해당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식품 관련법은 “식품의약품법”을 중심으로 하며, 그 외 식품산업진흥, 안전, 표시에 대한 법률 등이 보충적 역할을 한다. 연방차원의 식품 관련법 중 하나인 “소비자포장 및 표시법”은 포장 및 표시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법이다. 주정부에서도 다양한 식품산업 관련 법규가 존재하나, 연방차원의 “식품의약품법”이 기본법으로 모든 주 법의 상위법 역할을 하여 혼선을 빚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식품 안

전과 관련하여 시장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식품법의 별칙과 규제의 권한은 약한 편이다.

일본에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육기본법”이 내각부 소관이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서 대부분 법을 관장하고 있다. 안전성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이 기본법 역할을 하며, 안전성 문제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후생노동성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등 식품 관련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식품표시에 관한 법률로는 크게 “식품위생법”과 “JAS법”이 있으며, 이원화된 제도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양 부처에서 매월 1회 ‘식품의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검토를 하고 있다.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다. 최근에는 소비자관련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소비자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청설치법”의 시행에 따라 식품 표시·안전과 관련된 법의 일괄적인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식품 관련법은 국내처럼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별로 분산은 되어 있으나 품목별로는 대체로 통합되어 있으며 식품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분담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부처간 이원화된 관리운영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과 진흥에 관한 상위법을 명확히 하여 개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 ■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 방안 제시

제6장에서는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 방안과 운영의 합리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며, 식품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식품산업 정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개편안은 중장기와 단기로 제시하였다. 제1안은 중장기 개편안으로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에 관한 법률 통합안’으로 기존의 “식품안전기본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포괄하는 “식품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식품 품질관련

법률들을 포괄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식품기본법(가칭)”은 식품 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분산체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모순이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식품 관련 법체계의 대폭적인 조정과 기존 소관부처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2안인 단기 개편안은 ‘식품품질관련 법률 통합안’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인 식품의 품질 표시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를 추출하여 식품의 품질에 관한 통일법(가칭 식품품질표시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는 부처간 역할분담 및 상호 견제에 의한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기존 소관부처의 반발을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야별 관리업무 분담으로 법률적 중복과 모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의 제정과 관련 법률 간의 조정과정에는 상당 시간 지체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위생 및 건강 관련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가공식품의 품질 및 식품산업 진흥에 관련 조항은 “식품산업진흥법”에 포함하는 형태의 조정이 필요하다.

식품 관련 법률체계의 중·장기적 개편안은 식품 관련 위생·안전·품질의 통합과 식품법과 식품산업법의 분리 방향에 기초한 대안이다. 이 대안은 식품의 위생을 포함한 안전문제와 품질 관리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위생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문제는 1차 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단계 전체 과정을 통해 문제될 수 있고, 1차 산물의 생산단계와 제조·가공단계에서 위생과 품질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식품의 위생·안전·품질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식품법의 통합관리는 1차 산물부터 가공단계를 포함한 식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업담당부서로부터 독립한 제3의 독립행정관청에서 위험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험평가기관을 독립한 예는 유럽의 식품안전청, 영국의 식품기준청, 독일의 식품안전청 등이다. 한편 식품에 관한 각종의 규제(위생, 안전성, 품질, 표시 등)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이해 상충이 가능하므로 식품법은 식품산업육성법과 분리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간의 업무분장 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방향을 지향하여 법제도를 정비해나가면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률의 정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 생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에 관한 법률을 관장할 수 있는 “식품품질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식품위생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 법률 중 위생 및 안전관리에서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 관계를 규정하여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률간의 관계 규정 외에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간의 업무 협조 관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2중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산업진흥법”은 진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식품에 관한 정의를 공통으로 하고,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진흥수단으로서 진흥사업의 예산과 조직에 대한 조항이 법률 내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품질 규격 및 기준과 관련 사항과 기금 및 협회 관련 조항 등이다.

식품법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 하며, 개정법의 시행자 및 수요자가 개정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와 업체에서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설서나 Q&A 집을 발행하고, 법에 대한 수요자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제7장에서는 식품 관련 통합법률(안)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중·장기안으로 제시한 식품기본법의 통합대상 법률은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양곡관리법”, “사료관리법” 등이다. 관련 법률들의 위생, 안전, 품질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단일한 식품기본법을 제정한다. 통합된 식품기본법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감독함으로써 높은 품질의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더불어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 생산·제조·유통 단계에서의 위생 및 안전관

리의무, 이력추적 의무를 명시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식품 표시 실현, 식품의 규제 등이 명시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식품품질표시법(가칭)”을 제정한다면 개별 법률의 품질 표시와 인증에 관한 법률 규정들이 통합될 수 있다. 통합대상 법률은 현재 농림수산물부산하의 농·축·임·수산물 등과 관련된 법이며 “식품위생법”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제10조),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10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32조의3) 등이다. 뿐만 아니라 법률별로 다르게 규율하던 품질 표시와 관련된 별칙규정들도 통합하고 대상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품질 표시와 인증에 관한 법률·규정의 통합은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생산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품질 기본법의 일반원칙, 위생과 안전, 표시와 인증, 감독, 권한위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것이다.

## 부록 1

---

### 유럽연합 기본명령 178/2002

Preamble(전문) 생략

#### 제1장 적용범위 및 개념규정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명령(Verordnung/Regulation)은 역내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면서, 전통제품을 포함한 식품공급의 다양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식품과 관련한 인간의 건강과 소비자의 이익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명령으로 식품 및 사료와 관련된 문제에서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일된 일반원칙, 관할, 적절한 학문적 기초의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 효율적 조직구조와 절차를 확정하고자 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는 식품과 사료에 관한 일반 원칙, 개별적으로는 유럽연합 및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을 규정한다.

이 명령에 의해 유럽 식품안전청(die Europäische Behörde für Lebensmittelsicherheit/EFSA)이 설립된다.

나아가 식품 및 사료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절차도 확정한다.

(3) 이 명령은 식품과 사료의 생산, 가공, 판매의 모든 단계에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의 가정에서의 사용을 위한 1차 생산과 개인의 가정에서의 소비를 위한 식품의 가공, 조리, 저장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식품의 정의] 이 명령에서 “식품”이란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인간이 섭취하는, 또는 합리적으로 판단에 따라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식품”에는 식품의 생산, 처리 또는 가공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음료, 가우구미 및 — 물을 포함하여 — 모든 물질이 속한다. 물은 지침(Richtlinie/Directive) 80/778/EWG와 98/83/EG이 규정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속한다.

다음은 “식품”에 속하지 않는다.

- a) 사료
- b) 인간의 소비를 위해 유통되지 않는 살아 있는 동물
- c) 수확 이전의 식물
- d) 이사회 Richtlinie 65/65/EWG und 92/73/EWG 이 규정하는 의약품
- e) 이사회 Richtlinie 76/768/EWG 가 규정하는 화장품
- f) 이사회 Richtlinie 89/622/EWG 가 규정하는 담배 및 담배제품
- g) 1961년 미국과 체결한 중독약물에 관한 통일협정 및 1971년 미국과 체결한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통일협정에서 규정한 마취제 및 향정신성 물질
- h) 잔존물과 유해잔존물(Kontaminanten)

제3조 [기타 정의] 이 규칙에서 아래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식품법(Lebensmittelrecht)”은 식품 일반 및 구체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법규(Rechtsvorschrift)와 행정규정(Verwaltungsvorschrift)을 말한다. 연합 및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식품 및 식품에 사용되는 동물을 위해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사료의 모든 생산, 처리 및 판매과정에 관련되는 법규도 이에 포함된다.



2. “식품기업(Lebensmittelunternehmen)”은 이익추구 여부, 공사(公私) 여부에 상관없이 식품의 생산, 처리, 판매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을 말한다.
3. “식품기업가(Lebensmittelunternehmer)”는 식품법상 요구조건의 통제를 받는 식품기업에서 그 조건들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4. “사료(Futtermittel)”는 가공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되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동물에게 먹이는 물질 또는 제품 및 첨가물을 말한다.
5. “사료기업(Futtermittelunternehmen)”은 이익추구 여부 및 공사(公私) 여부에 상관없이 사료의 제조, 생산, 처리, 저장, 운송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기업에서 동물에게 먹이기 위한 사료를 제조, 처리 또는 저장하는 생산자가 포함된다.
6. “사료기업가(Futtermittelunternehmer)”는 식품법의 요구조건들의 통제를 받는 사료기업에서 그 조건들의 이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7. “개별거래(Einzelhandel)”는 식품의 취급 및/또는 처리 또는 가공과 이를 판매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장소에서의 보관을 말한다. 적재장, 급식시설, 회사 구내식당, 대형주방, 레스토랑 및 식품을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설비, 상점, 슈퍼마켓 판매센터와 도매점도 이에 속한다.
8. “유통(Inverkehrbringen)”은 유상·무상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나 기타 모든 종류의 전달을 위한 제공을 포함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식품 및 사료의 준비, 판매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전달을 말한다.
9. “위험(Risiko)”은 건강 침해의 개연성 및 위험 현실화의 결과로서의 중대한 건강침해 작용을 말한다.
10. “위험분석(Risikoanalys)”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의사소통이라는 서로 결부된 세 개별단계의 절차를 말한다.
11. “위험평가(Risikobewertung)”는 위해확인(Gefahrenidentifizierung), 위해서술(Gefahrenbeschreibung), 노출판단(Expositionsabschätzung), 위험서술

- (Risikobeschreibung), 이 네 단계의 과학적으로 확립된 절차를 말한다.
12. “위험관리(Risiko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비롯한 기타 고려할 만한 요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적절한 예방 및 통제의 가능성을 감안한, 관계자 간의 상의과정에서 위험평가와 구분되는 전략적인 대안의 평가절차를 말한다.
  13. “위험의사소통(Risikokommunikation)”은 위험분석의 단계에서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소비자, 사료·식품기업, 학자 및 기타 이해관계집단이 위해 및 위험, 위험관련요소, 위험인식에 관하여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위험평가의 결과와 위험관리결정의 기초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14. “위해(Gefahr)”는 식품 또는 사료의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작용인자 및 건강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식품 및 사료의 상태를 말한다.
  15. “이력추적(Rückverfolgbarkeit)”은 식품, 사료, 식용 동물, 식품 또는 사료로 가공되거나 가공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물질을 모든 생산, 처리, 판매절차를 통해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16. “생산·처리·판매단계(Produktion-, Verarbeitung-, Vertreibensstufen)”는 식품의 1차 생산으로부터 그 반입, 판매, 저장, 운송, 판매, 최종소비자에의 전달에 이르는 모든 단계, 그리고 중요한 경우 사료의 반입, 생산, 저장, 운송, 판매, 공급의 모든 단계를 말한다.
  17. “1차 생산(Primärproduktion)”은 수확, 착유, 도살 이전의 농업적 유용동물의 생산을 포함한 1차 생산물의 생산, 사육, 재배를 말한다. 이에는 사냥, 낚시, 야생작물의 수확도 포함된다.
  18. “최종소비자(Endverbraucher)”는 식품기업의 업무영역 내에서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의 마지막 소비자를 말한다.

## 제2장 일반 식품법

제4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식품 및 식품을 얻는 데 이용되는 동물을 생산하

거나 그 동물을 먹이는 데 사용되는 사료의 모든 생산, 가공, 판매단계에 적용된다.

- (2)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일반원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준수되어야 하는 수평적인 전체범위를 형성한다.
- (3) 기존 식품법상의 기본원칙과 절차는 가능한 즉시, 적어도 2007년 1월 1일까지는 이 법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과 일치되어야 한다.
- (4) 그 이전까지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규들은 제5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이 정한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제1절 식품법의 일반원칙

제5조 [일반목적] (1) 식품법은 식품거래에서 건전한 거래의 원활성을 포함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고도의 보호, 소비자 이익의 보호라는 일반목적 을 추구한다. 이때 경우에 따라 동물건강의 보호, 동물보호, 식물보호와 환경의 보호도 고려한다.

- (2) 식품법은 일반원칙과 이 장에서의 요구조건에 따라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가 연합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 (3)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거나 곧 존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그 규범은 식품법을 발전시키거나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단, 그 규범 및 그 주요부분이 식품법의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효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에 부합하지 않고 그 보호수준이 연합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 [위험분석] (1) 인간 생명의 고도의 보호라는 일반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법은 위험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단, 그 분석이 상황이나 조치의 종류에 비추어볼 때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위험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학문적 인식에 근거해야 하고 독립적·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3) 위험관리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식품법의 일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험평가의 결과, 특히 제22조에 따른 식품안전청의 감정, 기타 해당 사태에서 고려될 가치가 있는 요소들 및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방원칙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 [예방원칙] (1) 신뢰할 만한 정보평가에 의해 건강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여전히 학문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험평가에 관한 더 많은 학문적인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합에서 택한 고도의 건강보호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잠정적인 위험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선택된 조치는 적절해야 하고, 기술적·학문적 실행가능성과 당해사태에서 고려할 만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연합에서 택한 고도의 건강보호수준을 달성하는 정도 이상으로 거래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조치는 적절한 기간 내에 검토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생명이나 건강에 관하여 확정된 위험의 종류 및 학문적 불확실성의 해명과 포괄적 위험평가에 필수적인 학문적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제8조 [소비자 이익의 보호] (1) 식품법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소비자에게 소비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다음 각 호를 방지해야 한다.

- a) 사기 또는 기망의 술수
- b) 식품의 위조
- c) 소비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기타 모든 술수

## 제2절 투명성의 일반원칙

제9조 [공공적인 자문] 식품을 획득, 평가, 검사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표위원회들을 통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공적인 자문이 시행되

어야 한다. 단, 사태가 긴급하여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 [공중에의 정보공개] 식품이나 사료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청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국가나 연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한 위험의 종류를 공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위험의 종류, 중대성, 규모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가능한 포괄적으로 식품이나 사료 또는 식품이나 사료의 종류, 그와 결부된 가능한 발생 가능한 위험, 위험의 예방·제한·제거를 위해 취했거나 취한 조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3절 식품거래를 위한 일반의무

제11조 [연합이 수입하는 식품 및 사료] 연합에서의 유통을 위해 연합이 수입하는 식품과 사료는 식품법의 해당 요구조건 또는 연합이 그와 대등한 것으로 승인한 조건들을, 그리고 연합과 수출국 간에 특별한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포함된 요구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제12조 [연합이 수출하는 식품 및 사료] (1) 제3국에서의 유통을 위해 연합이 수출하거나 다시 수출하는 식품과 사료는, 수입국의 관청이 달리 요구하거나 수입국의 현행 법률, 명령, 규범, 절차규정, 기타 법 및 행정절차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식품법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의 경우에는 규정국의 관할관청이 해당 식품이나 사료가 유통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그 자세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알린 후에 그 식품이나 사료를 명시적으로 승인한 때에만 연합으로부터 해당국으로 수출되거나 다시 수출될 수 있다. 단, 식품이 건강을 침해하거나 사료의 안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제3국 쌍방이 체결한 협정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그 규정은 연합으로부터의 식품과 사료의 수출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제13조 [국제적 규범] 연합과 그 회원국은 자신의 권리 및 의무와 관계없이

- a) 식품, 사료에 관한 국제적인 기술상의 규범과 건강 및 식물보호규범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b) 식품과 사료규범에 관한 국제적인 정부의 규율조직과 비정부적인 규율조직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 c) 식품, 사료와 관련한 특수한 조치들의 가치를 동등하게 승인하는 것에 관한 협정이 합목적적이고 적절하게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d) 발전된 국가로부터의 수출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방해되지 않도록 발전된 국가의 특별한 발전, 재정, 거래의 필요한 조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e) 국제적인 기술표준과 식품법간의 통일을 촉진하는 동시에 연합에서 유효한 보호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4절 식품법의 일반 기준

제14조 [식품안전에 대한 기준] (1)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으로부터 유래한 식품은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a) 건강을 침해할 수 있고
- b) 인간의 소비에 부적합한 것.

(3) 식품의 안전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소비자에 의한 소비의 일반적인 조건들과 생산, 가공, 판매의 모든 단계
- b)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상표의 기재된 표시 또는 특정 식품 또는 특정 식품군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특성의 작용을 방지하기 것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

(4) 식품의 건강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소비자뿐 아니라 그 후속세대의 건강에 대하여 식품이 개연적으로 즉시 그리고/또는 단기적으로 그리고/또는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

b) 개연성 있는 독성물의 축적 효과

c) 식품이 어떤 특정 소비자 집단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집단이 건강에 대해 느끼는 특별한 감수성

- (5) 식품이 인간의 소비에 적합한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식품이 이물질 또는 다른 방식의 오염, 부패, 변질, 분해로 인하여 의도된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인간이 소비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6)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동종, 동류의 식품을 저장, 보관, 인도하는 중에 나온 것인 경우 그 저장, 보관, 인도의 장소에 있던 모든 식품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자세한 검사 결과 그 저장, 보관, 인도 장소에 있던 나머지 것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식품의 안전에 관한 연합의 특수한 규정에 합치하는 식품은 그 규정들에 의해 충족된 관점에 근거하여 안전한 것으로 본다.
- (8) 식품이 그에 관하여 효력 있는 특수한 규정들에 합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식품의 유통을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회수를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9) 연합의 특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식품은 그것이 회원국의 현행 국내 식품규정에 일치하고 그 주권영역 내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때에는, 그 회원국의 식품규정이 조약, 특히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되고 적용되는 한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료의 안전에 대한 기준] (1) 안전하지 않은 사료는 유통되거나 식품을 얻는 데 사용되는 동물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2) 다음으로부터 유래한 사료는 의도한 사용목적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 식품을 얻는 데 쓰이는 동물로 생산한 식품을 인간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 (3) 안전하지 않은 사료가 동종, 동류의 사료를 저장, 보관, 인도하는 중에 나온 것인 경우 그 저장, 보관, 인도의 장소에 있던 모든 사료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단, 자세한 검사 결과 그 저장, 보관, 인도 장소에 있던 나머지 것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4) 사료의 안전에 관한 연합의 특수한 규정에 합치하는 사료는 그 규정들에 의해 충족된 관점에 근거하여 안전한 것으로 본다.
- (5) 사료가 그에 관한 특수한 규정들에 합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충분한 혐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사료의 유통을 제한하고 시장에서의 회수를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연합의 특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료는 그것이 회원국의 현행 국내 사료규정에 일치하고 그 주권영역 내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때에는, 그 회원국의 사료규정이 조약, 특히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되고 적용되는 한에서는, 안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표시] 식품법의 특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사료의 표시, 광고, 포장, 포장재, 그 배열의 종류, 그 제공의 범위, 그 매체에 대해 널리 퍼진 정보와 관련하여서도 그러하다.

제17조 [관할] (1) 식품 및 사료 기업가는 식품법의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기업의 모든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서 그 영업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그 조건들이 충족되고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식품법을 시행하고 식품법이 식품 및 사료기업의 모든 생산, 가공, 판매과정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회원국은 공적인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식품과 사료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식품과 사료의 모든 생산, 가공, 판매단계에서의 기타 주의조치들에 대한 감시를 포함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회원국은 그 밖에도 식품 및 사료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 조치와 금지들은 유효하고 적절하며 위하력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이력추적] (1) 식품을 얻는 데 쓰이는 동물 및 식품이나 사료로 가공되는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기타 모든 물질의 추적가능성은 모든 생산, 가공, 판매단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식품 및 사료기업가는 그 기업이 식품, 사료, 식품을 얻는 데 이용하는 동물, 식품이나 사료로 가공되거나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모든 물질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정할 수 있다.

사료 및 식품기업가는 이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정보를 관청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

(3) 식품 및 사료기업가는 자신의 제품을 인도받는 다른 기업을 확정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 이 정보들은 관찰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관청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연합에서 유통되거나 또는 그러한 목적의 식품과 사료는 추적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수한 규정들에 포함된 조건들에 따라 적절한 문서나 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표시되거나 공개되어야 한다.

(5) 특수한 분야에서 이 조항의 요구조건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들을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식품에 대한 책임: 식품기업] (1) 식품기업가는 자신이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판매한 식품이 식품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식품을 더 이상 해당 식품기업에서 직접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식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이 이미 소비자에게 도달되었을 수 있을 경우, 고도의 건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회수하는 이유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하다면 이미 도달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2) 개별적인 매매나 판매 분야에서 포장이나 상표부착이 아닌, 식품의 안전이나 온전과 관계되는 업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식품기업가는 자신의 영업범위 안에서 식품의 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식품의 추적가능성에 관하여 필요한 적절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생산자, 가공자, 제조자 및/또는 관할관청의 조치에 협력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기여한다.
- (3) 식품기업가는 자신이 유통한 식품이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업가는 관청에 최종소비자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의 관하여 통보해야 하고, 식품과 결부된 위험을 예방, 제한, 제거하기 위하여 개별국가의 법과 법실무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력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 (4) 식품기업가는 자신이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식품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제20조 [사료에 대한 책임: 사료기업] (1) 사료기업가는 자신이 수입, 생산, 가공, 제조 또는 판매한 사료가 사료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료를 시장에서 회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지 제15조 제3항의 사례, 즉 식품의 Charge, Posten, Lieferung이 사료안전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관할관청이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그 사료는 폐기된다. 기업은 사용자에게 회수 이유를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알리고, 고도의 건강보호수준의 달성을 위한 다른 조치들이 불충분할 경우 이미 인도된 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2) 개별적인 매매나 판매 분야에서 포장이나 상표부착이 아닌, 사료의 안전이나 온전과 관계되는 업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료기업가는 자신의 영업범위 안에서 사료의 안전에 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료를

시장에서 회수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사료의 추적가능성에 관하여 필요한 적절한 정보들을 계속 제공하면서 생산자, 가공자, 제조자 및/또는 관할관청의 조치에 협력함으로써 사료안전에 기여한다.

(3) 사료기업가는 자신이 유통한 사료가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업가는 관청에 사료 사용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의 관하여 통보해야 하고, 사료와 결부된 위험을 예방, 제한, 제거하기 위하여 개별국가의 법과 법실무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력하는 자를 방해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

(4) 사료기업가는 자신이 인도하거나 인도받은 사료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서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제21조 [책임] 이 장의 규정은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와 행정규정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1985년 6월 25일 유럽심의회회의 방침 85/374/EWG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 제3장 유럽 식품안전청(EFSA)

#### 제1절 사무 및 임무

제22조 [관청의 임무] (1) 식품안전을 위하여 유럽 관청(이하 “관청”이라 함)을 설립한다.

(2) 관청의 임무는 식품 및 사료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연합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하여 학문적 조언을 하고 이를 학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관청은 이 영역에서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독립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위험을 지적한다.

(3) 관청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고도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이때 국내 시장이 기능하는 범위에서 동물의 건강, 동물보호, 식물건강과 환경을 고

려한다.

(4) 관청은 직간접적으로 식품 및 사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들을 설명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5) 관청의 사무는 다음을 포괄한다.

a) 인간의 식품과 관련한 연합의 입법에 대한 학문적 자문과 학문적·기술적 지원 및 —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연합의 건강프로그램의 범위에서 식품에 관한 문의에 대한 정보의 지원

b) 동물건강, 동물보호 및 식물건강과 관련한 기타 문제에 대한 학문적 감정

c) Richtlinie 2001/18/EG이 규정한 유전자 변형 조직과 관련한, 식품 및 사료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한 학문적 감정.

(6) 관청은 연합이 관할영역에서 취한 조치의 실행 및 지시를 위한 기초로서 그 임무수행에 기여하는 학문적인 감정서를 작성한다.

(7) 관청은 임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 의견서와 그 의견서에 기초하여 마련되는 정보의 학문적·기술적 수준, 절차와 활동방식의 투명성, 및 표준적인 참조근거처(Referenzstelle)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청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관할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8) 관청, 위원회, 회원국은 서로 협력하여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의사소통 기능이 효과적으로 조화되도록 한다.

(9) 회원국은 그 임무수행의 보장을 위해 관청들과 협력한다.

제23조 [EFSA의 임무] 안전청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안전청은 회원국의 모든 예상되는 사안과 그 임무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최선의 학문적 감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b) 안전청은 그 업무분야에서 통일적인 위험평가절차의 실행을 촉진하고 조정한다.

c)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그리고 위험평가에 관한 감정의 해석과 검

토과정에서 위원회를 학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d) 안전청은 임무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 e)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학문적·기술적 정보를 발견·수집·작성·분석·요약한다.
- f)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을 확인하고 서술한다.
- g)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 h) 안전청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품 및 사료의 안전 분야에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행하는 절차에서 위원회를 학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i)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합, 가입희망국, 국제조직, 제3국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학문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j) 안전청은 공중과 관계자가 확실하고 객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k) 안전청은 그의 임무에 해당하는 문제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자신의 결론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 l) 안전청은 위원회로부터 할당받은 기타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 제2절 조직

### 제24조 [안전청의 기관] 안전청은

- a) 운영위원회(Verwaltungsrat)
- b) 안전청장과 그 소속 직원(einen Geschäftsführenden Direktor mit zugehörigem Personal)
- c) 자문위원회(Beirat)
- d) 학문분과위원회(Ein wissenschaftlicher Ausschuss)와 학문협의회들(Wissenschaftlicher Gremien)

제2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작성한, 다수의 가입희망국을 포함한 목록에 근거하여 유럽의회와 관련된 위원회가 임명한 14인의 위원 및 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위원 중 4인은 소비자 및 기타 식품연쇄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에서 선발한다.

위원회가 작성한 목록은 관련문서와 함께 유럽의회에 제출된다. 유럽의회는 가능한 신속하게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운영위원회를 임명한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최상의 전문능력,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폭넓은 스펙트럼과 더불어 연합에서 지역을 최대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임명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번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회원 중 절반의 첫 번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관청의 내규를 확정하며 이 규정은 공고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원 중 1인을 2년 임기의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재임이 가능하다.

(5) 운영위원회는 사무규정을 제정한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운영위원회는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회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7) 운영위원회는 안전청이 자신의 임무를 실현하고 이 규칙이 정한 수단을 통해 할당된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운영위원회는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안전청의 익년 활동프로그램을 받는다. 또한 변경될 수 있는 다년간의 프로그램도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이 프로그램들이 식품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관하여 연합의 우월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3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청의 활동에 관한 전체보고를 받는다.

(9) 운영위원회는 안전청에 적용되는 재무규정을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정

한다. 안전청의 특성상 필요하고 이를 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라면 이 재무 규정은 Verordnung(EG, Euratom) Nr. 2343/2002 der Kommission vom 19. November 2002의 적용을 받아 Artikel 185 der Verordnung(EG, Euratom) Nr. 1605/2002 des Rates über die Haushaltsordnung für den Gesamtenhaushaltspla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에 따른 기관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10) 안전청장은 투표권 없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고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문위원회의 회장을 초청한다. 이때 회장은 투표권 없이 회의에만 참여한다.

제26조 [안전청장] (1) 안전청장은 5년 임기로 운영위원회가 지원자 목록 중에서 임명한다. 지원자목록은 위원회가 유럽연합 관보 등을 통한 초빙공고를 거치는 일반적 선발절차에 따라 작성한다. 재임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후보자는 임명 전에 유럽의회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안전청장은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2) 안전청장은 안전청을 법률상 대표한다. 그는 다음의 책임을 진다.

- a) 안전청 행정의 수행
- b) 운영위원회와 협력한, 안전청의 활동프로그램의 제안 작성
- c) 활동프로그램 및 운영위원회에 의해 수용된 결정의 변경
- d) 학문위원회와 학문협의회에 대한 적절한 학문적·기술적·행정적 지원
- e)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한 안전청의 임무수행, 특히 서비스의 적시 제공
- f)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안 준비, 안전청의 재무계획의 실행
- g) 전체 인사사무
- h) 유럽의회와의 관계 발전 및 유지, 유럽의회의 관할 위원회와의 정기적 대화 보장

(3) 안전청장은 운영위원회에 매년

- a) 안전청의 전년도 전체 활동에 관한 일반보고안과
- b) 활동프로그램안의

동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가 수락하면 안전청장은 활동프로그램을 유럽의회, 이사회(Rat), 집행위원회(Kommission),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6월 15일까지는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동의 후에는 안전청장은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감사원(Rechnungshof),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에 관청의 활동에 관해 일반보고를 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안전청장은 예산 담당 부처에 평가절차의 결과에 관한 모든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

제27조 [자문위원회] (1) 자문위원회는 관할권이 있는, 회원국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안청청과 유사한 임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이때 모든 회원국은 1인의 대표자를 임명한다. 회원은 동시에 임명된 대리인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 회원은 운영위원회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

(3) 자문위원회는 공무를 수행할 때, 특히 안전청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을 할 때 안전청장을 자문한다.

(4) 자문위원회는 잠재적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인식의 종합을 위한 기구로서 기능한다. 자문위원회는 특히 아래의 관점과 관련하여 안전청과 회원국에서의 관할권이 있는 기구들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a) 안전청이 진행하는 연구와 제32조에 근거한 회원국의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간의 중복 방지

b)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례, 즉 안전청과 회원국의 기관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는 사안

c) 제36조 제1항에 따른, 안전청의 업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의 촉진

d) 안전청이나 회원국의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의 확인

(5) 자문위원회 의장은 안전청장이 맡는다. 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1년에 최소 4회 이상 소



집된다. 자문위원회의 활동방법은 안전청의 내규로 정하고 그 내용은 공고된다.

(6) 안전청은 자문위원회에 필요한 기술적·자료적 지원을 하고 자문위원회와 협력하여 사무를 수행한다.

(7) 집행위원회의 관할부처(여기서는 건강소비자국)의 대리인은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청장은 유럽의회의 대표자와 기타 해당 기구의 대표자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가 제22조 제5항 b)에 따른 문제들에 대하여 자문하는 경우 제22조 제5항 b)에서 규정된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해당 기구의 대표자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국은 1인의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학문위원회 및 학문협의회] (1) 학문위원회와 상설 학문협의회는 관할 영역에서 안전청의 학문적 감정서를 작성할 책임을 지며 필요할 경우 공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학문위원회는 학문적 감정서 작성절차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 활동절차의 확정과 활동방법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학문위원회는 1개 이상의 학문협의회의 관할영역에 속하는 학제간의 문제들과 어떤 학문적 위원회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감정서를 제시한다.

필요한 경우 학문위원회는 특히 어떤 학문협의회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하여 활동그룹을 설립한다. 이 경우 학문위원회는 학문적 감정서를 작성할 때 이 활동그룹의 전문지식에 근거한다.

(3) 학문위원회는 학문협의회들과 학문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6인의 독립적 학자로 구성된다.

(4) 학문협의회는 독립적 학자들로 구성된다. 관청 설립 시에 다음의 학문협의회가 구성된다.

a) 식품과 관련된 식품첨가물, 아로마 물질, 가공축진제 및 가공물질에

관한 협의회

- b) 동물사료에서의 첨가제, 생산물, 물질에 관한 협의회
- c) 농약 및 그 잔류물에 관한 협의회
- d) 유전자변형조직에 관한 협의회
- e) 기능성 제품, 영양, 알레르기에 관한 협의회
- f) 생물학적 위험에 관한 협의회
- g) 식품연쇄에서의 오염에 관한 협의회
- h) 동물건강 및 동물보호에 관한 협의회
- i) 식물건강에 관한 협의회

학문협회의 수와 명칭은 제58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안전청의 요청이 있을 때 집행위원회(Kommission)에 의해 기술적·학문적 발전에 맞게 현실화될 수 있다.

- (5) 어느 학문협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학문위원회의 회원과 학문협회의 회원은 유럽연합 관보, 관련 학문분야의 출판물이나 행정위원회 관청의 웹사이트에서의 초빙공고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 (6)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는 회원 중에서 각 1명의 회장과 2명의 회장 대리인을 선발한다.
- (7)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결정은 회원 과반수로 한다. 소수의견은 기록된다.
- (8) 집행위원회의 관할 부처(통상 건강소비자국)의 대리인은 학문위원회, 학문협회 및 그 활동그룹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해명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나 토의에 영향을 미치려해서는 안 된다.
- (9)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활동 및 협력 절차는 안전청의 내규로 정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정한다.
  - a)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 회원자격이 얼마나 자주 연장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 b) 모든 학문협의회 회원의 수
- c) 학문위원회와 학문협의회 회원의 경비 지급
- d)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에의 임무 및 학문적 감정의 요청 절차
- e)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의 활동그룹의 설치·조직 및 외부 전문가의 활동그룹 참여 가능성
- f) 관찰자의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에의 초청 가능성
- g) 공중의 의견 청취 가능성

제3절 활동방식

제29조 [학문적 감정] 안전청은 학문적 감정서를

- a) 업무영역에 속하는 모든 문제 및 연합법이 안전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모든 사안에 관하여 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b) 업무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작성한다.  
유럽의회나 회원국은 안전청에 대하여 업무영역의 문제에 관한 학문적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청은 학문적으로 제기된 문제와 연합의 관심사를 설명하는 배경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연합법이 학문적 감정서의 제출기한을 미리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청은 충분히 해명된 사안 이외에는 감정 요청시에 제시된 기한 내에 감정서를 제출한다.
- (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감정요청이 있거나, 요청이 제2항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안전청은 그 요청을 거절하거나 요청한 기관 내지 회원국과 협력하여 적합한 요청이 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거절의 이유는 요청한 기관 내지 회원국에 통보된다.
- (5) 요청된 특수한 점에 관하여 이미 안전청의 학문적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안전청이 새로운 학문적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때에는 그 감정을 거절할 수 있다.

- (6) 이 조항의 시행절차는 집행위원회가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안전청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정한다.
- (7) 안전청의 사무규정은 학문적 감정서의 형식, 첨부문서, 설명의 요건을 규율한다.

제30조 [상이한 학문적 감정] (1) 안전청은 자신의 학문적 감정과 안전청과 유사한 임무를 지닌 다른 기관이 그 이전에 내린 학문적 감정의 잠재적 상위(相違)를 확정하기 위한 관찰기능을 수행한다.

(2) 안전청은 잠재적 상위를 확인한 경우 모든 중요한 학문적 정보를 유지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국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접촉한다.

(3) 학문적 문제에서 중요한 상위가 확인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유럽 연합의 기구이거나, 집행위원회 산하의 학문분과위원회인 경우라면 안전청과 관계기관은 그 상위를 해소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실과 관련한 불명확성을 전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이 문서는 공고된다.

(4) 학문적 문제에서의 중요한 상위가 확정되고, 거기에 관련된 기관이 회원국의 기관인 경우라면 안전청과 그 회원국 내의 기관은 상위를 해소하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실과 관련된 불명확성을 전달하는 내용의 공동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이 문서는 공고된다.

제31조 [학문적 및 기술적 지원] (1) 집행위원회는 업무분야에서 안전청에 대해 학문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문적·기술적 지원은 학문위원회의 학문적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승인된 학문적·기술적 근본 원칙이 적용되는 학문적 또는 기술적 업무에 관한 것이다. 이 업무에는 특히 기술적 기준의 확정 또는 평가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지원과 기술적 방침의 작성이 속한다.

- (2) 집행위원회가 안전청에 대하여 학문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안전청과 협력하여 그 업무가 수행기간을 정한다.

제32조 [학문적 연구] (1) 안전청은 임무실현에 필요한 학문적 연구를 이행하며 이때 가장 우수하고 신뢰할 만하며 독립적인 학문자료를 사용한다. 연구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수행된다. 안전청은 회원국이나 연합의 연구프로그램의 중복을 방지하고 적절한 조정을 통한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안전청은 그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알린다.

제33조 [자료조사] (1)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적·기술적 자료를 발견·수집·작성·분석·편찬한다. 특히 인간에 의한 식품소비 및 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설명, 생물학적 위험의 유발성과 만연성, 식품과 사료의 오염, 잔류물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다.

- (2)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안전청은 자료조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조직, 가입희망국과 제3국 및 국제적인 자료조사 기구와 긴밀히 협조한다.
- (3)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이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분야에서 당해 회원국에 의해 조사된 자료는 안전청에 통보될 수 있다.
- (4) 안전청은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 자료의 기술적 비교와 관련한 가능한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공고히 하기 위하여 유지·분석한다.
- (5) 이 규정의 공포 후 1년 안에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안전청의 업무분야에 존재하는 자료조사체계의 목록을 공고한다.

필요한 경우 제안에 첨부되어야 하는 보고는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이다.

- a) 모든 개별체계들의 범위에서 관청에 할당되는 기능 및 안전청이 회원국들과의 협력 하에 자신의 임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타 필요한 변경 또는 개선

- b) 안전청이 자신의 업무분야에 속하는, 연합차원에서 중요한 학문적·기술적 자료를 조사하고 총괄할 수 있게 하는, 개선되어야 할 흠결
- (6) 안전청들은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들에 대하여 자료조사 분야에서의 자신의 활동결과를 통보한다.

제34조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의 확인] (1) 안전청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총괄·분석하기 위한 감시절차를 마련한다.

(2) 새롭게 등장하는 중요한 위험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청은 회원국, 연합의 기타 기구, 집행위원회에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회원국, 연합의 유관 기구,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 요청에 응하고 안전청이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보 전부를 안전청에 통보한다.

(3) 안전청은 업무수행 중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의 확인을 위해 안전청에 전달되는 전체 정보를 사용한다.

(4) 안전청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관한 평가와 조사 자료를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에 전달한다.

제35조 [신속한 경보체계] 신속한 경보체계의 범위에서 안전청에 전달되는 정보들은 식품의 건강을 침해하는 영양생리학적 위험을 감시하는 안전청의 임무를 최적의 상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청은 위험분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정보의 내용을 분석한다.

제36조 [안전청의 업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 (1) 안전청은 유럽연합의 수준에서 안전청의 업무분야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구성을 지원한다. 조직구성의 목적은 안전청의 업무영역에서의 활동의 조화, 정보교환, 공동계획의 작성 및 실행, 경험과 실행된 조치의 교환을 통해 학문적 협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안전청장의 제안이 있을 경우 조직구성을 지원할 수 있는, 회원국이 임명한 관할조직의 목록을 작성한다. 안전청은 이 조직에 특정한 임무, 특히 학문적 감정의 준비작업, 학문적·기술적 지원, 자료조사 및 새로운 위험의 확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시행규정은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안전청의 공청회 후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정된다. 시행규정은 특히 회원국이 임명한 관할조직 목록에의 기구의 편입, 조화로운 질적 요구 및 기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재정적 규정에 관한 기준들을 확정한다.
- (4) 이 규정의 발효된 후 1년 내에 집행위원회는 안전청의 업무영역에 존재하는 연합의 체계의 목록을 공고한다. 이 목록은 회원국의 학문적 평가 분야에서의 일정한 임무의 수행, 특히 허가기초의 검토를 규정한다. 경우에 따라 제안에 첨부되는 보고는, 변경이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그리하여 안전청이 회원국과의 협력 하에 임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체계를 제시한다.

#### 제4절 독립성, 투명성, 비공개, 정보

제37조 [독립성] (1) 운영위원회 회원, 자문위원회 회원과 안전청장은 공중의 이익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동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이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전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해명(Verpflichtungserklärung)과 이익해명(Intere- ssenerklärung)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해명은 매년 문서로 한다.

(2) 학문위원회와 학문협의회의 회원은 모든 외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행동할 의무를 진다.

이를 위해 이들은 그들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전혀 그리고 직간접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해명

- 과 이익해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해명은 매년 문서로 한다.
- (3) 운영위원회 회원, 안전청장, 자문위원회 회원,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회원 및 기타 활동그룹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모든 회의 시에 의사일정에서의 쟁점과 관련하여 그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제38조 [투명성] (1) 안전청은 고도로 투명하게 활동해야 한다. 관청은 특히 지체 없이 다음을 공포한다.

- a)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회의의 의사일정과 회의록
  - b)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감정
  - c) 감정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
  - d) 운영위원회 회원, 안전청장, 자문위원회 회원, 학문위원회 및 학문협회 회원들이 매년 행하는 이해관계 해명 및 의사일정에서의 쟁점과 관련한 이해관계 해명
  - e) 학문적 연구의 결과
  - f) 매년의 활동보고
  - g)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또는 회원국이 요청한 학문적 감정의 거절 또는 수정 및 그 이유
- (2)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안전청장의 요구로 특정한 행정문제에 관계되는 의사쟁점의 학문적 감정에 관하여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운영위원회는 소비자나 기타 관계인이 안전청의 특정 활동을 관찰하도록 할 수 있다.
- (3) 안전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투명성규정을 내규를 통해 정한다.

제39조 [비공개] (1)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청은 근거 있는 비공개 요청과 함께 비공개 정보를 전달받을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정보가 상황에 따라 건강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운영위원회 회원, 안전청장,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회원 및 그 활동그룹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원, 안전청의 직원은 당해 사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조약 제278조에 따라 직무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건강에 대한 예측 가능한 영향과 관련한, 관청의 학문적 감정의 결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다.
- (4) 안전청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공개규정들의 변경에 관한 실무상의 보호조치를 사무규정으로 규정한다.

제40조 [안전청 측에서의 정보] (1) 위험관리의 공개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권한과는 별개로, 안전청은 업무분야에서 스스로 정보를 관리한다.

- (2) 안전청은 공중과 관계인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접근하기 쉬운 정보, 특히 안전청의 활동결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전청은 공중을 위한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다.
- (3) 안전청은 위험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일관성의 확립을 위해 위원회 및 회원국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안전청은 제38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입장을 공개한다.

- (4) 안전청은 회원국의 관할기구, 기타 관계인과의 적절한 협력을 위해 정보캠페인을 벌인다.

제41조 [문서에의 접근] (1) 유럽의회, 이사회 및 의회의 문서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에 관한 2001년 5월 30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제 1049/2001호는 안전청의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2) 식품법의 일반적 기본원칙 및 기준의 확정, 유럽 식품안전청의 설립, 식품안전을 위한 절차의 확정에 관한 유럽연합규칙 제178/2002호의 개정을 위한 2003년 6월 22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유럽연합규칙 제1642/2003의 발효 후 6개월 내에 운영위원회는 유럽연합규칙 제1049/2001의 실무상의 시행규정들을 제정한다.

(3) 조약 제195조 내지 제230조의 조치들에 따라 유럽연합규칙 제1049/2001호 제1조에 따른 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한 이의 또는 법원에서 의 고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제42조 [소비자, 생산자, 기타 관계인] 안전청은 소비자 대표, 생산자 대표, 가공산업의 대표 및 기타 관계인들과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 제5절 재무규정

제43조 [안전청의 예산 확정] (1) 안전청은 연합의 기부, 제49조에서 규정한 연합과의 협정체결국의 기부, 출판, 회의, 교육기관 및 기타 관청의 활동에 관한 기관에서의 요금징수를 통해 수입을 얻는다.

(2) 안전청의 지출은 개인경비, 행정경비, 기초시설경비, 운영경비 및 제3국과의 조약이나 제3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의한 의무를 포괄한다.

(3) 제5조에서 정한 시점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안전청장은 안전청의 다음 예산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잠정적인 계획과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사전계획안을 작성한다.

(4) 수입과 지출은 일치해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안전청장이 제출한 안에 기초하여 매년 안전청의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은 잠정적인 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한 잠정적인 인사계획을 포괄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집행위원회 및 제49조에 따른 연합과의 조약체결국에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통보되어야 한다.

(6)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의 전체예산계획안과 함께 위의 계획안을 유럽의회와 이사회(이하 “예산관청”)에 제출한다.

(7) 집행위원회는 사전계획안에 기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보조금의 계획 및 그 총액에 관한 중간견적을, 예산관청청 조약 제272조의 적용을 받는 유럽연합의 전체예산계획안에 포함시킨다.

(8) 예산관청은 관청 보조금을 위한 수단을 인가한다.

예산관청은 안전청의 인사계획을 확정한다.

(9) 예산계획은 운영위원회가 확정한다. 예산안은 유럽의회의 전체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현실화된다.

(10) 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조달에 관하여 재무상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계획, 특히 건물의 임대나 취득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계획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예산관청에 통보한다. 운영위원회는 이 계획을 집행위원회 (Kommission)에 통지한다.

제44조 [안전청의 예산계획의 실행] (1) 안전청장은 안전청의 예산계획을 집행한다.

(2)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3월 1일까지 안전청의 회계원은 집행위원회의 감사원에게 예산집행 및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관리에 관한 보고와 함께 잠정적인 회계를 통보한다.

(3)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집행위원회의 감사원은 회계법원에 예산집행 및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관리에 관한 보고와 함께 잠정적인 회계를 통보한다. 이 보고는 유럽의회와 이사에도 전달된다.

(4) Artikel 129 der Haushaltsordnung에 따라 관청의 잠정적 회계에 관한 회계법원의 통지의 도달 후 안전청장은 자신의 책임으로 최종적인 연말결산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운영위원회는 안전청의 최종적인 연말결산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한다.

(6) 안전청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6월 1일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최종적인 연말결산을 유럽의회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예산법원에 제출한다.

(7) 최종적인 연말결산은 공개한다.

(8) 안전청장은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회계법원에 자신의 통지에 대한 답

변을 전달한다. 이 답변은 운영위원회에도 전달된다.

(9) 안전청장은 Artikel 146 Absatz 3 der Haushaltsordnung에 따라 해당 회계 연도의 규정에 맞는 청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럽의회에 제출한다.

(10) 유럽의회의 예산안 결의에 관한 규정

제45조 [안전청이 받은 요금] 이 규정의 발효 후 3년 안에 집행위원회는 안전청, 회원국, 관계인의 자문을 받아 공동결정절차와 조약에 따라 안전청의 기타 직무수행에 대한 입법상의 제안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한가에 관한 보고서를 공고한다.

#### 제6절 일반규정

제46조 [법인성과 특권] (1) 안전청은 법인성을 지닌다. 안전청은 모든 회원국에서 법인에 관한 법규가 인정하는 폭넓은 권한을 누린다. 특히 동산과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수 있으며 재판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2) 유럽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는 안전청에 적용된다.

제47조 [책임] (1) 안전청의 조약상의 책임은 해당 조약에 관하여 효력 있는 법에 따른다. 유럽연합 법원은 안전청이 체결한 조약의 중재조항에 근거하여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지닌다.

(2) 조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안전청은 회원국의 법규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안전청이나 안전청의 직원이 직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를 배상한다. 유럽법원은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지닌다.

(3) 안전청에 대한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관청의 인사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직원] (1) 안전청의 직원은 유럽연합의 공무원에 관한 규정과 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2) 안전청은 소속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청(Anstellungsbehörde)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

제49조 [제3국의 참여] 안전청은, 유럽연합과 협정(Abkommen)을 맺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연합의 규정을 그 규정의 규율을 받는 분야에서 수용하고 적용하는 제3국에 문호를 개방한다.

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안전청의 업무에 대한 제3국 참여의 성격, 범위, 종류, 방법을 정하는 협약(Vereinbarung)을 체결한다. 여기에는 안전청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망에서의 협력, 안전청이 특정 임무를 위임할 수 있는 조직 목록의 수록, 재정지원, 인사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 제4장 신속경보체계, 위기관리, 위급상황

##### 제1절 신속경보체계

제50조 [신속경보체계] 식품이나 사료에서 발생하는 인간에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의 보고를 위한 신속경보체계를 조직망의 형태로 수립한다. 이 체계에는 회원국, 집행위원회, 안전청이 참여한다. 회원국, 집행위원회와 안전청은 각각 접촉부서와 조직망의 회원을 지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조직망의 행정을 관할한다.

(2) 식품이나 사료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직간접적 위협의 존재에 관한 정보가 조직망의 구성원에 의해 입수되는 경우 이 정보는 지체 없이 신속경보체계를 거쳐 집행위원회에 보고된다.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 정보를 조직망의 회원에게 계속 전달한다.

안전청은 회원국의 신속하고 적절한 위기관리를 위하여 보고에 학문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부가하여 보충할 수 있다.

(3) 회원국은 연합의 기타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경보체계를 통해 위원회에 다음의 사실을 알린다.

- a)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사안에서 건강보호를 위해 식품이나 사료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당해 식품이나 사료를 회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 전체
- b)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식품 또는 사료의 유통이나 사용을 자발적으로 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방지·제한하거나 이에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려는 목적을 지닌, 권고 또는 기업 경제와 맺은 협정 전체
- c) 유럽연합 내에서 세관에 의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과 결부된 일정 묶음·컨테이너·화물의 식품 또는 사료의 거부

보고할 때에는 보고하는 회원국 소속 관할관청의 조치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첨부한다. 보고는 사안마다 추가정보로 보충되어야 한다. 특히 조치, 보고의 이유가 바뀌거나 사라졌을 때 그렇다.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치와 위의 추가정보를 조직망의 회원에게 전달한다.

유럽연합 내에서 세관이 일정한 묶음·컨테이너·화물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유럽연합 안의 모든 세관에 통지하고 이 사실을 원산국에도 알린다.

(4) 신속경보체계를 통한 보고의 대상이 된 식품이 제3국으로 발송되었을 경우 집행위원회는 그 국가에 해당정보를 전달한다.

(5)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대해 신속경보체계를 거쳐 전달된 보고와 추가정보를 받은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 정보를 지체 없이 조직망의 회원들에게 알린다.

(6) 가입희망국, 제3국, 국제조직은 연합과의 협정을 통해 신속경보체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절차는 그 협정에서 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승인에 근거하고 연합에서 유효한 규정에 상응하는 비공개규정을 포함한다.

제51조 [시행조치] 제50조의 시행조치는 제58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관청의 설명이 있는 후 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치는 특히 보고와 추가정보의 전달에 관한 특수한 조건과 절차를 규율한다.

제52조 [긴급정보체계에 관한 비공개규정] (1) 공중은 보통 제10조에서 규정한 정보원칙에 따라, 조직망의 구성원에게 인지된 식품이나 사료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공중은 보통 의심스러운 제품의 확인, 위험의 종류, 실행된 조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망의 구성원은 그 참여자와 기타 공무원이 이 장의 목적을 위해 그 비밀이 준수되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상황에 따라 건강보호를 위해 공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은 제외된다.

(2) 비밀유지는 식품과 사료 분야에서의 시장 감독과 시행조치의 효율성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관할관청에 전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를 획득한 관청은 제1항에 따라 그 비공개성을 보장한다.

## 제2절 위급상황

제53조 [연합 내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한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긴급 조치] (1) 연합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사료가 인간이나 동물 또는 환경에 대하여 현저하게 위험하거나 또는 해당 회원국의 조치로는 그 위험에 만족스럽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58조 제2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또는 회원국의 요구로 그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a) 연합 내에서 생산한 식품이나 사료의 경우
  - i) 의심스러운 식품의 유통이나 사용의 중지
  - ii) 의심스러운 사료의 유통이나 사용의 중지
  - iii) 의심스러운 식품이나 사료에 대한 특별조건의 확정
- b) 제3국에서 수입한 식품이나 사료의 경우
  - i) 해당국 전체나 일부로부터의, 경우에 따라 그 중계국으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식품이나 사료의 수입 중지

ii) 해당국 전체나 일부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식품에 대한 특별조건의  
확정

iii) 기타 모든 적절한 일시적 조치

(2) 그러나 긴급한 경우 집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사전에 해당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른 회원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치는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무조건 10 근무일 이내에 통보·수정·중지·연장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결정근거는 지체 없이 공고된다.

제54조 [기타 긴급처분] (1)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에게 긴급조치의 필연성을 알리는 경우와 집행위원회가 제53조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회원국은 일시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회원국은 지체 없이 다른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2) 집행위원회는 10 근무일 이내에 제58조 제1항을 통해 설치된 위원회에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일시적인 국가의 보호조치의 연장, 수정 또는 중지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

(3) 회원국은 연합의 조치가 개시될 때까지 일시적인 국내의 보호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 제3절 위기관리

제55조 [위기관리를 위한 일반계획] (1) 집행위원회는 안전청, 회원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식품 및 사료안전 분야에서의 위기관리에 관한 일반계획(이하 “일반계획”)을 수립한다.

(2) 일반계획은 특히 식품이나 사료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을 기존의 안전대책으로는 예방·제거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킬 수 없거나 또는 제53조, 제54조상의 조치로는 적절하게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된다.  
 일반계획은 또한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상의 절차를 정한다. 이 때 투명성원칙이 적용되며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이 선택되어야 한다.

- 제56조 [위기극복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식품이나 사료로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위험을 기존의 안전대책으로는 예방·제거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킬 수 없거나 또는 제53조, 제54조상의 조치로는 적절하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을 확정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회원국과 관청에 알린다. 이때 연합법의 적용의 보장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 (2) 집행위원회는 지체 없이 안전청이 참여하는 위기극복위원회를 설치한다. 위기극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문적·기술적 지원을 받는다.

- 제57조 [위기극복위원회의 임무] (1) 위기극복위원회는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관한 중요한 정보 및 이 위험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예방·제거하고 수용될 수 있는 정도로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법의 조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 (2) 위기극복위원회는 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범인과 자연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기극복위원회는 존재하는 위험과 선택된 조치를 공중에게 알린다.

## 제5장 절차와 잡칙

### 제1절 분과위원회(Ausschuss)절차와 중재절차

- 제58조 [분과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식품연쇄와 동물건강에 관한 상설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분과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Kommission)의 대리인이 의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

는 모든 해당 주제를 다루는 전문그룹으로 조직된다.

(2) 이 조항과 관련되는 경우 Beschluss 1999/468/EG 제7조와 제8조를 감안하여 Beschluss 1999/468/EG 제5조에 따른 절차를 적용한다.

(3) Beschlusses 1999/468/EG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제59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이 규정과 기타 해당 연합규정으로 부터 부여받은 기능을 수행하며 의장의 발의하거나 위원들의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제60조 [중재절차] (1) 회원국이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이 취한 조치가 규정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조치가 역내시장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기타 연합규정의 적용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위원회에 그 사건을 제출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2) 두 당사국과 집행위원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안전청에 쟁점이 되는 모든 중요한 학문적 문제들에 대한 감정을 요청한다. 이 요청의 조건과 안전청이 감정서를 작성하는 기간은 두 당사국과 상의하여 집행위원회와 안전청이 합의로서 정한다.

## 제2절 잡칙

제61조 [심사조항] (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6년마다 안전청은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업무에 관한 독립적인 외부의 평가를 받는다. 이 평가는 운영위원회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고한 계획에 근거한다. 평가대상은 안전청의 활동방법과 작용이다. 평가에서는 관계인들의 관점이 연합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고려된다.

안전청의 운영위원회는 평가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에

안전청이 고쳐야 할 점과 그 활동방법에 대하여 권고한다. 평가와 권고는 공고된다.

(2)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집행위원회는 제4장 제1절과 제2절의 시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에 관하여 보고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보고와 권고는 유럽의회와 이사회(Rat)에 통보된다.

제62조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안전청과 식품연쇄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설위원회와의 관계] (1) 연합의 법규에 의한 학문위원회, 사료에 관한 학문위원회, 수의사 학문위원회, 농약에 관한 학문위원회, “식물”에 관한 학문위원회 및 학문적 조정위원회는 식품안전에 관한 유럽안전청으로 대체된다.

(2) 연합의 법규에 의한 식품에 관한 상설위원회, 사료에 관한 상설위원회, 수의사 상설위원회는 식품연쇄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설위원회로 대체된다.

(3) Richtlinie 76/895/EWG, 86/363/EWG, 90/642/EWG und 91/414/EWG에 근거한 연합의 법규 및 이들 Richtlinien 자체에서 규정한, 식물보호제와 잔류물최대치와 관련한 식물보호에 관한 상설위원회는 식품연쇄 및 동물건강에 관한 상설위원회로 대체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연합의 법규”란 연합의 모든 Verordnung, Richtlinie, Beschluss, Entscheidungen을 말한다.

(4) Beschlüsse 68/361/EWG, 69/414/EWG, 70/372/EWG는 폐지된다.

제63조 [의약품의 평가에 관한 유럽 Agentur의 관할] 이 규정은 Verordnung (EWG) Nr. 2309/93, Verordnung(EWG) Nr. 2377/90, Richtlinie 75/319/EWG des Rates, Richtlinie 81/851/EWG des Rates에 따라 의약품 평가에 관한 유럽 Agentur에 위임된 관할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4조 [관청 활동의 개시] 관청은 2002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

제65조 [발효] 이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시된 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발효된다.

제11조와 제12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제29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2조 제1항은 , 학문위원회와 학문협회의 회원이 임명되어 관보 C열에서의 통보를 통해 공고된 날부터 발효된다.

이 규정은 그 전체로서 구속력이 있고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 부록 2

---

### 영국 식품안전법 및 식품기준법

#### 1. 식품안전법 1990(c. 16)

(총 60개의 조문과 부칙(Schedule) 5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52조까지(제53조 부터는 보충규정임)의 주요내용만 소개함)

####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의 정의와 그 밖의 기본적 표현

(1) 이 법에서 “식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음료
- (b) 인간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영양가치없는 품목과 물질
- (c) 씹는 껌과 기타 이와 같은 제품
- (d) 식품의 준비에 구성재료로서 사용되는 물질 또는 이러한 것

(2) 이 법에서 “식품”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의 소비 대상이 되지 않는 살아있는 네발 동물, 새 또는 살아있는 생선;
- (b) 네발동물, 새, 생선에 대한 사료 또는 먹이
- (c) 약품남용법(1971 c.38.)에 해당하는 약품
- (d) 장관에 의한 명령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예외에 해당하는 것

- (i) 의료법에 의해 제품허가를 받은 의료법(1968 c.67.)상 의료제품
- (ii) 의료법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따라 그러한 허가를 받은 기타 물질(기타 물질에 법의 적용)

(3) 명문으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사업”: 이익 목적을 불문하고 매점, 클럽, 학교, 병원 또는 기관과 공공 또는 지역적 허가를 받은 사업을 포함한다.

“영리행위”: 모든 식품 또는 접촉물과 관련된 영리행위란 다음 중 어떤 것을 의미한다. 즉,

- (a) 판매, 판매목적 소지, 판매목적 진열 또는 광고
- (b) 판매수단으로 인도, 배달 또는 조리;
- (c) 판매목적의 준비, 판매목적의 표시, 포장
- (d) 판매목적 저장 또는 운반;
- (e) 수입과 수출;

“접촉물”은 식품에 접촉하도록 의도된 물질을 의미한다.

“식품사업”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영리행위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의미한다.

“식품시설장소(food premises)”는 식품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식품원료”는 생육 농작물 또는 살아있는 동물, 새 또는 생선으로부터 추출되는 식품을 의미한다.(수확, 도살, 착유, 계란생산)

“시설장소(premlises)”는 장소, 운송수단, 사무실 또는 이동 구조물 그리고 장관 명령에 의해 지정된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지정된 배 또는 비행기

(4) 접촉물에 관하여서는, 제3항에서 판매를 위한 준비라고 한 것은 판매목적 을 위한 제조 또는 가공에 관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조 판매의 정의의 확장 등

(1) 이 법의 목적에 대해

- (a) 판매목적이 아닌, 사업 과정의 일환인 식품의 공급; 그리고
- (b) 식품과 관련하여 행하여지고 장관(Ministers)의 명령으로 지정된 기타 다

른 것

은 식품판매 목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구매자 및 구매에 관한 언급도 판매목적으로 추정된다.

(2) 이 법은 다음의 경우 적용한다.

- (a) 공중에게 개방된 연회(entertainment)와 결합하여 제공되거나 시상 또는 보상으로 제공되는 식품에 관하여는,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연회 조직에 관련된 사람이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하였던 것처럼 취급하여 적용된다.
- (b) 광고목적 또는 거래 또는 사업상으로 제공되거나 시상 또는 보상으로 제공된 식품에 관하여는, 식품을 제공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하였던 것처럼 취급하여 적용한다.
- (c) 위 (a) 또는 (b) 에서 언급된 것으로서 제공될 목적으로 어떤 시설장소에서 비치한 식품에 관하여는, 그 시설소의 보유자가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거나 하였던 것처럼 취급하여 적용한다.

이 항에서 “연회(entertainment)”는 사교모임, 오락, 전시, 공연, 게임, 스포츠 또는 기술경기를 포함한다.

### 제3조 식품의 인간소비 목적 추정

(1) 다음 조항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한다.

(2) 통상 인간 소비 목적인 식품은, 반대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인간 소비를 위한 판매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진열되거나, 보관된 것으로 추정한다.

(3) 다음은, 즉

- (a) 식품의 준비, 보관,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장소에 있는 통상 인간 소비목적의 식품; 그리고
- (b) 준비, 보관,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장소에 있는 인간 소비 목적의 식품의 제조에 통상 사용되는 물질은

반대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인간 소비를 위한 판매목적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판매목적으로 식품제조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식품이 준비되는 시설장소에 있는 통상 인간 소비 목적의 식품의 준비 또는 구성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반대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제4조 이 법상 직무를 갖는 장관들

- (1) 이 법에서는

“장관(Minister)”은 아래 (2)항에 따라

(a)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 있어서는, 농수산물식품장관(Minister) 또는 부처장관(Secretary of State)을 의미한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부처장관(Secretary of State)을 의미한다.

“관계장관들(Ministers)”은,

(a)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에서는 다음 장관들이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즉 잉글랜드에서는 보건에 관련된 부처장관(Secretary of State)과 농수산물식품장관을, 웨일즈에서는 식품과 보건을 각각 관할하는 부처장관(Secretary of State)을 의미한다.

(b) 스코틀랜드에서는 부처장관을 의미한다.

- (2) 이 법에서는 긴급단속명령에 있어서 “장관들(Ministers)”은 농수산물식품장관 또는 부처장관을 의미한다.

#### 제5조 식품관청과 공무원

- (1) 아래(3), (4)항에 따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식품관청은 다음과 같다

(a) 각 런던버러(29개 런던 버러), 구(district), 비광역 자치단체(non metropolitan county)에 관하여는 버러, 구, 또는 자치단체(county)의 의회(council);

(b) 런던시(템플즈를 포함하여)에서는 시의회(Common Council);

(c) 이너템플 또는 미들템플에서는 왕실회계장관(the appropriate Treasure).

- (2) 아래 (3)항(a)의, 스코틀랜드의 식품관청은 각 섬과 구의 의회(council)이다.

- (3) 이 법상의 직무는

(a) 1984년 공공보건(질병단속)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의한 명령에 의해 항구위생관청에게 부여된다. 또는 1897년 공공보건법(스코틀랜드) 제172조



에 의한 명령에 의해 항구지역관청에게 부여된다;

(b) 1936년 공공보건법(1936 c. 49.) 제6조에 의한 명령에 의해 통합 구의 공동위원회에 부여된다.

(c) 1985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85 c.51.)의 부칙 제8조의 제 15(6)항에 의한 명령에 의해 광역 자치단체(metropolitan county)의 단독 관청에게 부여된다.

이 법에서 식품관청에 관한 언급은, 그 직무에 관련되는 것인 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에 관한 언급으로 추정된다.

(4) 장관들(Ministers)은, 일반 규정 또는 특별 규정에 관하여, 명령(order)으로써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다. 즉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법상의 직무가

(a) 비광역 구(non-metropolitan district)에 관하여 그 구의 의회에 행사할 수 있는 직무이거나,

(b) 인너템플 또는 미들템플에서는, Treasurer(왕실회계장관)과 시의회(Common Council)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직무인 경우

각 식품관청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명령으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이 조문에서는

“정당한 왕실회계장관(appropriate Treasurer)은” 인너템플에서는 Sub-Treasurer, 미들템플에서는 Under Treasurer를 의미한다.

“Common Council”은 런던시 Common Council을 의미한다.

“항구지역관청(port local authority)”는 통합항구지역관청을 포함한다.

(6) 이 법에서는 식품관청과 관련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authorised officer)”은 (관청의 공무원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하게 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활동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이 부여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관들(ministers)의 명령규정(regulation)에서 규정한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인 경우에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 제6조 법집행

- (1) “집행관청”은 이 법의 각 조항 또는 명령규정(regulations)과 명령(order)에 관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수행하도록 정해진 관청을 의미한다.
- (2) 식품관청은 그들의 관할 범위 내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다른 관청에 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각 조항을 집행하여야 한다.
- (3) 특별한 사정 또는 특별한 경우 장관들(monisters)은 제(2)항의 식품관청에 부과된 의무를 장관들(Ministers) 또는 장관(Minister)이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식품관청에 수행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 (4) 이 법에 의한 명령규정(regulations) 또는 명령(orders)은,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관청 중 어떤 것을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정해야 한다.
  - (a) 위 제5조 (3)항에 언급한 장관들(Ministers), 장관(Minister), 식품관청 그리고 기타 관청; 그리고
  - (b) 명령규정의 경우에는, 관세청장(the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어떤 명령규정(regulations) 또는 명령(orders)으로, 그 명령규정 또는 명령 또는 이 법의 규정을 관장하는 관련 관청에 의한 정보제공과 지원제공을 위하여, 다른 어떤 관청에 대해 그들 각각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 (5)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집행관청은 이 법, 명령규정 또는 명령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장관들(Ministers) 또는 장관(Minister)의 경우 다른 자에 의해 마련된 절차상의 작업수행을 인수받을 수 있다.

## 제2장 주된규정

### 식품안전

#### 제7조 유해음식의 제공

- (1) 인간소비에 판매되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써, 즉
- (a) 식품에 어떤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 (b) 식품 준비의 재료로서 사용함으로써,
  - (c) 식품으로부터 성분을 추출함으로써,
  - (d) 식품을 가공 또는 처리절차에 됴으로써,
- 건강에 유해한 식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인간소비를 위해 판매할 목적인 경우에는, offence의 죄로써 처벌한다.
- (2) 이 조항과 아래 제8조 (2)항의 목적으로 어떤 식품이 유해한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a), (b)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식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건강에 그 식품이 끼칠 수 있는 개연성있는 영향 뿐만 아니라
  - (b) 일반적인 양으로 식품을 소비하는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된 식품의 있을 수 있는 누적된 효과
- (3) 이 조에서 건강과 관련한 “유해”는 일시적, 계속적 장애를 포함한다. 그리고 “건강에 유해”는 이에 따라 추정된다.

#### 제8조 식품안전기준을 구비하지 않은 식품의 판매

- (1) 다음 행위를 하는 자, 즉
- (a) 인간소비를 위한 판매 또는 그러한 소비를 위한 판매를 위하여 제공, 진열, 광고하거나 판매를 위한 준비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누구든지 식품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식품을 판매 하는 자,
  - (b) 인간 소비를 위한 판매 또는 그러한 소비를 위한 준비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인도하는 자로 식품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자
- 는 offence의 죄로써 처벌한다.
- (2)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식품은 다음의 경우 식품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즉
- (a) 위 제7(1)조에 언급된 행위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제공된 식품,
  - (b) 인간 소비에 부적당한 것 또는

- (c) 외부물질여부를 불문하고 오염된 상태로 인간소비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오염된 식품으로서,  
그런 기준에 관한 언급 또는 그런 기준을 준수한 식품에 대한 언급이 추정되는 경우
- (3) 이 장과 아래 제9조의 목적을 위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식품이 있는 곳에 동종 또는 동일 품목이 생산물의 일부분으로서 있으면, 반대의 증거가 있기 전에는 생산된 장소에 있는 모든 식품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이 장의 목적을 위해, (a), (b)항의 동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가 나온 생산물은 인간 소비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a) 페마도축자(제53조 개념정의 참조)에 의해 도살된 동물 또는 페마도축자가 받은 죽은 (동물)
- (b) 스코틀랜드에서는, 도살장이외에서 도축된 (동물)
- (5) 위 (4)항에서, 스코틀랜드에 적용에 있어서 “동물” 소, 양, 염소, 돼지, 말, 당나귀, 노새를 의미한다. 그리고 패러그래프(b)는 사고, 질병 또는 긴급사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 의심되는 식품의 조사와 압류

- (1) 식품관청의 관할 공무원은 정당한 시기에 인간소비를 위한 (a), (b)호의 어떠한 식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 (a) 판매를 위한 것 또는 판매목적 제공되거나 진열된 어떤 식품
- (b) 판매를 위한 준비 또는 판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에게 위탁되거나, 소지하고 있는 어떠한 식품
- 그리고 아래 (3)항에서 (9)항까지는 그러한 조사로써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식품이라고 관할 공무원에게 보이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다음 아래 조문도 또한, 위와 같은 조사 이외에도, 식품관청의 관할공무원에게 식품이 식중독을 유발할 것 같거나 또는 인간에게 어떤 전염병을 발병할 것 같아 보이면 적용할 수 있다.

- (3) 관할 공무원은,
- (a) 식품에 관하여 책임있는 사람에게 통지가 철회될 때까지는 그 식품 또는 그 식품의 일정부분은 인간소비를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과 그리고 제거되지 않도록 통지를 할 수 있다.
  - (b) 치안판사가 발부한 명령(영장)으로 그 식품을 압류하고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위 (a)문단에 의한 통지상의 지시를 알면서 위반한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4) 공무원이 위 (3)항 (a)호에 의해 수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에, 상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한, 그는 21일 이내에 식품이 식품위생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그 통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그 식품을 압류하여야 하고 치안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던 영장으로 그 식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 (5) 관할공무원이 위(3)항 (b)호 또는 (4)항 (b)호에 수여된 권한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는 식품에 관하여 책임있는 사람에게 그가 치안판사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 (a) 위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해 그 식품으로 인하여 기소될 수 있는 자는, 치안판사 면전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와 증인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 (b)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치안판사는 식품에 관하여 offence의 죄로 기소된 자를 심리하는 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6) 치안판사가 그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식품을 부적당하다고 선언하고, 다음 (a), (b)호의 명령을 해야 한다.
- (a) 그 식품을 폐기할 것을 명령한다. 또는 인간소비를 위한 사용으로부터 예방되어야 할 것을 명령한다.
  - (b) 폐기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초래된 합리적인 비용은 그 식품의 소유자가 부담할 것을 명령한다.
- (7) 위 (3)항 (a)호에 의한 통지가 철회되거나 영장에 의하여 압류된 어떤 식품

이 치안판사가 부적당하다고 선언하기를 거부하면, 그 식품관청은 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하락에 대하여 그 식품의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 (8) 위 (7)항에 의한 전보배상이나 또는 권리에 관하여 논쟁된 문제는 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 (9) 스코틀랜드에서 이 조문의 적용에서는
  - (a) 치안판사에 관하여는 sheriff 그리고 magistrate를 포함한다.
  - (b) (5)항의 (b)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 (c) 위 (6)항에 의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d) 위(8)항에 관하여 조정에 의한 결정은 단독 조정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에는 sheriff가 결정한다.

#### 제10조 개선 통지

- (1) 집행관청의 공무원이 식품사업자가 어느 명령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근거를 갖는다면, 그는 사업자에게 (a), (b), (c), (d)호의 통지를 발할 수 있다(이하“개선통지”라고 한다)
  - (a) 명령규정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믿는 근거를 통지한다.
  - (b) 사업자가 준수하지 못한 물질을 특정한다.
  - (c) 공무원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조치를 특정한다.
  - (d) 사업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적어도 그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한 통지에 명기된 기간(14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2) 개선통지에 순응하지 않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3) 이 조항과 아래 제11조는 이 장(part)에 근거한 다음의 명령규정에 적용한다.
  - (a) 식품 준비과정에서의 가공 또는 처리의 용법을 요구하고, 금지하고 또는 규율하는 규정
  - (b) 식품 또는 식품재료에 관한 상업적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위생기준과 실

행에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

제11조 금지 명령

(1) 만약,

- (a) 식품사업자가 이 조항에 근거한 명령규정에 의해 offence로 유죄인정이 되면, 그리고
- (b) 식품사업자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건강위험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명령으로 적절한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가 건강에 해가 되는 위험을 내포한다면, 건강위험조건은 식품사업에 관하여 충족된다.

- (a) 가공 또는 처리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
- (b) 어떤 시설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될 어떤 시설장소의 건축
- (c)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어떤 시설장소 또는 장비의 상태 또는 조건

(3) 적절한 금지초지는,

- (a) 위(2)항의 (a)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의 가공 또는 처리를 위한 사용의 금지이다.
- (b) (b)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을 위하거나 또는 다른 동종의 식품사업 목적의 시설장소 또는 장비 사용의 금지이다.
- (c) (c)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사업을 위한 시설장소 또는 장비의 사용에 대한 금지이다.

(4) 만약,

- (a) 식품사업자가 위 제10조 (3)항 (b)호에 의해 이 조문이 적용되는 어느 명령규정에 근거하여 offence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 (b) 식품사업자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이 그 사안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은 명령으로 어떤 식품 사업 또는 명령으로 명기된 종류의 식품사업 부류

의 경영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금지를 부과할 수 있다.

(5) 위 (1)항 또는 (4)항에 의한 명령(금지명령)을 한 후 실행할 수 있는 한 바로 집행관청은,

(a) 사업자에 대한 명령부분을 제시한다. 그리고

(b) 위(1)항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 그러한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에서 눈에 띄는 곳에 명령서를 붙인다.

그리고 그러한 명령을 알면서 무시하는 누구든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6) 금지명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효력이 정지된다.

(a) 위(1)항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 그 사업자가 그 사업에서 건강위험기준을 더 이상 충족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만족스러운 경우, 집행관청이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b) 위(4)항에 의한 명령의 경우에, 법원이 동일한 효과를 가진 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7) 집행관청은 3일 이내에 위(6)항 (a)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그러한 증명서의 발급을 그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청은,

(a)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그리고 14일 이내에 관청이 만족한지 만족하지 않은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b) 관청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사업자에게 그 결정의 이유를 통지한다.

(8) 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은 위(6)항 (b)호의 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a) 금지명령 후 6월 이내; 또는

(b) 이전에 지시서 발급 신청을 한 경우 그 직후부터 3월 이내

(9) 치안판사(스코틀랜드에서는 세리프)는 어떤 식품사업에 관하여 아래 12조 (2)항에 의한 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위 (1)항은 그 사업자가 법원 또는 세리프에 의해 이 조문이 적용되는 규칙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 (10) 위(4)항은 식품사업의 경영자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위(5) 또는 (8)항은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또는 그 소유자도 마찬가지이다.
- (11) 위(10)항은 식품사업과 관련하여 “경영자”는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도록 또는 사업의 일부를 소유자가 위임한 사람을 의미한다.

#### 제12조 긴급금지통지 및 긴급금지명령

- (1) 집행관청의 관할 공무원이 건강위험조건이 어떤 식품사업에 관하여 충족된다고 만족하면, 공무원은 그 사업자에게 통지한다(이하 “긴급금지통지”)
- (2) 치안판사(스코틀랜드에서는 세리프)가 그러한 공무원의 신청에 의해 건강위험조건이 충족된다고 만족하면, 그 법원 또는 세리프는 적절한 금지명령을 부과한다.(이하“긴급금지명령”)
- (3) 이를 적용하기 적어도 하루 전에 긴급명령이 적용될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한 그 공무원은 긴급금지명령을 할 수 없다.
- (4) 위 11조 (2), (3)항은, 이 조문의 목적에 있어서, 이 조문을 위해서 적용한다. 그러나 건강침해의 위험인 (2)항은 침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적용한다.
- (5) 긴급금지통지를 하자마자 집행관청은 그러한 시설물에서 눈에 띄는 곳에 통지서에 붙여야 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통지를 위반하는 누구든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6) 금지명령을 발하자마자, 집행관청은 사업자에 명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장에 눈에 띄는 곳에 그 명령서를 붙여야 한다. ;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명령을 위반하는 누구든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7) 긴급금지통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 (a) 긴급금지명령을 위한 신청이 그 통지를 한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b) 신청을 한 경우,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신청철회가 있는 경우
- (8) 소유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더 이상 건강위험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관청이 만족을 하게 되면 집행관청의 증명서발급

에 의해 긴급금지통지 또는 긴급금지명령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9) 집행관청은 제8항에 언급된, 조건만족의 일로부터 3일 내에 위(8)항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소유자의 신청으로 그러한 증명서에 관청은 실행가능하고 사건 14일 이내에 관청이 만족한지 만족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관청이 만족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의 이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 (10) 긴급금지통지가 사업소유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집행관청은 다음 각 호가 아니라면 그 통지로 인해 입는 손실을 전보하여야 한다.
- (a)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긴급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b) 법원이 신청을 청문한 후,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해당사업에 관하여 건강 위험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선언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 항에 의한 권리 또는 전보배상액에 관하여 이의는 조정에 의해서 또는(스코틀랜드에서는 단독 조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단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리프가 결정한다.

### 제13조 긴급관리명령(emergency control orders)

- (1) 식품, 식품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영리행위가 건강침해 위험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다고 장관(Minister)이 판단하면, 그는 명령으로서(이하 긴급관리명령) 식품, 식품원료 또는 식품접촉물질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한다.
- (2) 알고서 긴급단속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누구든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3) 긴급관리명령으로 금지된 것에 관하여, 장관은 특별한 경우 조건없이 또는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 (4) 제2항의 offence로 기소된 자는 다음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a) 긴급관리명령에 반하는 위 (3)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 (b) 그 승인에 따른 어떤 조건을 준수한 경우
- (5) 장관(Minister)은 긴급관리명령이 내려질 식품, 식품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하여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상당하

다고 보이는 경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6) 이 조의 명령을 위반하는 누구라도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7) 장관(Minister)이 이 조에 의한 긴급관리명령 또는 지침(direction)을 위반하는 어느 사람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장관은 이 조에 의해 그 사람으로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 소비자보호

제14조 요구되는 성질 또는 성분 또는 품질이 아닌 식품의 판매

- (1) 구매자에게 요구되는 성질 아닌 식품 또는 구매자에게 요구되는 성분 또는 품질이 아닌 식품을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판매하는 사람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2) 위 (1)항의 판매란 인간소비를 위한 판매로 해석한다.; 그리고 제1항에서 구매자가 분석이나 또는 조사를 위해 구입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항변사항이 될 수 없다.

제15조 식품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표시

- (1) 판매된 식품에 식품을 허위로 표시한 또는 그 식품의 성질 또는 성분 또는 품질에 관해 오해를 일으키는 표시(label)가, 포장지나 용기에 부착되었던지 프린트되었던지,
  - (a) 식품을 잘못 표시한 경우
  - (b) 식품의 성질, 성분, 품질에 관하여 오도할 수 있는 경우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2) a)어떤 식품을 허위로 기술하거나 b) 식품의 성질, 성분, 품질에 관하여 오도할 수 있는 광고, 출판관계자이거나 출판하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3) 식품의 성질 또는 성분 또는 품질에 관해 오해를 일으키는 식품의 준비, 판매 또는 판매목적 제공하거나 판매목적 진열하는 누구든지 또는 판매목적

소지하고 있는 누구든지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4) 위(1)항 또는 (2)항에 의한 offence의 처리절차에서, offence가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나 광고가 식품 성분을 정확하게 표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offence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5) 이 조에서 판매는 인간소비를 위한 판매로 추정된다.

## 규칙

### 제16조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

- (1) 장관들(Ministers)은 명령규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a) 특정부류의 성분 그리고 특정된 식품, 식품재료의 제출을 요구, 금지 또는 규제(단속)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식품의 성분을 규제하기 위한 명령규정;
  - (b) 식품이 인간소비에 적당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그러한 규칙에 기술된 것으로서 미생물학적 기준(식품의 적절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에 부합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규정
  - (c) 식품준비에서 가공 또는 처리의 방법을 요구, 금지, 규제(단속)하는 규정
  - (d) 식품 또는 식품재료에 있어서 영리행위 수행과 관련한 위생조건준수와 실행의 준수를 확실하게 하는 규정
  - (e) 식품에 적용되는 기재사항 그리고 식품의 광고 또는 표시, 마킹, 프리젠텩에 관하여 금지 또는 요구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 ; 그리고
  - (f) 식품 또는 식품재료에 관한 영리행위를 수행을 금지 또는 단속(규제)에 대한 특별규정을 포함하여, 식품 또는 식품재료에 관한 기타 규정, 장관들에게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서,
    - (i) 식품이 식품안전기준 또는 공공의 건강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 (ii)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 (2) 장관들(Ministers)은 또한 명령규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a) 인간소비를 위한 식품에 접촉하게 될 의도된 접촉물질에 관하여 영리행위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위생조건과 실행을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규정;
  - (b) 그러한 물질의 라벨링, 마킹, 광고에 관한 요구 또는 금지, 기타 단속(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 부착되는 기재사항에 관한 요구 또는 금지, 기타 단속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
  - (c) 그 밖에 그러한 물질에 관한 영리행위를 수행을 금지 또는 단속(규제)를 위한 규정.
- (3) 위(1)항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항에 의한 규칙은 부칙 제1조에 언급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4) 위(1)항에 의한 명령규정의 제정에서, 장관들(Ministers)은 가능한 한 식품의 재료로서 또는 식품으로서 영양가치가 없는 물질의 사용제한의 바람직성을 고려해야 한다
- (5) 위(1)항에서 그리고 부칙 제1조에서, 그 내용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 (a) 식품은 인간소비를 위한 판매된 식품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 (b) 식품재료는 식품재료로부터 식품이 추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제17조 자치단체의 집행 규정

- (1) 장관들(Ministers)은 명령규정으로써 식품, 식품재료, 접촉물질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 또는 규제(단속)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하여, 식품, 식품원료, 접촉물질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자치단체(Community)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자치단체 규정).
- (2) 이 법에 식품, 식품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과 관련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 규정(Community provision)과 관련하여, 장관들의 견해로, 이 법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면, 장관들은 명령규정으로써,
- (a) 자치단체 규정이 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집행되고 실행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러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 (b)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자치단체의 규정에 관한 명령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경우, 일정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 (3) 위 (1), (2)항에서 식품 또는 식품재료란 제16조 (5)항의 식품, 식품재료로 해석한다.

제18조 특정식품에 대한 특별규정 등

- (1) 장관들(Ministers)은 명령규정으로써 (a), (b), (c)호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a) 새로운 식품 또는 새로운 식품이 추출되어 질 수 있는 식품원료, 규칙으로 정하여진 부류의 식품원료에 관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 (b) 유전자 변형 식품원료 또는 유전자 변형식품원료로부터 나오는 식품, 그렇게 지정된 부류에 관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 또는
  - (c) 그렇게 지정된 부류의 식품의 수입금지(하기 위한) 규정.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명령규정으로 지정된 식품 또는 식품재료를 금지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금지의 경우에는 허락된 입국장소에서 수입된 식품 또는 식품원료를 금지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2) 장관들(Ministers)은 또한 명령규정으로 다음 각호를 할 수 있다.
  - (a)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유품목과 관련하여 그러한 지정(이항에서는 “특별지정”이라고 한다)을 규정할 수 있다.
  - (b) 집행관청에 의해 특별지정으로 권한 있는 우유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허가를 받하기 위한 규정을 할 수 있다
  - (c) 장관의 판매동의가 없다면, 특별지정을 함이 없이 인간 소비를 위한 우유의 모든 판매를 금지를 정할 수 있다.

(3) 이 조에서는

“허락된 입국장소”는 항구, 공항 또는 기타 규칙에 의해 허락된 입국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 탁송에 의한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그 탁송의 수입에 허가가 이루어진 입국장소를 포함한다;

“기재사항”은 식품과 관련하여서는 원산지의 기재 또는 식품이 포장된 방법에 관한 기재를 포함한다.

“새로운 식품”은 영국에서 이전에 인간소비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식품을 의미한다. 또는 매우 제한된 범위로만 사용되어왔던 식품을 의미한다.

(4) 이 조의 목적에 대해서, 식품원료에서 유전자 또는 다른 유전 물질이 (a), (b)호에 해당되면 식품원료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다.

(a) 인위적인 기술수단으로 변형된 것이라면; 또는

(b) 변형된 유전물질로부터 복제된 것들을 통해 유전된 것이라면 또는 추출된 것이라면

그리고 이 항에서는 “인위적 기술”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재생산 절차(선택적인 품종개량 또는 제외수정을 포함하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19조 식품시설장소의 등록과 허가

(1) 장관들(Ministers)은 명령규정으로써 (a), (b)호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a) 식품사업목적으로 사용될 또는 사용된 시설장소에 대해 집행관청에 의해 등록을 위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령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시설장소를 식품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b) 아래 (2)항에 따라 식품사업목적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에 관한 허가에 관하여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 발부된 허가에 따르지 않는 어떤 시설을 식품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 장관들은 다음 각호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위(1)항 (b)호에 의해 수여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a) 식품이 식품안전조건에 부합하거나 또는 공공건강의 이익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b)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항변(방어, 변론) 등

## 제20조 타인에 의한 책임으로 인한 위반

어떤 다른 사람의 작위 또는 임무해태 때문에 이 장의 전술한 조문들 중 어떤 조문에 의한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사람은 offence의 죄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소되어 유죄가 될 수 있다.

## 제21조 성실한 의무준수의 항변

(1) 이 장의 이전 규정 위반에 대한 절차에서(이조에서는 “관련규정”이라한다) 아래(5)항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이 그 자신 또는 그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그가 취한 모든 상당한 예방과 모든 노력 의무조치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항변(방어)할 수 있다.

(2) 위(1)항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위 제8조, 14조, 15조의 offence로 기소된 자로서,

(a) offence가 있다고 주장되는 식품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b) 영국으로 그것을 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3), (4)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그 항에서 언급한 항변을 할 수 있다.

(3) 다음 각호를 증명하면 이 항의 요건을 만족한다.

(a) 지휘를 받지 않은 타인의 작위 또는 임무해태 때문에 위반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또는 그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위반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b) 모든 사정상 합리적이었다면 취하였을 행동으로서 그가 문제되는 식품을 막는 행위를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또는 그에게 식품을 공급했던 사람이 행하였던 막는 행위(저지하는행위)를 믿는 것이 모든 사정상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리고

(c) 그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관련규정에 위반할 정도인지를 그는 몰랐고 위반할 당시에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었음을 증명한다면

(4) 다음 각호를 증명하면 이 항의 요건을 만족한다.

(a) 그의 지휘를 받지 않는 타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또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믿었기 때문에 위반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b) 위반으로 추정되는 판매 또는 판매예정이 그의 이름 또는 마크(표,기호)로 판매 또는 판매예정이 아니었던 경우를 증명한다면; 그리고

(c) 그의 작위 부작위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정도이었다는 것을 위반으로 추정되는 때에 그가 몰랐던 것을 증명한다면, 그리고 그가 합리적으로 알 것이 기대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5) 위(1)항의 의한 항변이 타인의 작위 또는 임무해태 때문에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면 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을 포함한다면, 그 책임있는 자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 청문 절차보장 전 적어도 7일 이전이 아니라면 그리고

(b) 첫 출두로부터 1월 이내에, 그가 위반과 관련하여 법정에 이전에 출두하였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타인의 신원에 관한 도움 또는 확인에 관한 정보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위 (5)항에서 법원에 나타난 어떤 것이든 법원에 제시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2조 영업상 출판의 항변

식품판매목적 광고에 있어서 이 장의 이전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항변을 할 수 있다.

(a) 그는 그의 사업이 광고의 출판을 위한 출판하는 것이고 편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b) 그는 사업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광고를 받았고 그 광고가 규정위반에 해당할 것이라는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았고 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기타규정과 보칙

##### 제23조 위생교육 규정

- (1) 관할 구역이든 구역 밖이든 식품 관청은 식품사업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자(소유자, 피용자, 기타를 불문하고)에 대한 식품위생에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2) 식품관청은 이 장에 의해 발생된 비용에 관하여 다른 식품관청에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위(1)항에서 언급된 교육과정.

#### 제24조 조개류(shellfish)청결을 위한 시설규정

- (1) 식품관청은, 그의 관할을 불문하고, 조개류(갑각류)의 청결을 위한 수족관(탱크) 또는 기타 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 (2) 식품관청은 다른 관청에 의해 이 조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조개류 청결을 위한 수족관(탱크) 또는 기타 시설을 공공에게 가능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 (3)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봄철의 통상의 만조시 최고수위의 아래있는 토지 또는 그 위에 있는 어떤 작업의 실행, 시설물 또는 탱크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부처장관에 의한 승인을 받은 조건과 제한에 따라 그와 같은 계획하에 수행된 것은 예외이다.
- (4) 이 조에서 조개류와 관련한 “청결”은 살균처리를 포함한다.

#### 제25조 직무집행을 위한 명령(orders)

- (1) 이 장의 직무를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들(Ministers)은 명령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특정부류의 사업을 수행하는 누구라도 명령으로 (a)-(b)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a) 아래(2)항에 적용되는 어떤 식품, 물질 또는 접촉물의 샘플을 취하게 하기 위해 명령으로 지정된 사람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 (b) 그러한 식품, 물질 또는 접촉물질에 관한 정보를 지정된 사람이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는 명령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 (2) 이 항은 (a), (b), (c)호에 적용한다.
- (a) 인간 소비를 위한 사업과 관련된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될 의도있는 명령으로 지정된 부류의 어떤 식품
  - (b) 인간 소비를 위한 식품의 준비에서 사용을 위한 사업과정에서 판매되는 그렇게 지정된 부류의 어떤 물질, 또는 그러한 사업과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 그리고
  - (c) 인간소비목적인 식품과 접촉하게 될 의도 그리고 그러한 사업과정에서 판매되도록 특정된 부류의 어떤 접촉물질
- (3) 위(1)항에 의한 명령으로 얻게 된 개인사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a), (b)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 (a) 장관(Minister)의 지시에 따라, 이 법 또는 북아일랜드에서 상응하는 유효한 법규의 목적 또는 자치단체규정(Community obligation)에 부합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 (b) 그 명령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해서 또는 그러한 절차의 어떤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이 항 위반으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받는다.
- (4) 위(3)항에서, 이 법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은 (a), (b)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포함한다.
- (a) 식품이 식품안전요건에 부합하거나 공중건강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
  - (b)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시킬도록 하기 위한 것
- 그리고 북아일랜드도 이와 같다.

#### 제26조 명령규정과 명령: 보충규정

- (1) 이 장에 의한 명령규정은,
- (a) 어떤 식품, 식품재료 또는 접촉물질에 관한 영리행위를 금지 또는 규율, 수행에 관하여

- i) 명령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 ii) 그 명령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또는 관련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영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의 규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 (b) 위의 제9조의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명령규정에 따라 위(a)호에 언급된 그러한 식품으로서 식품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2) 이 장에 의한 명령규정은,

- (a) 명령규정이 적용되는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록을 보관하고 제시하고 것을 요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b) 명령규정에 따르도록 요구된 등록부에 특정 사항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c) 그 등록을 정당한 때에 공중에게 조사를 위해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로 그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d) 면허 발급의 면허기간과 면허조건을 기재할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면허 취소, 정지, 철회 할 수 있다.
- (e) 치안판사법원에 공소제기를 규정할 수 있다.
- (f) 집행관청(공무원)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3) 이 장에 의한 명령규정 또는 위 25조의 명령은,

- (a) 명령규정의 위반 또는 명령 위반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판 받을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그리고
- (b) 그러한 위반의 유죄인 사람은 그러한 명령규정 또는 명령으로 특정하여 그러한 벌칙의 책임이 있다고 정할 수 있다.

### 제3장 행정과 집행

#### 행정

## 제27조 공공분석가(public analyst)의 임명

- (1) 이 조가 적용되는 즉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식품관청 또는 스코틀랜드 섬 의회(council)는 이 조에 의해 1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하 “공공분석가”)을 관할지역에서의 이법의 목적을 위해 분석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명한다.
- (2) 공공분석가는 다음 각호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반분석가로 임명되지 않는다
- (a) 장관들의 명령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지 않는 경우
  - (b) 장관들이 인정한 다른 자격을 갖지 않는 경우.
- 그리고 지역에서 직접, 간접으로 수행하는 식품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공분석가로서 활동할 수 없다.
- (3) 이 조가 적용되는 관청은 이 장에 의해 비용을 포함하여 합의된 보수를 공공분석가에게 지불한다.(축약)
- (4) 이 조가 적용되는, 단지 1명의 공공분석가를 임명한 관청은 또한 공공분석가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행동을 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는 그 사무를 행할 자가 부재이거나 행할 능력이 없는 동안에는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 (a) 그리고 공공분석가의 자격, 임명, 해임 그리고 보수에 관한 이 조의 규정은 공공분석가의 대리인에게도 또한 적용한다.; 그리고
  - (b) 이 법의 다음 규정은 공공분석가의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5) 위(1)항에서 “식품관청”은 Non-metropolitan district, Sub-Treasurer of the Inner Temple or the Under Treasurer of the Middle Temple의 council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2)항은 식품사업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것은 장관들의 명령규정으로 기술된 식품사업을 포함한다.

## 제28조 조사를 위한 시설규정

- (1) 식품관청, 또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 의회는 이 법을 위한 조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2) 이 법에서 “조사(검사)”는 미생물학적 조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조사하다”

는 그렇게 해석한다. .

## 샘플(견본)과 분석 등

### 제29조 샘플의 제출

집행관청의 권한있는 공무원은,

- (a) 식품의 샘플 또는 식품의 준비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샘플을 구입할 수 있다.
- (b) 다음의 식품 또는 식품 성분의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인간 소비를 위해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할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아래 제32조(출입권한)에 의한 출입할 수 있는 시설에서 발견되는 식품의 샘플 또는 그 물질.

- (c) 어떤 시설장소에 있는 식품재료를 샘플로 수거할 수 있다. 또는 접촉물질의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 (d) 법 또는 명령규정 또는 명령에 의한 규정의 절차에서 증거로서 요구된다고 정당하게 믿어지고, 어떤 시설물에서 발견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 제30조 샘플의 분석 등

(1) 위 제29조의 샘플을 수거한 집행관청의 공무원은

- (a) 그 샘플이 분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것을 분석되도록 그 샘플이 생산되는 지역 또는 관할 공무원이 있는 지역의 공공분석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축약)
- (b) 그 샘플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식품검사자(food examiner)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식품 또는 식품준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구입한 공무원 아닌 사람은 그것의 샘플을 다음을 위해 의뢰할 수 있다.

- (a) 구입된 장소의 공공분석가에 의한 분석을 위해

- (b) 식품검사자에 의한 검사를 위해
- (3) 샘플이 이 조에 따라 분석을 위해 제출될 경우에는, 문제된 지역의 공공분석가의 기관이 없는 경우, 그 샘플은 다른 지역의 공공분석가에 제출된다.
- (4) 샘플이 이 조의 분석 또는 검사를 위해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경우에, 그 식품의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는 어떤 이유로 분석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그는 결정으로서 그 샘플을 다른 식품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식품의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는 이 조에 따라 그에게 샘플이 제출되자마자 분석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 (a) 그가 문제 지역에 대한 공공분석자이고
- (b) 집행관청의 정당한 권한있는 공무원에 의해 그에게 분석을 위해 샘플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 그의 요구하는 상당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다.
- (6) 샘플을 분석 또는 검사하는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는 분석 또는 검사 결과를 시험결과서를 그 제출하였던 사람에게 교부한다.
- (7) 시험결과서는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에 의해 서명된다. 그러나 그의 지시로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분석 또는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지시로 행동하는 사람)이 서명한다.
- (8) 이 법 절차에서, 당사자중 일방에 의한 생산물
- (a) 위(6)항의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에 의한 시험결과서를 위한 제공된 제출물 또는
- (b) 그러한 시험결과서의 사본으로서 타방에 의해 분석자 또는 검사기관에 제공된 문서의 제출은
- 위(a)문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타방 당사자가 그 식품 공공분석자 또는 식품검사자를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시험결과서에 언급된 사실은 충분한 증거가 된다.
- (9) 이 조에서는
- “식품 분석자”는 공공분석자 또는 이 법을 위한 분석을 행할 필수적인 자격

을 갖춘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식품검사자”는 이법을 위한 검사를 수행할 필수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필수적인 자격”은 장관들의 명령규정으로 정하여진 것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한다. 또는 장관들이 승인한 기타 자격을 의미한다.

“샘플” 집행관청의 권한있는 공무원과 관련하여, 아래 제31조 규정의 수행으로 그가 얻는 샘플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2명 또는 그 이상의 일반분석가가 어떤 지역에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 있어서 일반분석가에게 이 조는 그들 중 1인 또는 일부에게 적용된다.

#### 제31조 샘플수거와 분석 규정 등

- (1) 위 제29조, 30조 규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장관들은 명령규정을 만들 수 있다.
- (2) 위 (1)항의 일반원칙의 범위 내에서, 그 항에 의한 명령규정은,
  - (a) 샘플을 수거할 지 여부, 언제 수거하는지 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b) 어떤 수거된 샘플이 적절한 샘플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샘플수거방법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c) 적절하게 구분하여 수거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샘플을 취급할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d) 샘플을 받아야 하는 자와 그 샘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 (e) 식품, 물질, 접촉물질 또는 식품원료의 책임 있는 자에 하는 통지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f) 분석 또는 검사 결과를 분류하는 방법 또는 샘플을 나누는 방법 또는 샘플을 분석 또는 조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g) 분석가 또는 검사자가,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상황을 정할 수 있다.
  - (h) 정부화학연구실(Government Chemist)에 또는 기타 다른 식품분석가 또는 검사관에게 분석 또는 검사를 위해 샘플이나 샘플의 일부분이 제출되



는 상황 또는 규정에 의한 지정된 자에게 제출되는 상황을 정할 수 있다.

(3) “식품분석가”와 “식품검사자”의 의미는 위 30조와 같다

### 출입권과 출입방해 등

#### 제32조 출입권

(1) 정당하게 법적으로 인증된 서류를 보인 집행관청의 공무원은 (a)-(c)항 합리적인 시간동안 권한을 갖는다.

(a) 시설에서 이 법(또는 명령규정 또는 명령) 위반이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에 있는 시설장소를 출입할 권한이 있다. ; 그리고

(b) 규정 위반의 증거가 그 영업시설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권한지역 내 또는 외를 불문하고 그 영업시설장소를 출입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c) 공무원이 이 법에 따라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시설장소로 들어가는 경우에

그 보유자에게 24시간 이전에 출입 통지를 하지 않는 한 단지 사적 주거로만 사용되는 시설장소에 대한 허가는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2) 치안판사가 위 (1)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시설물 출입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면의 선서된 정보, 즉

(a) 그 시설장소에 출입이 거절되었다면 또는 거절이 염려되며, 그리고 경고의 통지가 보유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b) 허가신청 또는 통지가 출입방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점유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점유자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치안판사는 영장으로 시설물에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한 모든 영장은 1월간 유효하다.

(4) 시설물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타인을 동반할 수 있다.

- (5) 이 조에 의해 시설물에 출입하는 공무원 또는 이 조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출입하는 공무원은 식품사업과 관련된 기록(컴퓨터에 의한 기록포함, 형식여부불문)을 조사할 수 있다.
- (6) 위(5)항의 권한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 (a) 기록이 증거로서 요구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기록을 압수(압류)할 수 있다
  - (b) 컴퓨터에 기록이 저장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그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 이 장으로 어떤 시설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또는 영장에 의해 출입하는 사람이 그가 시설물에서 거래비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공개가 그의 의무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offence의 죄로 처벌된다.

#### 제33조 공무원을 방해 등

- (1) 고의적으로
- (a) 이 법을 집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받는다.
  - (b) 이 법의 직무수행을 위해 조력이나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받는다.
- (2) 위(1)항 (b)호에 언급된 요구에 준수하여야 할 사람이 특별한 물질에 있어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틀린 정보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한 경우 offence의 죄로 처벌받는다.
- (3) 위(1)항 (b)호에서 어떠한 것도 그를 유죄로 할 수 있게 한다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 위반

#### 제34조 소추기간

이 법 위반의 경우에 아래 35조 (2)항에 의해 처벌되는 어떤 기소도 위반행위

로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검사가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달하면 기소할 수 없다

제35조 위반의 벌칙

- (1) 위 제33조 (1)에 위반하여 유죄인 사람은 level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3월 이내의 감금의 약식판결을 받는다. 또는 벌금 및 감금을 함께 받는다.
- (2)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인 사람은 고소되어 벌금 또는 1년 이내의 감금의 판결을 받는다. 또는 벌금 및 감금을 함께 받는다.  
약식판결에서는 관련정도액수(아래3항참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월 이내의 감금을 받는다. 또는 양자를 함께 받는다.
- (3) 위(2)항에서 “관련 정도 액수”는 제7조 제8조 또는 제14조위반의 경우에는 £20,000  
기타 경우에는 범정상한을 의미한다.

제36조 법인의 위반

- (1) 법인의 위반은 이사, 경영자, secretary 또는 기타 유사한 법인 관리자의 동의 또는 묵인(공모) 또는 과실(경시)에 기인한 것에 의해 위반한 것으로 증명된다.  
법인은 물론 개인도 위반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함께 처벌된다.
- (2) 국유산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규정된 법규에 의해 설립된 법인체에 관하여는 “이사”는 그 법인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Appeals (항소)**

제37조 치안판사법원 또는 웨리프에 항소

제38조 Crown Court(형사법원)에 항소

제39조 개선통지위반에 대한 소추

## 제4장 기타 및 보충규정

### 장관의 권한

#### 제40조 실무집발간권한

- (1) 식품관청의 지도에 대해서, 장관들(Ministers) 또는 장관(Minister)은 이 법, 명령규정,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권장된 실무지침서(codes of recommended practice)를 발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침서는 발부되기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 (2) 이 법에 의해 수여된 직무 집행에 있어서 모든 식품관청은---
- (a) 지침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 (b) 장관들 또는 장관의 명령과 부합하여야 한다.

#### 제41조 보고 요구 권한

모든 식품관청은 보고서를 장관(Minister)에게 보내야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관에게 그 정보를 주어야 한다.

#### 제42조 임무해태

- (1) 식품관청이 이 법에 의해 부과된 관청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관청의 직무 태만이 식품소비자의 일반적인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관(Minister)은 명령으로써 다른 식품관청 또는 장관자신의 공무원 중의 한 명에게 권한을 줄 수 있다.
- (2) 위(1)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관(Minister)은 지방 조사를 개최할 수 있다. 그리고 장관이 그렇게 한 경우에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의 관련규정은 그 inquiry가 그 법에 의해 개최되는 지방 inquiry인 것처럼 적용한다.
- (4) (1)항에 의해 대체하는 관청 또는 장관은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 보호규정

제43조 사망에 있어서 등록 또는 면허의 유지

- (1) 이 조항은,
  - (a) 시설에 관하여 등록한 사람의 사망에 효력이 있다
  - (b) 규정에 따라 발부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망에 효력이 있다
- (2) 등록과 면허는 사망자의 사망으로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의 유족의 이익을 위해 존속한다. 또는 집행관청이 더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의 이익을 위해 존속한다.

제44조 신의성실로 행위한 공무원의 보호

- (1) 그가 이 법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의무 또는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정직한 믿음으로 행위를 하였다면 공무원은 이 법의 집행에서 그리고 직무범위 내에서 그의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없다.
- (2) 공무원의 행위에 관하여 식품관청이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3) 법집행이지만 그의 직무범위 밖의 행위로 공무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직무범위 내이었다고 정직하게 생각하였다고 관청이 판단하면 관청은 공무원이 야기한 비용 또는 지불받아야할 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면제할 수 있다.

## 재정규정

제45조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 (1) 이 법에 따라 행하도록 요구되거나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서 집행관청이 행한 것의 비용부담은 집행관청의 부담으로 한다는 명령규정을 장관들 (Ministers)은 정할 수 있다
- (2) 이 조문의 명령규정은 명령규정이 부과하는 부담과 그런 부담의 비용상환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장관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 (3) 규정은 비용부담액은 최대 또는 최소에 있어서 집행관청의 재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 (4) 비용부담은 최대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는 최소 액보다 적을 수 없다는 규정은 그 총액 또는 다르게 규정된 사건에서 관해서는 총액의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총액 또는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제46조 공무원과 시의회(county councils)의 비용

- (1) 식품 샘플의 수거 그리고 분석 또는 검사에서 식품관청 공무원에 의해 이 법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그 관청이 부담한다.
- (2) county council의 비용부담.

#### 제47조 위원회 의장의 비용상환(Remuneration of tribunal chairmen) 의장에게 의회에 의해 정하여진 금전이 지불된다

### 서류등

#### 제48조 규칙과 명령

- (1) 이 법에 의한 명령규정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장관들 또는 장관의 권한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 (a) 명령규정 또는 명령으로 처리되는 유사한 것을 처리하는 다른 입법을 할 권한.
  - (b) 다른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정을 정할 권한(사업이 다른 경우 다른 규정을 두는 것 등을 포함)
  - (c) 예외, 제한, 조건을 규정할 권한. 장관들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칙, 세칙, 경과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49조 문서의 형식과 증명(Form and authentication of documents )

(1) 다음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a) 식품관청에 의해 발부된 이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증명된 모든 서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b) 모든 통지나 신청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장관들은 명령규정으로써 문서의 형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식품관청이 발부한 모든 문서는 관청을 대표하여 서명 또는 발부된다.

관할 구역과 관련된 정당한 권한 있는 관청에 의해 서명 또는 발부된다.

#### 제50조 서류 서비스

(1)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법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류는 그 사람에게 그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집행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서류를 남겨두거나, 그 사람 사무실에 우편(발신자 비용부담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c) 법인에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보낸다.

(d) 기타 다른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에 보낸다.

#### 다른 법률의 개정

제51조 식품오염; 긴급명령

제52조 시장판매, 설탕, 냉동보관

#### 보완규정

제53조 일반해석

(1)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에서는

“광고”는 어떤 통지, 안내장, 라벨, 포장지, 송장 또는 기타 문서, 그리고 음성으로 이루어진 알림 또는 빛, 소리의 전달이나 발생을 통해 이루어진 알림,

- 그리고 “광고하다”는 이에 의한 것을 말한다.
- “분석” 식품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생물학적 분석과 기법을 말한다. 그리고 “분석하다”는 이에 의한 것을 말한다.
- “동물” 새 또는 물고기를 제외한 동물(창조물)을 말한다.
- “품목”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소비로 되지 않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새, 또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포함하지 않는다.
- “용기” 바구니, 들통, 쟁반, 꾸러미, 또는 개봉 또는 밀폐된 어떤 용기를 말한다.
- “위반행위”는 규정과 관련하여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크림”은 크림만 걷어 냄으로써 지방으로 된 우유의 일부분을 말한다
- “장비” 어떤 기계장치를 포함한다.
- “물고기”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을 포함한다.
- “직무”는 권한과 의무를 포함한다.
- “인간소비”는 인간소비를 위한 식품준비에 있어서 사용을 포함한다.
- “폐마도축업자의 작업소”는 인간소비를 위한 것이 아닌 도살, 가죽벗김 또는 동물살집을 잘라내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우유”는 크림 그리고 분리된 우유 또는 스킴(크림만분리시킨)처리된 우유를 포함한다
- “점유자”는 위 제1조(3)에 의해 명령으로 기술되어진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차량 마굿간 또는 장소과 관련하여 주인, 명령자 또는 선박, 항공기, 차량, 마굿간 또는 장소의 책임을 맡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
- “공무원” 고용인을 포함한다
- “준비”는 식품과 관련하여, 제조 그리고 취급절차의 어떤 형태, 그리고 “판매목적준비”는 포장, 그리고 “판매를 준비하다”는 이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다.
- “진열”은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의 모양, 외관 그리고 포장을 포함하여 식품이 판매목적으로 될 때 준비되는 방법을 포함한다.
- “소유자” 식품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선박”은 배, 보트 또는 크레프트 그리고 호버크레프트를 포함한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에 따른다.



“도살장”은 인간소비를 위해 판매를 위한 고깃점, 동물을 살육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도살을 기다리는 동안 동물이 감금된 장소와 관련되어 동물도살의 처리 또는 절차에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물질”은 비록 고체 또는 액체형태 또는 가스나 증기 형태를 불문하고 천연물질 또는 가공물질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취급”은 어떤 식품과 관련하여 열 또는 냉기로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 2. 영국의 식품기준법(the Food Standards Act 1999)

(제43조까지 부칙이 있으나, 삭제)

1 식품안전청(Food Standards Agency: 식품기준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업무를 중심으로 보아 식품안전청이라고 번역함)

(1)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을 둔다.(이하 “청”이라고 한다)

(2) 식품안전청의 주된 목적은 식품 소비(식품 생산 또는 공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와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식품과 관련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3) 식품안전청의 직무는 영국을 위하여 수행된다.

### 2 구성원의 임명 등

(1) 식품안전청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8인에서 12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a) 1인은 웨일즈의 National Assembly에서 임명된다.

(b) 2인은 스코틀랜드 Ministers에 의해서 임명된다.

(c) 1인은 북아일랜드 보건사회복지부에 의해 임명된다.

(d) 기타 구성원은 국무장관이 임명한다.

- (2) 의장과 부의장은 위 관청이 연합하여 임명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청의 다른 구성원 중 1인으로서 임명하기 전에 임명을 하는 관청은 다른 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의장, 부의장 또는 식품안전청의 구성원을 임명하기 전에, 임명하는 관청(들)은
  - (a) 식품기준청의 구성원들 사이에 기술과 경험의 다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식품안전에 관한 경험 또는 시품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에 관한 경험을 포함하여)
  - (b) 임명될 예정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의무수행을 편견을 갖을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또는 기타 이익을 갖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4) Schedule 1( 식품기준청의 구성 등)은 효력을 갖는다.

### 3 chief executive(청장)와 directors(국장)의 임명

- (1) 식품안전청에서 청장이 임명된다.
- (2) 청장은 식품안전청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대표한다.
- (3) (1)항의 최초의 청장의 임명은 위 관청들이 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임명은 그 관청들의 각각의 승인에 따라 식품안전청이 한다.
- (4)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대해 임명되는 국장은 그 지역 식품기준청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책임이 있다.
- (5) (4)항의 첫 국장 임명은 그 관청에서 이루어진다. : 그리고 그 후의 임명의 그 관청들의 승인에 따라 식품안전청이 임명한다.
- (6) (4)에 의한 청장과 국장은 그들의 임기동안 기관을 유지하고 비운다.

### 4 연례보고 그리고 기타보고

- (1) 식품안전청은 매 회계 연도 동안의 활동과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식품안전청은, 매 회계 년도가 끝난 후 즉시, 의회(의회, 웨일즈 네셔널 어셈블리, 스코틀랜드 의회, 북아일랜드 에셈블리)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3) 식품안전청은 위 의회에 기타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5 자문위원회

- (1) 식품안전청의 직무와 관련하여 권고(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는 각각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 (2) 부처장관은, 식품안전청을 자문한 후, 조언 또는 정보를 식품안전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잉글랜드(각 지역)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설립될 것을 명령한다.
- (3) 지역관청의 자문이 있는 후에,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청에 권고(조언) 또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타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 (4) 부칙 제2조(자문위원회에 관하여 보충규정이 들어있는)는 효과가 있다.

## 식품 관련 일반 직무

### 6 공적기관에 식품정책개발 그리고 조언규정 등

- (1)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 또는 식품소비자이익과 관련된 개발정책의 직무가 있다.
- (2) 장관(MInister) 또는 정부 각부처, 웨일즈의 의회, 스코틀랜드장관 또는 북아일랜드 부는 식품안전청이 그의 권한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식품안전청은 그러한 요구가 가능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7 타인에게 권고(조언), 정보 그리고 원조규정

- (1) 안전청은,
  - (a) 공적기관에 식품안전 또는 식품소비이익에 관한 권고(조언)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직무가 있다.
  - (b) 공적기관이 아닌 사람 누구에게나 그러한 일을 권고, 정보제공, 원조(조력)할 직무가 있다.
- (2) (1)(a)에 의한 직무는 공중의 구성원(일반인)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권고 받을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8 정보의 입수와 재검토

- (1)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과 식품소비자이익에 관한 정보의 입수, 집계, 유지할 직무가 있다.
- (2) (a) (1)항에 언급된 것과 관련된 과학, 기술 그리고 기타 분야의 지식개발을 감시할 직무를(포함한다.)
- (b) 그 일에 관하여 연구업무를 맡기거나 통합리서치를 수행할 직무를(포함한다)
- (3) 식품안전청이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직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 9 동물사료와 관련된 일반적 직무

- (1) 식품안전청은 동물사료의 안전과 동물사료의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식품안전과 식품소비자이익과 관련된 제6(1),7(1) 그리고 제8조에서 갖는 것과 같은 일반적 직무를 갖는다.
- (2) 제6조(2)(3)은 이 조의 식품안전청의 권한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 (3) 제7조(2)의 “공중의 구성원”과 “식품”은 “동물사료사용자” 그리고 “사료”의 용어로 대체한다.
- (4) 이 조에서 “동물사료의 안전”은 사료소비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동물건강의 위험에 관계되는 사료의 안전을 의미한다.

#### 정보획득을 위한 관찰

#### 10 관찰권한

- (1) 식품안전청은,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또는 제9조의 직무관련된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a), (b)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감시할 수 있다.
  - (a) 식품 또는 식품원료의 공급이나 생산에 관점에서
  - (b) 동물사료의 사용 또는 공급이나 생산의 관점에서
- (2) (1)항의 일반성에 반함이 없다면, 그러한 관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식품, 식품재료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하여 수행되는 식품사업 또는 영

리행위, 식품시설장소

(b) 농업시설, 농업사업 또는 농업활동

(c) 물고기 양식과 관련된 시설장소, 사업 또는 영업

(d) 동물사료의 사용 또는 공급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소, 사업 또는 영업

(3) 이 조에서는,

“농업활동”은 the [1947 c. 48.] Agriculture Act 1947 or, in Northern Ireland, the [1949 c. 2(N.I.)] Agriculture Act (Northern Ireland) 1949의 그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농업사업(agricultural business)”은 the [1988 c. 16.] Farm Land and Rural Development Act 1988, Northern Ireland 제1조, the [S.I.1988/1302 (N.I. 12).] Farm Business (Northern Ireland) Order 1988 제3조와 동일한 의미이다.

“농업시설장소agricultural premises”는 농업사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물고기양식fish farming”은 물고기, 조개류양식, 양식, 보관, 유지를 의미한다.

#### 11 개인이 감시(관찰)을 위한 출입권

(1) 식품안전청은 제10조에 정해진 감시(관찰)을 수행하기 위해 (4)항에 정해진 권한을 수행하도록 개인에게(식품안전청의 직원여부를 불문) 허가할 수 있다.

(2) 이 조의 식품안전청을 위해 식품안전청의 구성원 또는 하위위원회 위원회 또는 식품기준청이 결정하기 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허가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조에 의한 허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된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위생예방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4)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허가로 정해진 감시를 수행할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a) 합리적인 시간에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b) 시설물에서 발견된 제품 또는 물질의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 (c) 시설물에서 발견되는 식품원료로부터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 (d) 시설물에서 발견되는 감시(관찰)의 대상인 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 (e)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요구라면 기록, 정보, 기타 조력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에서는 “시설”은 사적거주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 (5)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요구가 있는 경우,
  - (a) (4)항의 권한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의 권한(허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b) 샘플수거확인증 또는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6) (4)항 (d)호 그리고 (e)호에 규정은 관련사업에 고용되어 왔던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어떤 기록을 포함한다. 그리고 식품 또는 식품의 생산 또는 공급의 일에 적합함에 영향을 미치는 일, 기록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록을 포함한다.
- (7) 이 조를 위해 어떤 시설에 출입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거래상비밀에 관한 시설물에서 얻어진 정보를 어떤 사람에게 누설한다면(누설이 법적의 무수행이 아니라면), 위반에 책임이 있고 Level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약식판결을 받는다.
- (8) 고의적으로 (4)항 (a), (b), (c), (d)호의 권한 수행을 방해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4)항 (e)호에 부과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무모하게 물질의 특성을 그릇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 또는 물질의 특성을 알고있는 것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위반에 책임이 있고 Level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약식판결을 받는다.
- (9) 이 조에서 “권한이 부여된 사람”의 의미는 이 조에의해 권한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 집행행위(작용)의 감시

### 12 집행행위의 감시

- (1) 식품안전청은 관련법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청의 수행을 감시할 권한이 있다.
- (2) 그 직무는, 특히, 관련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수행)기준을 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 (3) 매년 식품안전청의 보고서는 (a)(b)에 관한 집행관청과 그의 수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집행이 있는 해당 년도 동안에 그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
- (4) 식품안전청은 다른 집행관청에게 법규관련 수행에 관하여 보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보고는 식품안전청이 그 집행을 개선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행동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 13 집행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권한

- (1) 어떤 집행관청에 관하여 제1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청은 (2)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a)-(b)항을 요구할 수 있다.
  - (a) 식품안전청은 어떤 사람이 식품안전청에게 어떤 정보(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믿는 합리적인이유를 간는)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b) 식품안전청은 어떤 사람이 조사(검사)에 대한 식품기준청이 기록을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a) (1)항에 의한 조건(요건)은 집행관청 또는 구성원, 공무원 또는 관청의 피용자에 부과할 수 있다. 또는
  - (b) (1)항에 의한 조건(요건)은 관련법규에 의한 의무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 또는 그 사람의 피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3) 식품안전청은 (1)(B)에 의한 요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 14 집행행위를 감시하는 사람의 출입권

- (1) 식품안전청은 개인이 집행관청과 관련한 제12조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4)항에 기재된 권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허가)을 줄 수 있다.
- (2) 이 조에 식품안전청 자신의 결정 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

식품안전청의 구성원의 결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권한(허가)도 발부되지 않는다.

- (3) 이 조의 권한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 또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다.(위생조건을 포함하여)
- (4)
- (a)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시설 또는 시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검사(조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시간에 (5)항에 언급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 (b)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러한 시설에서 발견되는 제품 또는 물질의 샘플을 수거할 수 있다.
  - (c)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러한 시설물에서 발견되는 서류나 기록을 조사할 수 있다.
  - (d)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러한 시설물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기록이나 정보 그리고 다른 도움을 요구할 수 있다.
- (5)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 출입이 되는 시설은 (a)(b)(c)이다.
- (a) 집행관청에 의해 점유된 시설이다.
  - (b) 관련법규의 집행에 관련된 일에서 실험실 또는 유사 시설 그리고 ;
  - (c) (사적 거주지가 아닌)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집행관청의 권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믿는데 합리적인 원인이 있는 기타시설
- (6) 출입권이 부여된 사람의 권한은 그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출입할 권한을 포함한다.
- (7)
- (a) 출입권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항의 권한을 실행하기 전에 (출입)허가(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그리고
  - (b) 출입권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4)항의 권한을 실행하기 전에 샘플수거확인서를 주어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어야 한다.
- (8) 이 조에 의한 시설에 출입하는 자가 타인에게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누설한다면(그 누설이 법적 의무수행이 아니라면), 유죄이고, 약식판결로 표준범



주(standard scale)에 있는 level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의 책임이 있다.

(9)

(a) (식품안전법 1990)의 규정 또는 (식품안전법에 의한) 명령규정 또는 명령과 관련된 집행관청이 장관(a Minister), National Assembly(웨일즈에서), 스코틀랜드의 장관 또는 식품안전청인 경우(식품안전법제6조(3)항 또는 (4)항에 의해) 또는

(b) 식품안전명령(1991) 북아일랜드의 규정 또는 (1991에 의한)명령 규칙에 관한 집행관청이 북아일랜드부(department) 또는 식품기본청인 경우(26조(1A)에 의해),

이 조는 (5)항(a)를 제외하고 그 관청에 적용한다

(10) 이 조에서 “권한 있는 자”는 이 조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 15 “집행관청”의 의미와 관련표현

(1) 제12조부터 제14조에 있는 “관련법규”는 (a),(b),(c)호를 의미한다.

(a) 식품안전법(1990)의 규정과 그 법에 의한 명령규정 또는 명령

(b) 북아일랜드1991명령 규정과 1991에 의한 명령규정 또는 명령, 그리고

(c) 동물사료와 관련되는 한, 농업법(Agriculture Act 1970)의 제4장 규정과 그 제4장에 의한 규정

(2) 그러한 조에서 “집행관청”은 (a),(b),(c)호를 의미한다.

(a) 식품안전법(1990)과 그에 의한 명령규정, 명령에 있어서는 관청은 그 관청(장관, national Assembly(웨일즈), 식품안전청)이다.

(b) 북아일랜드1991년명령 또는 그에 의한 명령, 규칙의 경우에 관청은 그 관청(Northern Ireland Department 또는 식품안전청)이다. 그리고

(c) 농업법(1970)의 제4장 규정(또는 그 법에 의한 규칙)의 경우에 농업법 제 67조에 언급된 관청이다.

그리고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집행”은 그 법규의 기타 규정의 실행을 포함한다.

## 16 제13조와 제14조 위반

## (1) 고의적으로

- (a) 제14조 (4)항 (a),(b),(c)호에 의한 권한을 수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 또는
- (b) 합리적 이유없이 제13조 (1)항 또는 제14조 (4)항 (d)호에 의해 부과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또는
- (c) 특별한 물질에 관해 그릇되거나 오해된 정보를 무모하게(recklessly) 제공하거나 특별한 물질에 있어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르거나 오해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offence의 죄로 처벌한다.

- (2) 이 조항의 offence의 죄를 범하여 약식기소명령을 받는 자는 Level 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 식품안전청의 기타 직무

## 17 긴급명령할 권한의 위임

- (1) 부처장관과 식품안전청 사이에 부처장관을 위하여 식품안전청으로 하여금 다음의 명령을 할 권한을 수여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a) 1985년의 식품과 환경보호법 제1조 (1)항 (긴급명령); 그리고
  - (b) 1990법(식품안전법) 제13조 (1)항 (긴급관리명령)
- (2) 그러한 협의로 주어진 권한은 협의로 정해진 제한 그리고 조건을 받는다
- (3) 그러한 협의로 식품안전청이 권한을 실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에 그 식품안전청이 행한 것 또는 행하여졌어야 하지만 빠뜨린 것은 부처장관이 행한 것 또는 빠뜨린 것으로 간주한다.
- (4) 협의에서 어떠한 것도 부처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 18 기타법규상 직무

- (1) Schedule 3(식품안전청법규에 의해 수여된 직무규정)은 효력이 있다
- (2) SCHEDULE 3에 의해 이루어진 수정안(스코틀랜드 Act 1998의 목적을 위해

사전 입법(법규)로서 간주되는)

19 식품안전청의 권고(조언)과 정보 등의 공표(발표)

- (1) 식품안전청은 이 조에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a)-(c)공표(발표)할 수 있다.
  - (a) 제6,7,9조에 의한 조언(권고)(6조(2)에 의한 조언포함)
  - (b) 제10조에 의한 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12조의 감시를 통해 얻은 정보
  - (c) 출처를 불문하고 입수하고 있는 기타 정보
- (2) 그 권한은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의 요건에 따라 실행한다.
- (3) 그 권한은 문제된 권고 또는 정보의 공표가 입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또는 공공의무(Community obligation)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또는 법정모독죄를 구성하거나 처벌될 수 있다면 실행될 수 없다.
- (4) 그 권한의 실행을 결정하기 전에, 식품기준청은 문제된 권고 또는 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공공관청(정부)의 이익이 기밀에 붙여져 있는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5) 권고 또는 정보가 관련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관청(또는 특별 집행관청)의 실행과 관련된 경우에 (4)항은 (a)(b)를 제외한 사람에게 관련된 권고 또는 정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a) 집행관청을(제외한)
  - (b) 구성원, 집행관청의 공무원 또는 피용자(를 제외한)
- (6) (5)항에 사용된 표현과 제15조의 정의된 표현은 같은 의미이다.
- (7) 위에 언급된 것의 예외로서, (1)항의 권한은 이 조 이외에 적용되는 출판에 관하여는 금지되지 않는다.
- (8)
- (9) 식품안전청은 다른 공적관청에 (1)항에 언급된 권고 또는 정보를 누설(드러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에 따라 누설과 관련하여 이 조의 다른 규정은 적용된다.

20 식품매개질환(식중독; food-borne diseases)관리에 대한 (행정)지도할 권리

- (1) 식품안전청은 식중독발병의심 또는 발병관리에 관한 일로 지방관청 또는 다른 공적관청에 일반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
- (2) 이 조에 의한 지도는 지도가 이루어질 관청을 확인하여야한다(identify하여야 한다)
- (3) 식품안전청은 적당한 방법으로 지도를 출판할 수 있다.
- (4) 지도를 받은 관청은 그 지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5) 이 조에서 “식중독”은 감염되거나 또는 기타 오염된 식품의 소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질병을 의미한다.
- (6) 이 조는 식품기준청의 기타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효력있다.

21 보충적권한

- (1) 식품안전청은 그의 직무를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할 권한이 있다.
- (2)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a)-(d)항 권한을 포함한다.
  - (a) 교육적 활동을 수행할(권한을 포함한다)
  - (b) 타인이 수행하는 활동을 경제적으로 또는 기타 지원을 줄(권한을 포함한다)
  - (c) 어떤 재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 처분할 (권한을 포함한다)
  - (d)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형사절차규정을 정할 (권한을 포함한다.)
- (3) 식품안전청은 어떤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용이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식품안전청과 관련된 일반규정

22 일반목표(목적)의 성명과 집행

- (1)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목표의 성명(언급)을 준비와 출판을 한다.

- (2) 그 성명은 식품안전청의 일반목표 중 다음((a)-(c))을 포함한다. 즉,
- (a) 식품안전청의 활동이 공적관청의 구성원의 자문에 따르거나 또는 구성원을 대표하도록 확실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목표로 한다)
  - (b) 식품안전 또는 식품소비자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다음 관청과 교류(links)를 촉진하는 것을 (을 포함하여 일반목표로 한다)
    - (i) 정부 각부처, 지방관청 그리고 기타 공적관청;
    - (ii) 네셔널 어셈블리(웨일즈) 그리고 에셈블리 세크러터리, 스코틀랜드 Administration 그리고 북아일랜드부;
- 식품안전청은 비공식적으로 때때로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문을 받도록하기 위하여
- (c) 식품안전청 결정의 기록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정보가 관청의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반목표로 한다)
- 그리고 기타 목표를 포함한다.(관련 연합 관청이 식품기준청에게 통지한)
- (3) (2)항에서 어떠한 것도 그 항에서 언급된 것과 관련된 특별한 성명(언급)을 포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4) 그 성명(언급)은 출판(공표)되기 전의 승인에 대한 관청에 초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 (5) 연합하여 활동하는 권한있는 관청은 변경 또는 변경없이 그 제출된 초안 성명(언급)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전에 식품안전청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6)
- (a) (5)항의 승인하자마자, 식품기본청은 그 성명을 복사하여 의회, National Assembly(웨일즈), 스코틀랜드 의회, 그리고 북아일랜드 의회에 놓는다.
  - (b) 연합하여 활동하는 권한있는 관청도 위와 같이 출반한다.
- (7) 이 조에 의한 최초의 성명(언급)은 식품안전청의 최초의 미팅시작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권한있는 관청에 제출된다.
- (8) 식품안전청 현재의 성명(언급)을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에서 (6)항은

개정된 성명에 적용된다.

### 23 목표(목적), 위험, 비용 그리고 이익의 고려 등

- (1) 직무수행에 있어서 식품안전청은 제22조의 실행과 목표의 성명에 관한 의무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어떤 권한을 실행할지 실행하지 안 할지 여부 또는 어떠한 권한으로 할지를 고려함에 있어 식품안전청은 (a)-(c)를 고려하여야 한다.
  - (a) 공중의 건강 또는 기타 위험에 어떤 위험성과 위험의 중대성
  - (b) 권한 실행의 비용과 이익 또는 권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품안전청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의 고려
  - (c)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에 의해 주어진 관련 권고 또는 정보(식품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 (3) (2)항에 의한 의무는
  - (a) (2)항에 의한 의무는 특별한 경우나 권한의 목적 또는 성질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비실현적)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 (b) (2)항에 의한 의무는 식품기본청의 다른 의무가 감경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4 의무위반과 관련된 명령 또는 국제적 의무(책임)관련된 명령

- (1) 식품안전청이 제23조(1),(2)항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실패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고 부처장관에게 보여지면, 또는 식품안전청에 의해 수행되었어야 하는 그 밖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실패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부처장관은 식품안전청에게 그 실패를 적절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 (a) 또한 (1)항의 권한은 웨일즈에서 실행가능하는 한 National Assembly(웨일즈)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 (b) 또한 (1)항의 권한은 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Scotland

Act 1998의 제63조에 의해 이루어진 위원회의 명령에 의하거나 위임된 권한내에서 실현 가능한한)

- (c)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실현될 수 있는 한 보건사회복지부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 (3) (1)항에 의한 명령은 그들에게 주는 이유의 요약하는(summarising) 성명(언급)을 포함한다.
- (4)
  - (a) EC공동체조약(Community Treaties)에서의 U.K.의 의무의 집행으로서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b) 부처장관은 식품기준청에 U.K가 일방당사자가 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의 이행으로서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5)
  - (a) (4)항의 권한은 National Assembly(웨일즈)에 의해 실행될 수 있다.
  - (b) (4)항의 권한은 Scottish Minister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 (c) (4)항은 보건사회복지부(북아일랜드)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다.
- (6) 이 조에 의한 명령을 하는 관청은 식품기준청과 기타 관청의 의견을 듣는다.
- (7) 식품안전청이 이 조의 어떤 명령에 위반한다면, 명령을 내린 관청은 법률(규칙)이 효력이 되도록 할 수 있다.(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식품안전청의 어떤 권한을 실행할 수 있다.)
- (8) 식품안전청이 (1)항의 명령에 위반한다면, 부처장관은, 다른 관청과 협의하여, 식품기준청의 모든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그리고, 새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는 다른 사람 또는 그렇게 할 사람을 임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처장관 자신이 식품안전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9) 이 조의 명령은 출판될 수 있다.
- (10) “위임된 권한”은 Scotland Act 1998의 의미와 같다.

## 25 정보 누설에 관한 법규를 변경할 권한

- (1) 법규가 정보누설을 금지한다고 국무장관에게 보여지고 그리고 (5)항에 언

급된 효과를 갖을 수 있다고 보여지면 부처장관은 금지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2) 스코틀랜드 (1)항과 같음(스코틀랜드 장관이 금지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3) (2)항의 권한은 스코틀랜드 의회의 입법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는 규정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 (4) -(8) 생략

#### 기타규정

#### 26 농림수산식품장관 그리고 북아일랜드농림부의 범규상 직무의 중단

- (1) 식품환경보호법(1985)의 제1장, 식품안전법(1990) 그리고 방사능물질법(1993)에 의한 농림수산식품장관의 직무는 그 장관에 의하여 집행이 중지된다.
- (2) 식품환경보호법(1985) 그리고 1991년 명령의 제2장(8(7), 10(5) to (7), 11(5) to (10), 18(1), 22 and 25(2)(e) and Schedule 1은 제외한다)에 의한 북아일랜드농림부의 직무는 그 부에 의하여 집행이 중지된다.
- (3) (1)항과 (2)항은 명령 또는 하위 규정상의 집행할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7 식중독 테스트(시험결과)의 통지

- (1) 규칙은 개인으로부터 수거한 샘플(살아있는지를 불문하고 규정으로 특정된 유기체 또는 그 유기체로 인해 생산된 물질)에 대한 시험(테스트)정보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2) 유기체의 항목지정은, 유기체 또는 유기체로 생산된 물질이 인간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규칙을 제정하는 식품관청에 보여지는 경우에만 그 규정으로 특정될 수 있다.
- (3)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식품기준청 또는 다른 공적 관청(공중의 건



강보호와 관련있는)의 직무수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집행된다.

(4) 그 규칙은, 각각 유기체의 특정된 기술(기재)와 관련으로서, 정보를 알리는 형식, 방법 그리고 유기체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도록 기술하여 알린다.

그 규칙은, 각각 유기체의 특정된 기술(기재)와 관련으로서, 그 정보가 통지되는 사람을 확인하는(identifying)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그 규칙은, 각각 유기체의 특정된 기술(기재)와 관련으로서, 그 정보가 통지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사람이 그가 갖고 있지 않는 정보 또는 그의 지위에 의해 그가 취득할 수 없는 정보를 통지(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5) 그 규칙은 (a)-(f)할 수 있다.

(a) 시험(테스트)정보가 알려지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다.

(b) (4)(c)에 의한 특정된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누설할 것을 요구 또는 허락할 수 있다.

(c) 어떤 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을 제한할 수 있다.

(d) 비밀이 유지되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다.

(e) 그 규칙의 예외규정을 만들 수 있다.

(f) 표준범주의 Level 5를 초과하는 구금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제한에 따른 위반에 대한 개요를 만든다.

(6)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규칙을 만드는 관청은 식품기준청의 규칙에 본질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체와 식품기준청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7) (6)항의 개시 전에 이루어진 어떤 자문은 그 것이 개시 후에, (6)항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면 효력이 있다.

(8) 이 조에 의해 규정된 권한은 (a)-(d)에서 운용될 수 있다.

(a) 부처장관에 의해 잉글랜드에서 수행된 시험(테스트)

(b) National Assembly에 의해 웨일즈에서 수행된 시험(테스트)

(c) Scottish Ministers에 의해 스코틀랜드에서 수행된 시험(테스트)

(d) 보건사회복지부에 의해 북아일랜드에서 수행된 시험(테스트)

## 28 food-borne zoonoses에 관한 정보교류에 대한 협의

- (1) food-borne zoonoses와 관련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 조가 적용되는 식품기준청과 각 관청은 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2) 이 조가 적용되는 관청은 Ministers of the Crown, the National Assembly (Wales), Scottish Ministers, Northern Ireland Departments이다
- (3) 이 조에 의한 협의는 식품기준청과 food-borne zoonoses와 관한 관련 관청과의 활동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
- (4) 이 조의 협의는 식품기준청과 그 관련관청에 의해 재심리 된다.
- (5) 이 조에서 “food-borne zoonosis”는 식품의 소비를 통해서 또는 식품과 접촉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만들어내는 동물이 옮기는 질병, 유기체를 의미한다.

## 29 가축치료제품에 관한 자문(협의)

- (1) 가축치료제품과 관련된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식품장관과 각국 무장관은 일반정책 그러한 물질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식품기준청의 의견을 때때로 들어야 한다.
- (2) 이 조에서 “가축치료제품”은 (a)-(d)을 의미한다.
  - (a) Medicines Act 1968의 제132(1)에 정의된 가축치료약품
  - (b) Council 명령81/851/EEC 의 제1조(2)에 정의된 것으로서 가축치료의약품
  - (c) Council 명령81/851/EEC의 제1조(2)에 정의된 것으로서 약물첨가사료
  - (d) 사료(동물사육개량술 제품)규정 1999의 제2조(1)에 정의된 것으로서 동물사육개량술 제품.
- (3) 관련 부처장관 또는 장관은 가축치료제품과 관련된 것과 관련하여 식품기준청에 어떤 정보를 누설할 수 있다. (어떤 집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얻어진 정보를 포함하여)
- (4) 이 조는 보건사회복지부(북아일랜드)에 적용한다. 그리고 농업수산식품장관에 적용되는 것처럼 농림부(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 30 동물사료:Great Britain(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

- (1) 동물사료규정을 위해 또는 동물사료의 제품에 있어서 장관은 이조에 의해 명령을 한다.
- (2) 이 조에 의한 명령은 개정 또는 개정함이 없이 1990 법 규정(명령 또는 하위법규를 제정할 권한을 포함하여)에 대응하는 것이다.
- (3) 생략
- (4) 이 조에 의한 그러한 명령은 동물건강보호, 인간건강보호 또는 장관이 판단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기타 목적을 위해 규정을 만들 수 있다.
- (5) 제37조(1)(a)에 의해 이 조에 의한 명령에서 만들어 질 수 있는 규정은 수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규정 또는 하위법규를 포함한다.
- (6) 그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장관은 명령으로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기관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그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장관은 식품안전청이 제공한 자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 (7) (6)항 개시 전에 받아들여진(보증된, 인정된) 자문은 그 개시후에 받아들여진 것처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식품안전청에 의해 받아들여진(보증된) 자문은 장관에 의해 처리될 수 있다.
- (8)
  - (a)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확장된 명령의 경우에, 연합하여 활동하는 국무장관 그리고 농업수산식품장관; 스코틀랜드에 확장된 명령의 경우에, 스코틀랜드 장관을 의미한다.
  - (b) 이조에서 “장관”은 (a)(b)호를 의미한다.

## 31 동물사료: 북아일랜드

- (1) 공동으로 활동하는 북아일랜드 농업장관과 북아일랜드 보건사회복지부는 1991년 명령에 의해 명령에 의한 규정을 만들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1990 법에 의해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의 명령으로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제30조에 의해 갖는 장관의 권한처럼)
- (2) 제30조 (6)항과(7)항은 이 조에 의한 명령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6)(7)항이

그 조에 의한 명령에 적용되는 것처럼)

### 32 이 법의 특정규정의 개정

#### 33 식품안전청의 특정직무의 상실의 결과

(1) 이 조는 (a)-(b)이면 적용한다.

(a) 스코틀랜드 의회가 식품기준청의 직무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한다면)

(b) 북아일랜드 의회가 식품기준청의 직무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을 통과(한다면)

(2) 여왕은 명령으로 (a)-(d)규정을 만들 수 있다.

(a) 식품안전청에 의해 더 이상 실행될 수 없는 관련 직무의 중요성이 있다고 여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법 또는 기타 법을 변경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다.)(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

(b) 재산의 이동을 위해, (3)항에 해당하는 식품안전청의 권리와 이익

(c)

(d) (4)항 범위내에서 식품안전청의 책임의 이전

(3)

(4)

(5) 이 조의 명령은 (2)(b)(c)(d)의 규정의 목적을 위해 결정되는 것을 결정할 권한위임규정을 만들 수 있다.

(6) 식품안전청이 자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권고도 여왕에게 이조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할 수 없다.

#### 34 식품안전촉진(증진)위원회의 직무를 고려할 의무

(1) (a) 식품안전청은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식품안전촉진(증진)위원회의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식품안전청은 식품안전청의 활동이 그 위원회의 활동과 불필요하게 중

복되지 않는다면 때때로 식품안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 (2) 이 법에 어떠한 것도 식품안전촉진(증진)위원회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5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위임(이전)

- (1) (a) 스코틀랜드 법1998의 제23(2)(b)의 목적을 위하여 ; 그리고 그 법 제 70(6)을 위하여  
 (b) 그 식품기준청은 국경을 넘어 공적 관청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 36 해석

- (1) 이 법에서

“청”은 식품안전청을 의미한다.

“동물사료”는 동물을 위한 사료를 의미한다. 입을 통해 투여되지 않는 영양보충 또는 기타 유사한 물질을 포함한다.

“적절한 관청”은 부처장관, National Assembly(웨일즈), 스코틀랜드 장관과 보건사회복지부(북아일랜드)을 의미한다.

“식품안전촉진(증대)위원회”는 1999년 3월 8일 Dublin에서 U.K와 아일랜드 정부사이에 이루어진 이행 bodies를 설립하는 합의에 의해 설립된 이름의 body를 의미한다.

“1990 Act”는 식품안전법 1990을 의미한다.

“1991 명령”은 식품안전명령1991(북아일랜드)을 의미한다.

### 37 하위법규

- (1) 제25,27,30,31,32,33조에 의한 하위 법규는 보충규정, 임시규정, 경과규정, consequential 규정, 유보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2) 최초의 장관 그리고 최초의 부장관(차관) 또는 북아일랜드부에 의해 만들어진, 그리고 Statutory Rules Order 1979(북아일랜드)를 위한 statutory rule에 의해 만들어진 명령 또는 규칙의 경우에 명령 또는 규칙을 만들기 위한 이

법상의 권한은 실행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에 실행될 수 있다.

(3) 명령의 초안이 (a)(b)의 의결로 승인되기 전이라면 제25,30,31조에 의한 어떠한 명령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a) 부처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장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각 의회(의 의결로 승인되기 전에는)

(b) 스코틀랜드 장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결로 승인되기 전이라면)

(c) 최초의 장관과 부장관(차관) 또는 북아일랜드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북아일랜드의회(의 의결로 승인되기 전이라면)

(4) 제27조 또는 42조에 의한 법에 의한 행정명령(statutory instrument)은 국무장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회의 의결에 따라, 스코틀랜드장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스코틀랜드 의회의 의결에 따라 폐기된다.

38 Crown application

39 재정규정

### 부록 3

---

## 독일의 식품, 생활필수품 및 사료법(LFGB)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1)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사료·화장품·생필품 사용에서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2. 식품·사료·화장품·생필품 유통에서의 사기를 방지한다.
  3. 경제관계자(Wirtschaftsbeteiligte)에 대한 계도(Unterrichtung), 식품·화장품·생필품 유통에서의 소비자에 대한 계도, 사료 유통에서의 사용자에게 대한 계도를 보장한다.
  4. 사료의 경우, 동물건강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이미 사료에 존재하던, 동물의 배설물에 존재하는 원치 않은 물질(unerwünschte Stoffe)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자연계를 보호하는 한편, 사료를 통해 동물의 번식을 장려함으로써 유용동물의 생산력을 보존·개선하고, 유용동물을 통해 얻은 식품 및 기타 제품이 그에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충족하며 인간의 건강에 위협하지 않도록 한다.
- (2) 이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법률행위(Rechtsakt)의 변경·실행에도 기여한다.

제2조 [개념정의] (1) 제품(Erzeugnisse)은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사료·화장품·생필품이다.

(2) 식품(Lebensmittel)은 Artikel 2 der Verordnung (EG) Nr. 178/2002에서 규정한 식품이다.

(3) 식품첨가물(Lebensmittel-Zusatzstoffe)은 보통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고 식품의 특징적인 첨가물로 사용되지도 않는, 영양가가 있거나 없는 물질로서 기술상의 이유로 생산이나 취급과정에서 첨가되며 이를 통해 그 자체 또는 그 분해물(Abbauprodukt)이나 반응물(Reaktionsprodukt)이 직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물질이다.

다음의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본다.

1. 통상 그 자체로는 식품으로 소비되지 않고 식품의 특징적인 첨가물로 사용되지도 않는, 영양가가 있거나 없는 물질로서 기술상의 이유 이외의 이유로 식품의 생산이나 취급과정에서 첨가되며 이를 통해 그 자체 또는 그 분해물이나 반응물이 직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될 수 있는 물질. 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물질 및 이와 화학적으로 동일한 물질, 유통계의 일반적 견해상 주로 그 영양가, 향기, 맛 때문에 사용되거나 기호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
2. 무기물(Mineralstoffe), 미량요소(Spurenelemente) 및 그 결합물. 다만 식염(Kochsalz)은 제외.
3. 아미노산 및 그 파생물.
4. 비타민 A, D 및 그 파생물.

다음은 식품첨가물로 보지 않는다.

1. 그 자체로는 식품첨가물로 소비되지 않지만 기술상의 이유로 식품의 처리(Bearbeitung), 가공(Verarbeitung)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질,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 특정된 식품 안에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잔류물 또는 이의 분해물이나 반응물을 건강에 위협하지 않을 정도로 남길 수 있는 물질로서, 기술적으로 해당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 (가공 촉진제(Verarbeitungshilfsstoffe)).



2. 식품에 사용되는 특정 아로마 물질. 이때 유럽연합규정이 정한 인공 아로마 물질은 제외
3. 식물보호법이 정한 농약
  - (4) 사료(Futtermittel)는 Artikel 3 Nr. 4 der Verordnung (EG) Nr. 178/2002에서 규정한 사료이다.
  - (5) 화장품(Kosmetische Mittel): 오직 혹은 주로 세정, 보호, 적절한 상태의 유지, 향취, 외모변화, 체취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람의 신체 표면이나 구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조제물이다.
  - (6) 생필품(Bedarfsgegenstände)은 다음을 말한다.
    1. Artikel 1 Abs. 2 der Verordnung (EG) Nr. 1935/200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Oktober 2004 über Materialien und Gegenstände, die dazu bestimmt sind, mit Lebensmitteln in Berührung zu kommen und zur Aufhebung der Richtlinien 80/590/EWG und 89/109/EWG에서 규정한 물질과 물건.
    2. 화장품을 취급하기 위한 봉지, 용기 혹은 기타 포장.
    3. 구강의 점막과 접촉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
    4. 신체위생을 위한 물건
    5. 아이용 장난감(Spielwaren), 어른용 장난감(Scherzartikel)
    6. 의류, 침구류, 마스크, 가발, 모발에 붙이는 가발, 인공 속눈썹, 팔찌 등 일정시간 사람의 신체와 접촉하는 물건
    7.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이 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생필품에 사용되는 세제 및 위생품
    8. 가정에서 사용되는, 이 조 제6호에서 규정한 생필품에 관한 방수제 및 기타 설비
    9.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의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한 수단과 물건  
 의약품법 제1조 제1항에서 의약품으로 규정한 물건과 의료기구법 제3조b에서 규정한 의료기구 부속물 및 화학제품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살충제는 이 조의 생필품이 아님.

제3조 [기타 개념정의] 이 법에서 기타 개념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Inverkehrbringen): Artikel 3 Nr. 8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한 유통; 화장품·생필품,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생산물에 관하여는 Artikel 3 Nr. 8 der Verordnung Nr. 178/2002의 규정이 적용.
2. 생산(Herstellen):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살아 있는 동물의 고기의 획득(도살·사냥 포함), 생산, 조제, 가공, 처리 및 혼합.
3. 가공(Behandeln): 썰기, 측정, 채우기, 따르기, 낙인, 인쇄, 포장, 냉각, 냉장, 냉동, 보관, 보존, 운송 및 기타 생산이나 유통으로 평가되지 않는 모든 행위.
4. 소비자(Verbraucherin oder Verbraucher): Artikel 3 Nr. 18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하는 최종소비자 및 기타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개인적으로 또는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자. 자영업자(Gewerbetreibende)는 그가 화장품이나 생필품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봄.
5. 소비(Verzehren): 먹고, 씹고, 마시는 등 기타 모든 복용행위를 통한 식품의 섭취.
6. 식품기업(Lebensmittelunternehmen): Artikel 3 Nr. 2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하는 식품기업.
7. 식품기업가(Lebensmittelunternehmerin oder Lebensmittelunternehmer): Artikel 3 Nr. 2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하는 식품기업가.
8.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mit Lebensmitteln verwechselbare Produkte): 실제 식품은 아니지만 그 형태, 냄새, 색상, 외양, 포장, 특성, 부피, 크기로 인해 소비자, 특히 아동이 식품으로 혼동하여 입으로 가져가거나 빨거나 삼킬 경우 특히 질식, 중독, 외상, 소화관 폐색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허거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은 여기에서 제외.
9. 사료기업(Futtermittelunternehmen): Artikel 3 Nr. 5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하는 사료기업.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도 이에 포함.

10. 사료기업가(Futtermittelunternehmerin oder Futtermittelunternehmer):  
Artikel 1 Nr. 6 der Verordnung Nr. 178/2002에서 규정하는 사료기업가.  
또한 식품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가도 이에 포함.
11. 개별사료(Einzelfuttermittel): 사료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개별물질로서, 변경을 가하지 않거나 조제하거나 가공된 상태로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질. 주로 동물 사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제외. 사전혼합(Vormischung)에 적합한 물질(Trägerstoff)로서 사용되는 개별물질은 개별사료와 동일한 것으로 봄.
12. 혼합사료(Mischfuttermittel): 사료첨가물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혼합상태의 물질로서, 변경을 가하지 않거나 조제하거나 가공된 상태로 동물에게 제공되는 물질. 주로 동물 사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여기에서 제외
13. 기능성 사료(Diätfuttermittel): 특히 소화불량, 흡수불량, 신진대사불량이 있거나 이의 우려가 있는 동물의 특별한 영양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혼합사료.
14. 사료첨가물(Futtermittel-Zusatzstoffe): Artikel 2 Abs. 2 Buchstabe a der Verordnung (EG) Nr. 1831/200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 September 2003 über Zusatzstoffe zur Verwendung in der Tiernahrung에서 규정하는 사료첨가물.
15. 사전혼합(Vormischung): Artikel 2 Abs. 2 Buchstabe e der Verordnung (EG) Nr. 1831/2003에서 규정하는 사전혼합.
16. 원치 않은 물질(unerwünschte Stoffe): 사료에 함유된 - 동물전염병원체 이외의 - 물질로서 a) 유용동물로부터 얻은 식품 혹은 기타 제품에 있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할 수 있는 잔류물, b) 동물의 건강에 위협할 수 있는 물질, c) 동물로부터 분리되어 자연계에 위협할 수 있는 물질 또는 d) 유용동물의 번식에, 그리고 유용동물로부터 얻은 식품 또는 기타 제품의 잔류물로서 해당 식품이나 제품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 물질

17. 중간잔류물(Mittelrückstände): 식물보호법(Pflanzenschutzgesetz)에서 규정하는 농약 및 방부제(Vorratsschutzmitteln) 또는 살충제에 남아 있는 잔류물로서, 유럽연합 법률행위에서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사료에 존재하는 물질
18. 자연계(Naturhaushalt): 토양, 물, 공기, 기후, 동물, 식물의 구성부분 및 이의 상호작용구조
19. 유용동물(Nutztiere): 보통 식품 또는 기타 제품의 획득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과 말
20. 작용한계치(Aktionsgrenzwert): 그 함량이 초과되는 경우 그의 감소나 제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그 물질의 존재원인을 조사해야 하는, 원치 않은 물질의 한계치

제4조 [규정의 적용범위] (1) 이 법률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률에서 식품에 관한 것은, 이 법이 그렇게 규정하는 한, 고기가 식품으로 사용되는 살아 있는 동물에도 적용된다.
2. 이 법률에서 식품첨가물에 관한 것은 제2조 제3항 제2문에 의하여 식품첨가물과 동일시되는 물질에도 적용된다.
3. 이 법률에서 화장품에 관한 것은 문신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한 약제, 외모에 영향을 주기 위해 피부에 사용되어 피부에 일시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잔류하는 물질의 조제물에도 적용된다.
4. 이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는 와인법(Weingesetz)에서 규정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와인법 제1조 제2항에서 열거한 제품에는 적용되며, 와인법 또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가 이 법률의 규정을 지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이 법률에 따른 법규에서

1. 식당, 단체급식설비 및 제2조 제2, 5, 6항에서 열거한 제품을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소비자로 볼 수 있다.

2. 제2, 3조에서의 개념규정 및 이와 다른 개념규정들 이외의 개념규정은 이 법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한 기타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Das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이하 “식품부”)는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상원(Bundesrat)가 동의한 법규에 따라 경제기술부와 협력하여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1. 용법에 따른 혹은 예견될 수 있는 사용시에 그 물질적 구성에 의하여, 특히 독물학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나 오염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해 건강을 침해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가정에 필요한 기타 물건과 제품을 생필품으로 볼 수 있다.
2. 특정 물질이나 물질의 집합을, 그것이 특정한 사용목적에 위해서만 경우에도, 식품첨가물로 볼 수 있다.

## 제2장 식품의 유통

제5조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식품을 건강에 해로운 종류의 것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품은 아니지만 소비할 경우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식품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제조·취급·유통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6조 [식품첨가물에 관한 금지] (1)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유통하기 위한 식품의 영업상 제조 또는 취급 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행위,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발생시키는 이온교환(Ionenaustauscher)을 사용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발생시키는 과정을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의 금지에 위반하여 제조·취급하거나 또는 제7조 제1항, 제2항 제1, 5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에 저촉되는 식품을 영업상 유통시키는 행위
3. 식품의 영업상 제조 또는 취급 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이온교환을 그 자체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제조 또는 취급 시에 사용하기 위해 영업상 유통시키는 행위

- (2) 제1항 제1호 a는 효소와 미생물배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 제1호 c는 일반적·통상적으로 주방에서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식품첨가물에 관한 권한부여] (1) 식품부는 경제기술부, 환경·자연보호·방사능안전부(이하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술적·영양생리학적 또는 식이요법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이 법의 목적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식품첨가물을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식품에 대해 또는 특정 사용목적에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제6조 제1항의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 식품부는 그 밖에 경제기술부, 환경부와 협의 하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식품첨가물 또는 그것을 식품으로 변형한 제품의 최대량, 식품첨가물과 이온교환의 위생기준, 식품에서의 식품첨가물의 최소치를 확정할 수 있고, 이온교환의 제조, 취급 또는 유통에 관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제6조 제2항 제1문의 규정에서 특정한 효소나 미생물배양을 제외할 수 있고, 식품의 제조시 사용되는 특정한 이온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방사선 금지와 허용권한] (1) 식품에 영업상 허용되지 않은 자외선이나 이온화한 광선을 포함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행위, 사용이 금지된 방사선을 투과한 식품을 영업상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식품부는 교육연구부(이하 “교육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방사선을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식품에 대해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방사선에 관한 특정한 기술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식물보호제 및 기타 약제] (1) 식품의 저장·보호, 해충박멸을 위해 사용

하는 농약, 비료, 살충제를 최대허용치 이상 포함한 식품, 허용되지 않았거나 식품 또는 그 원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을 포함한 식품(이 규정은 제1호에서 그 최대치를 규정한 약제에는 적용되지 않음)의 영업상 유통은 금지된다.

(2) 식품부는 교육부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에서 다음을 할 수 있다.

- a) 영업상 유통시 식품에 초과해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농약, 기타 제품 또는 그 변형물, 반응물의 최대치 규정.
- b) 그 자체 혹은 그 원료에 특정물질이 농약 또는 기타 약제로서 사용되는 식품의 유통 금지.
- c) 공간이나 설비의 소독, 살균을 위한 수단이 식품의 제조, 취급, 유통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허가나 신고에 따르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수단에서의 특정 수단, 설비, 과정의 사용을 규정, 금지 또는 제한.

제10조 [약효가 있는 물질] (1)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에 약효가 있는 물질이나 그 변형물이 존재할 경우 그 유통은 금지된다(Verordnungen (EWG) Nr. 2377/90 des Rates vom Juni 1990 참조).

(2) 식용으로 쓰이는 살아 있는 동물에 약효가 있는 물질이나 그 변형물이 존재할 경우 그 동물의 유통은 금지된다.

(3) 의약품으로 허용 또는 등록되었거나 사료첨가제로 허용된 약효가 있는 물질이 살아 있는 동물에게 공급된 후 규정된 유효기간이 준수되었다면 그 동물로부터 영업상 식품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유통할 수 있다.

(4) 식품부는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 a) 약효가 있는 물질이나 그 변형물을 함유한 물질의 영업상 유통시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할 수 있다.
- b) 약효가 있는 특정물질, 사료첨가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동물에 대해서 제한 없이 또는 특정한 사용목적 하에 또는 특정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이에 위반하여 획득한

식품이나 사용이 금지된 물질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 c) 개별사료나 혼합사료 또는 사료첨가물로서 유통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물질 또는 물질의 집합체를 약효가 있는 물질로 볼 수 있다.

제11조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규정] (1) 식품을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영업상 유통시키거나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착오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에 대해 사기에 적합한 표시, 정보, 포장, 설명 또는 기타 성질, 특히 종류, 특성, 구성, 질량, 보존성, 원산지, 성분이나 제조과정, 획득과정에 대한 진술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에 그 성질상 과학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3. 다른 모든 유사한 식품이 지니는 속성을 마치 당해 식품만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
4. 식품이 의약품의 외관을 띠게 하는 경우.

(2)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유통하는 행위, 충분한 표시 없이 위조식품, 그 속성이 유통계의 인식에 적합하지 않고 그에 의해 그 가치, 특히 그 영양가나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식품 또는 실제 속성보다 좋은 외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식품을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12조 [질병 관련 광고의 금지] (1) 식품의 유통이나 광고시 일반적 또는 개별적으로 다음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질병의 완치, 완화 또는 예방과 관련된 진술
2. 의약적 권고나 감정에 대한 지적
3. 병력 또는 병력에 대한 지적
4. 제3자의 감사, 승인 또는 추천의 글 등 진술이 질병의 완치나 감소와 관계 있는 경우.
5. 의료종사자, 의료회사 또는 의약품 관련 업무를 하는 자의 의복을 입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교육적 설명



6.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용하는 데 적합한 진술
7. 식품 관련 질병을 다루는 인상을 주는 문서나 문서상의 표현

제13조 [건강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권한] (1)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과 경제기술부와의 협력 하에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을 할 수 있다.

1. 식품의 제조와 취급시 특정 물질, 물건 또는 과정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특정한 절차의 사용을 규정할 수 있다
2. 특정한 식품의 제조, 취급, 유통 요건을 정할 수 있다.
3. 특정한 식품과 식용동물의 제조, 취급, 유통을 공적 조사에 의존하게 할 수 있다.
4. 획득한 이후의 특정 식품을 공적 조사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다.
5. 식품기업이 건강에 유해한 특정 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6. 특정 식품의 경우 경고표시, 기타 경고의 내용을 담은 포장이나 안전대책을 규정할 수 있다.

(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에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취급된 식품은 영업상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

(3)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 하에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에 함유된 허용된 첨가물의 양과 허용된 취급방법이나 방사선의 사용에 관하여 알릴 의무와 그 방법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제9, 10조에서 규정한 식품에 존재하는 물질을 알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기술부와 협력해야 한다.

(4)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과 경제기술부와의 협 하에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 다음을 규정할 수 있다.
  - a) 식품이 그에 대한 생산, 구성 또는 특성에 대한 특정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특정한 표시 하에 유통할 수 있다.

- b) 식품이 생산, 구성 또는 특성에 대한 특정 요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충분한 공표나 특정 표시, 포장을 하는 조건 하에 유통시킬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개별규정을 정할 수 있다.
  - c)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표시, 정보나 포장을 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게 하고 그 식품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는 특정한 설명이나 기타 진술로 광고할 수 없도록 한다.
  - d) 특정한 절차가 적용되는 식품을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유통될 수 있게 한다.
  - e) 그 속성의 표시를 간소화하기 위해 식품에 대해 특정한 지표를 부가할 수 있다.
  - f) 식품을 특정한 단위로만 유통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 g) 특정 식품에 대해 특정 표시, 특히 물질의 사용과 기타 제품의 가공에 대한 표시를 첨부할 수 있다.
2. 식품의 생산이나 취급 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나 물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그 식품이 소비자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 (5) 환경부는 의회의 승인 하에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기,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의 영향 하에 놓인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경제기술부와 협력해야 한다.

제14조 [기타 권한부여] (1)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규를 통해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의 유통을 사용가능증명서 등 이와 유사한 증서 기타 문서에 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증서나 문서의 내용, 형식과 교부를 규율할 수 있다.
2.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의 생산, 취급, 유통 또는 취득을 표시, 공적 표시 또는 공적 승인에, 그리고 자연광천수의 유통을 공적 승인에 의존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시, 공적 표시 또는 공적 승인의 내용, 종류, 방법과 절차

를 규율할 수 있다.

3. 동물로부터 얻은 식품을 전염성 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수단, 특히 예방과 무해한 제거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
4. 낙농기업이 어떠한 조건 하에서 특정 표시를 사용해야 하는지 규정할 수 있다.
5.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가, 협정을 맺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식품을 특정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식품부는 또한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규를 통해 이 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1. 이 법과 전염병예방법(Infektschutzgesetz)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식품을 그 생산부터 소비 시까지 결함 없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식품에 유해한 영향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식용동물, 식품기업, 식품기업종사자가 어떤 건강위생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2. 동물전염병법(Tierseuchengesetz)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식용동물을 사육하는 공간, 시설, 설비의 소독, 방역, 기타 위생요구기준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그 증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식품이 생산, 취급 또는 유통되는 공간, 시설, 설비 또는 유통수단의 위생기준의 유지를 위해 소독, 방역, 기타 조치의 시행 및 그 증명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4. 제2, 3호에 의한 증명의 종류, 형식, 내용 및 그 보존기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5. 제1호에 의한 위생요구의 준수 여부의 감독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3)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규를 통해 경제기술부와 협력하여 이유식(Säuglingsanfang- nahrung und Folgenahrung)의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독일 식품도서] (1) 독일 식품도서는 식품의 유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식품의 생산·성질 또는 기타 특성에 관한 기본원칙(Leitsätze)들을 취합해 놓은 것이다.

(2) 기본원칙은 독일 식품도서 위원회(Deutsche Lebensmittelbuch-Kommission)가 정부에 의해 승인된 국제 식품기준(Lebensmittelstandard)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본원칙은 식품부가 법무부, 경제기술부와 협력하여 공고한다. 기본원칙의 공고는 법률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서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16조 [독일 식품도서 위원회] (1) 독일 식품도서 위원회는 식품부에서 구성한다.

(2) 식품부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학문, 식품감시, 소비자(Verbraucherschaft), 식품경영 분야에서 각 동수의 위원을 초빙한다. 식품부는 위원회의 의장과 그 대리인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무규정(Geschäftsordnung)을 제정한다.

(3) 위원회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정은 효력이 없다. 자세한 것은 직무규정이 규율한다.

### 제3장 사료의 유통

제17조 [금지] (1) 동물에게 용법과 사태에 맞게 먹이는 경우, 식용동물로부터 획득한 식품을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거나 인간의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사료의 생산 또는 취급은 금지된다.

(2) 다음의 행위도 금지된다.

1. 사료를 용법과 사태에 맞게 사용할 경우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상태로 생산 또는 취급하는 행위, 유용동물로부터 얻은 식품 또는 기타 제품의 품질을 해치거나, 이미 사료에 존재하던, 동물의 배설물 속에 존재하는 원치 않는 물질을 통해 자연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로 생산 또는

취급하는 행위.

2. 용법과 사태에 맞게 사용할 경우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유용동물로부터 얻은 식품 기타 제품의 품질을 해치거나 이미 사료에 존재하던, 동물의 배설물 속에 존재하는 원치 않은 물질을 통해 자연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사료를 유통하는 행위.
3. 용법과 사태에 맞게 사용할 경우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동물의 건강을 해치거나, 유용동물로부터 얻은 식품 기타 제품의 품질을 해치거나 이미 사료 안에 존재하던, 동물의 배설물 속에 존재하는 원치 않은 물질을 통해 자연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는 행위.

제18조 [사료제공금지과 권한부여] (1) 육상 온혈동물의 조직에서 얻은 지방, 생선 및 이들 사료를 포함한 혼합사료를 말,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동물을 제외한 기타 유용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금지는 우유와 유제품,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에게 먹이는 생선의 조직에서 얻은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Speise- und Küchenabfällen)의 사료제공에 관한 규정의 그대로 유지된다.

(2) 국내유통과 수출에 관한 동물전염병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료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의 조약체결국이나 기타 제3국으로 수출해서는 안 된다.

(3) 식품부는 이 법 제1·2조에서 열거한 사료 또는 동물의 금지를 확대하거나 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19조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금지] (1) 착오를 유발하는 표시를 한 사료를 유통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설명으로 사료를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착오유발은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력을 사료에 부여하거나, 사료에 의약품의 외관을 부여하거나, 다른 유사한 사료들도 지니고 있는 특징을 그 사료만 특별히 지니고 있다고 하거나, 특징(종류, 속성, 구성, 양, 보존성, 원료, 출처, 생산 또는 획득의 방법)에 관하여 사기에 적합한 표시

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2) 위조사료, 그 속성이 유통계의 인식에 적합하지 않고 그에 의해 그 가치, 특히 그 영양가나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료, 실제 속성보다 좋은 외관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사료를 충분한 표시 없이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20조 [질병 관련 광고의 금지] 사료(기능성 사료 제외)의 유통·광고시 일반적·개별적으로 질병의 완치·완화와 관련된 진술, 결합 있는 영양섭취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진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기타 금지 및 제한] (1) 기능성 사료는 이 법에 근거한 법규가 정한 목적으로만 유통되어야 한다.

(2) 동물사육을 위한 특정 제품에 관한 유럽연합의 기본방침이 정한 종류의 사료는 이 법에 근거한 법규에 의해 허용된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다.

(3) 법률행위와 이 법 제23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사료첨가물을 함유한 사료 및 그 혼합물을 유통하거나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금지되며, 식품부는 일정한 경우 금지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22조 [건강 보호를 위한 권한부여] 식품부는 사료의 생산·취급시 특정한 물질이나 절차의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23조 [기타 권한부여] 식품부는 다음의 권한도 지닌다.

1. 원치 않은 물질·중간잔류물의 최대치 확정.
2. 원치 않은 물질의 작용한계치 확정.
3. 개별사료·혼합사료에서의 사료첨가물의 내용·최대치 확정.
4. 기능성 사료의 사용목적 확정.
5. 특정 사료를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허용.
6. 사료첨가물이 다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한 다른 사

료에 대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

7. 동물의 특정한, 널리 퍼진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허용.
8. 개별사료나 혼합사료로서 특정한 물질의 유통, 동물에의 제공 금지.
9. 특정 사료·물질의 생산, 동물에의 제공, 유통, 사용의 금지·제한·허용.
10. 식용 동물에게 제공되는 특정 개별사료·혼합사료의 유통기간 확정.
11. 사료첨가물·개별사료·혼합사료에 요구되는 조건의 확정.
12. 사료의 생산·취급시 특정 물질·물건·절차의 사용 금지·제한.
13. 사료의 물질보증을 위한 위생조건 확정.
14. 사료 생산·취급을 위한 시설·설비에 요구되는 조건의 확정.
15. 사료 운송시 요구되는 위생·방역상의 조건 규정.
16.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의 사용 금지·제한.

제24조 [청결과 위생에 관한 상관습의 보증] 양도인이 사료 양도시 그 속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상관습상의 청결과 위생에 관한 보증의무(Gewähr für die handelübliche Reinheit und Unverdorbenheit)를 지닌다.

제25조 [특정 관청과의 협력] 식품부는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에 근거한 사료의 사용, 사료의 사용목적 확정, 조사 및 검증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위험평가기구(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제4장 화장품의 유통

제26조 [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화장품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했을 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생산·취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7조 [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은 금지된다(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예를 열거).

제28조 [건강 보호를 위한 권한 부여] 식품부는 특정 화장품의 미생물 상태 등 요건을 정하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나아가 화장품에 의해 건강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29조 [기타 권한 부여] 식품부는 화장품의 생산자나 수입업자로 하여금 화장품의 생산·유통·구성·건강침해 가능 성분을 보고하고 화장품 유통 관할 관청의 감시에 협조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제기술부와 협력하여 화장품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제5장 기타 생필품의 유통

제30조 [건강보호를 위한 금지] 생필품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했을 경우 그 물질구성, 특히 독물학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나 오염에 의해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산·취급·유통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물질의 식품으로의 이전] 유럽연합규칙이 정한 생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질이나 물건을 생필품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금지되며, 식품부는 통상적 또는 예견가능한 사용시에 인간의 건강을 침해하거나 식품의 구성·냄새·맛·외양을 침해하는 물질을 전혀 남기지 않는 물질이나 물건으로만 생필품을 생산할 것을, 그리고 특정 물질이 식품에 어느 정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 [건강 보호를 위한 권한부여] 식품부는 특정 생필품의 생산·취급시 특



정한 물질·과정의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 특정 생필품의 생산시 특정물질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생필품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최대량, 특정 생필품의 생산시 사용되는 특정 물질의 위생기준을 정할 수 있고, 미생물 관련 요건을 충족한 생필품의 유통만을 허용할 수 있으며, 특정 생필품에 관하여 경고표시나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33조 [사기방지를 위한 규정] 제2조 제6항 제1문 제1호에서 열거한 물질이나 물건에 착오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물건이나 물질을 유통해서도 안 된다.

## 제6장 모든 제품에 관한 일반규정

제34조 [건강보호를 위한 권한부여] 식품부는 특정 제품의 생산·취급·사용·유통을 금지·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허용·등록·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특정한 전문지식을 증명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제35조 [사기방지 및 계도를 위한 권한부여] 식품부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제품의 유통·취급시 제품 관련 표시의 내용·종류·방법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고, 특정 제품에 관하여 생산·취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6조 [기업 자체의 통제 및 조치를 위한 권한부여] 식품부는 특정 제품을 생산·취급·유통하는 기업에 기업 스스로 통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의 증명 및 검사·통지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기업과 기업의 위임을 받은 연구실로 하여금 일정한 연구자료를 보존하고 이를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 관청에 제출할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때 통지나 제출에 관한 형법상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7조 [기타 권한부여] 식품부는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일정 제품을 생산·취급·유통하는 기업을 승인·허가·등록하고 이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일정 제품의 생산·취급·유통과 관련하여 설비기준, 위생기준, 기업주의 자격요건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7장 감시

제38조 [관할, 부서 상호간의 정보공유] 감시조치에 관한 관할은 주법(Landesrecht)에 따라 정한다. 국방부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국방 관할부서와 국방전문가가 이 법의 시행 책임을 지며, 식품부와 국방부는 서로 협하여 국방상·건강보호상 필요할 경우 이 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에 관련한 관청과 부서는 정보를 서로 통보하고 유럽연합 회원국 해당관청의 식품·사료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제39조 [관할 관청들의 임무와 조치] 관할 관청들은 이 법 및 이 법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법률 위반에 대한 대응, 건강보호·사기방지를 위한 조치 등)를 시행한다.

제40조 [정보의 공개] 관할 관청은 식품·사료·화장품·생필품 등의 생산·취급·유통과 관련하여 건강에 대한 위협의 존재,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식품·사료의 명칭, 관련 기업의 이름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때 정보공개는 그 이익이 관련 당사자의 이익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정보공개 이전에 해당 제품의 생산자나 유통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공개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공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41조 [제품생산기업, 가축매매기업, 운송기업에서의 조치] 관할 관청은 살아 있는 동물과 그로부터 얻은 제품에서 약리적 효과가 있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확인되면, 그 약리적 효력이 있는 물질 및 해당 동물에서 그로부터 얻은 제품으로 이전되어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의 존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품생산기업, 가축매매기업, 운송기업을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관청은 조사를 받는 기업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인도·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동물을 살해 또는 안전하게 제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 [감시의 실행] 이 법 및 이 법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의 감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시행되며, 식품부는 이 전문가들의 요건과 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은,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모든 경찰도 생산·취급·유통되는 제품, 식용으로 쓰이는 살아 있는 동물, 사료가 있는 토지, 공간, 운송수단 및 이들이 속하는 장소에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출입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세관은 이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의 금지·제한의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할 수 있고, 검찰은 그 위반의 혐의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관련 법률규정과 함께 형사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43조 [샘플조사]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사람 및 긴급상황시의 경찰은 조사의 목적을 위해 샘플조사(Probenahme)를 할 수 있다(샘플의 처리를 위한 규정 첨부).

제44조 [수인, 협력, 제공의무] 제42조에서 규정한 감시를 받는 대상의 소유자, 그 대리인 등 관련자는 감시에 대하여 수인, 협력, 제공, 통보의 의무를 진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그 자신 내지 관련자가 형사상, 질서위반법상의 절차에 회부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5조 [중재절차]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동물로 만든 식품의 송달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관청과 처분권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자는 합의하여 그 분쟁을 전문가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분쟁은 조치가 통보된 시점으로부터 1달 이내에 중재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중재자는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감정해야 한다. 중재절차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준용되며 관할 법원은 행정법원이다.

제46조 [권한부여] 식품부는 공적 조사를 시행하는 기구의 최소요건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감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47조 [기타 권한부여] 식품부는 새로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허용과 관련하여 통일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감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48조 [주법상의 규정] 주는 감시의 시행을 위해 기타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다.

제49조 [특정 정보의 사용] 가축유통규정(Viehverkehrsverordnung) 제24조b에 따른 관할관청은 식품·사료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는 제공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최소 3년간 보존되어야 하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간 경과 후 삭제되어야 한다.

## 제8장 모니터링

제50조 [모니터링] 모니터링(Monitoring)은 제품에 함유된 농약 등 건강상 원치 않은 물질·약효가 있는 물질·중금속·세균·미생물의 양, 그리고 식용동물,

검사시 인간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었던 제품 등을 반복적으로 감시·측정·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1조 [모니터링의 시행] 주의 관할관청은 제품에 함유된 제50조가 규정한 물질의 양을 조사한다. 모니터링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의해 시행되고, 필요한 경우 관할관청은 검사를 위해 샘플을 요구하거나 채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제43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의 권한이 있는 자는 제품이 생산·취급·유통되는 토지와 사업장 등에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출입할 수 있다. 해당 장소의 소유자와 그에 의해 임명된 대리인은 샘플채취를 수인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자에게 협조할 의무를 진다.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되는 샘플은 경우에 따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관할관청은 모니터링 중 획득한 정보를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에,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이를 위험평가기구에 통보한다.

제52조 [행정규칙의 제정] 모니터링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모니터링의 계획은 주 대표자의 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행정규정으로 규율된다.

## 제9장 수출과 수입

제53조 [운송의 금지] 국내법 등에 위반되는 제품 및 식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제품은 수입할 수 없다. 이는 세관의 감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식품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54조 [다른 회원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의 조약체결국으로부터의 특정 제품]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유럽경제공동체와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식품·화장품·생필품은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일반규정은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이

경제·수입통제청과의 협력하여 정할 수 있다. 일반규정은 해당 제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자에 의해 요청될 수 있으며, 제품의 건강침해위험은 국제적 연구결과에 따라, 식품의 경우에는 독일의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신청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결정에 필요한 논거를 첨부하여 적절한 기간 안에 답변해야 한다. 식품이 이 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 이를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제55조 [세관과의 협력] 재정부와 세관은 협력하여 제품 및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의 반입을 감시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6조 [권한부여] 식품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제품, 식용동물의 수출과 수입을 일정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금지·제한하거나 일정조건과 결부시킬 수 있는 권한 및 이를 위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제57조 [수출, 기타 국내로부터의 반출] 화장품, 생필품, 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제품의 수출과 재수출에 관하여는 유럽연합규칙이 — 그 규칙이 식품법에 관하여 규율한 내용에 이 법이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 — 적용된다. 원치 않은 물질의 함량 때문에 생산·취급·유통이 금지되거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료의 수출은 금지된다.

## 제10장 처벌 및 벌금규정

제58조 [처벌규정] 이 법의 일부 규정 및 유럽연합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미수는 처벌된다. 다수인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과실범은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59조 [처벌규정] 이 법의 일부 규정 및 유럽연합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60조 [벌금규정] 제59조의 처벌규정을 과실로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범으로 처벌된다. 이 법의 일부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도 질서위반범으로 처벌된다.

제61조 [몰수] 제58조나 제59조를 위반한 범죄 또는 제60조를 위반한 질서위반 행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제62조 [권한부여] 식품부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환경부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제11장 결산규정

제63조 [사용료 및 비용]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직무수행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며, 식품부는 재정부, 경제기술부와의 협력 하에 요금관련규정을 자세히 규정할 수 있다.

제64조 [조사절차의 공적 수집, 공포]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은 조사절차규정집을 발간한다. 절차는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한다.

제65조 [임무수행] 식품부는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 위험평가기구에 국내의 권위 있는 연구소(Referenzlabor)를 지정·통보하고 정보를 통지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6조 [통계] 도살되는 동물, 고기의 검사와 그 결과는 통계청에 의해 통계로

작성·유지된다.

제67조 [위기시의 예외적 권한] 식품부는 공중에게 필수불가결한 식품, 화장품, 생필품의 공급, 동물에의 사료 공급, 동물로부터 얻은 제품의 생산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 법률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예외는 기한부이며 위태로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해제된다.

제68조 [예외의 허용] 식품, 화장품 또는 생필품의 생산·취급·유통에 관하여 공적인 감시가 아직 실행되지 않거나 법률이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에 맞게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물건에 관한 법률의 변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때 보호할 가치 있는 개인의 이익 및 해당산업의 일반적인 경쟁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국방, 경찰, 재난방지에 관한 기구의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식품의 생산·취급·유통 및 기타 필요한 범위 내에서도 예외가 인정된다.

제69조 [기타 예외의 허용] 기타 상황에서도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70조 [일정 사례에서의 법규] 유럽연합의 법률행위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여 즉시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식품부는 관련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71조 [공공의 참여] 이 법에 의한 법규에 제정은 유럽연합규정 제178/2002호 제9조가 규정한 공공의 참여에 의해 시행된다.

제72조 [외국과의 통상] 유럽연합 회원국 등 기타 외국의 관할관청과의 통상은 식품부가 담당한다.



제73조 [법규의 공고] 제70조에 따른 법규는 법규의 공고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상의 공고(elektronischer Bundesanzeiger)로서도 공  
고될 수 있다.

## 부록 4

### 일본의 식품 관련법

#### 1. 용어정의 및 규격관련 사항

##### □ 식품위생법상의 용어정의(제4조)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로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은 이것에 포함하지 않는다(식품위생법 제4조)
2.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과정 또는 식품의 가공 또는 보존을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화(混和), 침윤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식품위생법 제4조 제2항).
3. 천연향료란 동식물로부터 얻거나 그 혼합물로 식품의 착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을 말한다.
4. 식기란 음식기, 계량도구, 기타 식품 또는 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 수수 또는 채취용으로 제공되며, 또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기계, 기구 기타 물품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서의 식품채취에 이용되는 기계, 기구 기타 물품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또는 싸고 있는 것으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주고받은 경우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6.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식품용기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7. 영업이란 업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하고, 제조하고, 수입하고, 가공하고, 조리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또는 판매하는 것 또는 식기 또는 식기포장을 제조하고, 수입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업 및 수산업에서 식품의 채취업은 이것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영업자란 영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9. 등록검사기관이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 □ 일본 표준산업분류(총무성관할)상 음식서비스업(외식산업)의 정의

- 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조리한 음식료품, 기타 음식료품 또는 음료를 그 장소에서 마시거나 먹게 하는 사업소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조리한 음식료품을 그 장소에서 제공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에 배달하는 사업소 및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조리한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함.
- 음식점업의 정의(식품리사이클법) : 주로 주문에 대해 바로 그 장소에서 요리 기타 식료품 또는 음료를 음식시키는 장소를 지칭
  - ※ 조리란, 형상·성질을 변형시키는 가열, 절단, 조정(성형·양념)을 말하며, 단순히 재 가열하기만 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백화점, 유원지 등의 하나의 구획을 차지하는 음식서비스업이 영업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독립된 사업소라면 본 분류에 포함.

#### □ 일본요리

- 일본주변의 재료를 사용하여 일본국토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요리를 지칭함. 즉 일본에서 생산한 재료를 사용하여 일본에서 개발된 요리(백과사전적 의미).
  - ※ 농림수산성 무역·관세팀 수출촉진실에서 추진하는 「WASHOKU-Try Japan's Good Food」 사업은 재외공관에서 각국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

으로 일본산식재료를 사용한 일본요리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요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촉진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본산식재를 사용한 일본요리에 관심이 있음.

## □ 식품의 규격 및 기준관련 사항

-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 첨가물에 대한 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식품 첨가물의 성분규격이나 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첨가물 공정서”를 작성하고(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후생성고시 제 370호)),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조, 사용, 판매가 금지됨.
  - 식품첨가물의 역할은 ①식품의 제조나 가공을 위해 필요한 제조용제, ②식품의 풍미나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감미료, 착색료, 향료, ③식품의 보존성을 좋게 하기 위한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④식품의 영양성분을 강화하는 영양강화제로 구분됨.
  - 2008년 7월 기준 지정되어 있는 첨가물의 식품위생법상 분류에 따르면, 지정첨가물 377품목(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제1에 수록), 기존첨가물 418품목(기존첨가물명부수록품목리스트에 수록), 천연향료 612품목(천연향료기원물질 리스트에 수록), 일반음식물첨가물(일반음식품첨가물품목리스트에 수록)에 72품목이 수록되어 있으나 모든 식품이 대상이 됨.
- 보건소에서는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유통여부를 상시 감시지도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서는 인간의 입이나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조리기구나 식기 및 식품을 포장하는 랩이나 영유아가 접하는 장난감이나 채소, 음식기의 세정제 등에도 식품이나 첨가물과 동일하게 규격기준이 정해져 있음.
- 일반적으로 식품 및 포장용기 등의 규격기준은 ①성분규격, ②제조기준, ③가공기준, ④조리기준, ⑤사용기준, ⑥보존기준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규격과 기준은 ①식품, ②유제품, ③첨가물, ④기구 및 용기포장, ⑤장난감, ⑥세

정제에 적용됨.

## 2. 영업 허가관련 사항

### □ 영업허가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52조에 근거)

- 식품관계영업 중 34개 업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영업허가 필요
-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그 장소에서 조리가공하지 않는 경우)
  - 신선육, 신선어패류, 우유 등을 판매하는 경우(영업허가 필요)
  - 주스류, 청과물, 과자류, 도시락, 생선말린 것, 햄 등(영업허가 불필요)
- 식품을 조리,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농산물에 간이가공과정을 거쳐 제공하는 경우(영업허가 불필요)  
예시) 군고구마, 솜사탕, 팝콘, 군밤 등
  - 주스, 맥주, 꼬치구이, 우동, 핫도그 등과 같은 경우(영업허가 필요)
-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기준
  - 고정점포기준, 자동차기준, 가설점포기준 등

####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허가대상 >

보건소를 통해 허가가 필요한 사항	
음식점 영업(허가)	간장 제조업(허가)
찻집 영업(허가)	소스류 제조업(허가)
과자 제조업(허가)	주류 등의 제조업(허가)
팥고물류 제조업(허가)	두부 제조업(허가)
아이스크림류 제조업(허가)	낫도 제조업(허가)
우유처리업(허가)	면류 제조업(허가)
유제품 제조업(허가)	반찬 제조업(허가)
집유업(허가)	통(병)조림식품 제조업(허가)

우유류 판매업(허가) 식육 처리업(허가) 식육 판매업(허가) 식육제품 제조업(허가) 어패류 판매업(허가) 어패류 경매영업(허가) 어육제품 제조업(허가) 식품의 냉동 또는 냉장업(허가) 식품의 방사선조사업(허가) 청량음료수 제조업(허가) 유산균음료 제조업(허가)	첨가물 제조업(허가) 제과재료 등 제조업(허가) 분말식품 제조업(허가) 반찬류 등 반제품 제조업(허가) 조미료 등 제조업(허가) 어패류 가공업(허가) 식료품 등 판매업(허가) 식용 유지방 제조업(허가) 마가린 또는 쇼트닝 제조업(허가) 된장 제조업(허가) 얼음 제조업(허가) 얼음 판매업(허가)
보건소를 통해 인증·신고·보고가 필요한 사항	
복어 취급소(인증) 복어 가공제품의 판매업(신고) 제분업(보고) 두부가공품 판매업(보고) 절임식품 제조업(보고) 생과자 판매업(보고)	장난감 제조업(보고) 어패류 가공품 판매업(보고) 유제품 판매업(보고) 아이스크림류 판매업(보고) 기타 식료품 제조업(보고) 행상(신고·감찰)

<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 >

허가업종	대상 업무
과자제조업	빵, 사탕, 껌 등의 과자류를 제조하는 영업
청량음료제조업	주청분이 1용량퍼센트 미만인 음료(유산균음료,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를 제조하는 영업
식용유지제조업	동물성, 식물성을 불문하고 모든 식용으로 제공되는 유지를 제조하는 영업
첨가물제조업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통해 규격이 정해져 있는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소분을 포함)을 실시하는 영업
분말식품제조업	분말주스, 기타 분말식품(과립, 정제, 캡슐을 포함)을 제조하는 영업
식료품 등 판매업	도시락류, 유제품 기타 조리가공을 요하지 않고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3. 위반조치

- 형량상한제를 취하고 벌금으로 대신 가능

### 4. 법개정 예고제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5년 주기로 개편.
- JAS법은 5년 주기로 개편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포지티브리스트제는 5년 주기로 개편
- 식품안전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본적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편  
→ 법률의 일부 또는 전체적인 개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5. 법 해설서/Q&A

- 대부분의 법률에는 해설서나 Q&A를 발행하여 홍보하고 있음
  - 법률의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해설서나 홍보자료 작성

### 6. 식품안전문제관련 분쟁발생시 중재기관 및 법적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9조(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의 촉진)에 근거하여 분쟁해결을 촉진
  - 지방공공단체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전문적인 지견에 근거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고충처리의 알선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 도도부현은 시

정촌(특별구 포함)과 연계를 취하면서 주로 고도의 전문성 또는 광역적인 견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고층처리의 알선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고층에 유연하고 탄력적을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계약상 분쟁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소비자계약법
- 식품위생법 제2장(식품 및 첨가물), 제6조 제4항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분쟁 발생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분쟁을 조정하고 있음(특히 안전문제)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의 경우 처벌받음
- 제조물 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인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

## 7. 농림수산성설치법

- 제3조 임무
  - 농림수산성은 식료의 안정공급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어업자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 등의 진흥,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 산림의 보존배양 및 산림생산력의 증진 및 수산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제4조
  - 제3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소관업무
- 34항(식품산업기획과 소관업무관련)
  -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그 외 소관에 관련된 사업의 진흥을 위한 금융상의 조치에 관한 기획 및 입안 및 조성에 관한 일



## 8. 농림수산성조직령

### ○ 제4조(총합식료국의 소관업무)

1. 식료의 생산 및 유통합리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2. 음식료품(주류를 제외. 이하 동일) 및 유지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일
3. 농림수산성의 소관업무에 관련 된 물자(농림수산업전용물품을 제외. 제2호, 제4호, 제5호, 제36조제1호, 제45조 제3호 및 제4호 및 제47조 제1호에서도 동일)의 유통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4. 도매시장의 정비 및 중앙도매시장의 감독에 관한 일
5. 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및 상품투자의 감독에 관한 업무 중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것에 관한 것
6.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한 사무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일(타 국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7. 지역전통예능 등을 활용한 행사의 실시를 통한 관광 및 특정지역상공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관한 일
8. 식품산업 기타의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한 사업에서의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9. 주요식량 및 이것을 주요 원료로 하는 음식료품(이하 「주요식량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총괄에 관한 일
10. 주요 식량의 생산, 집하, 소비 기타 수급조정에 관한 일
11. 주요 식량수입에 관한 납부금의 징수 기타 수입조정에 관한 일
12. 주요식량의 매입 및 판매가격의 결정 및 주요식량의 가격안정에 관한 일
13. 수입사료의 매입, 보관 및 판매실시에 관한 일
14. 농산물 검사법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 검사에 관한 일
15.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의 식량관리계정, 업무계정 및 조정계정의 경리에 관한 일
16. 식료안정공급특별회계의 식량관리계정 및 업무계정에 속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물품관리에 관한 일

○ 제5조 소비·안전국의 소관업무

1. 농림수산성의 소관업무에 관한 일반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일
2. 농림수산성의 소관사무에 관한 물자의 표시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3. 일본농림규격 및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표시기준에 관한 일
4. 농림수산성의 소관업무에 관한 물자에 대한 물가대책에 관한 사무 중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것의 총괄에 관한 일
5. 농림수산성의 소관업무에 관한 물자의 소비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6. 농림수산성이 소관사무 중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7.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인해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에 관한 업무 중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한 것의 총괄에 관한 일
8. 농림수산물외의 식품으로서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업 중 생산과정에 관련된 것에 관한 일(식품위생에 관한 일 및 환경청의 소관에 관련된 농약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것을 제외)
9. 농지의 토양오염방지 및 제거에 관한 일
10. 병충해의 방제(누에병의 예방에 관한 것을 제외), 가축(가금 및 꿀벌을 포함, 이하 동일) 및 양식수산동식품의 위생 및 수출입에 관한 동식품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일
11. 수의사 및 수의기숙사에 관한 일
12. 비료, 농약, 사료 및 사료첨가물 및 동물용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의료기기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일(비료에 있어서는 생산국의 소관에 속하는 일 및 경제산업성이 그 생산을 소관하는 비료의 생산에 관한 것을 제외하며, 농약 및 사료에 있어서는 생산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13.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생물다양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2003년)의 시행에 관한 일
14. 농업자재심의회의 서무에 관한 일

○ 제6조 생산국 소관업무 중 식품산업 관련업무

16.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서 지적 재산의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 제7조 경영국 소관업무 중 식품산업 관련업무

3.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세제에 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에 관한 일
20.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되는 사업의 진흥을 위한 금융상의 조치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21.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되는 사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에 대한 조정에 관한 일
22.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되는 사업의 진흥을 위한 금융상의 조치에 관한 조성에 관한 일(임야청 및 수산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 제37조 식품산업기획과 소관업무

1.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정책기획 및 입안에 관한 일
2.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의 진흥을 위한 금융상의 조치에 관한 사무의 연락조정에 관한 일
3.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세제에 관한 조정에 관한 일
4.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외자도입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5.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기술개발 및 발달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6.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7.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 중 상업 이외의 것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일
8. 7호에 제시한 것 이외에 식품산업 기타의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련된 사업 중 상업이외의 것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일
9. 신사업창출촉진법의 시행에 관한 것(농촌진흥국의 소관에 속하는 것을 제외)
10.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한 사업 중 자원의 유효한 이용의 확보에 관한 사무의 총괄에 관한 것
11. 산업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특정시설의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것

○ **농림수산성조직령 제38조 식품산업소관업무**

1. 식품산업 기타 농림수산성의 소관에 관한 사업의 합리화에 관한 일
2. 식료의 안정고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외식산업의 발달,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일
3. 음식료품(조요식량인 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하는 것을 제외) 및 유지의 생산, 유통 및 소비증진,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것

## 2. 일본의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한 식품산업육성정책 관련사업

### 1. 식품제조업 경영기반강화 대책사업

식품산업·농업연계강화사업

#### 1.1. 식료산업클러스터 전개사업

- 1) 지역식료산업클러스터 기능고도화 촉진
  - 가) 식료산업클러스터 체제강화
    - ① 식료산업클러스터기획운영
    - ② 코디네이터의 활동지원
    - ③ 클러스터활동 홍보
    - ④ 산학관 연계강화 촉진지원
    - ⑤ 수요창출지침작성
    - ⑥ 지역식품개발지원
    - ⑦ 기술력강화 인재육성
  - 나) 식료산업클러스터 연계체제 전개
  - 다) 식품산업지원 정보발신기능 강화
- 2) 식료산업클러스터 기능고도화지원
  - 가) 식품산업클러스터 기능고도화 추진
    - ① 식료산업클러스터 기능고도화 추진
    - ② 식료산업클러스터 기능고도화 대책
      - ㉠ 전국식료산업클러스터 협의회의 설치
      - ㉡ 코디네이터후계자 인재육성
      - ㉢ 상품개선지원회의 개최
      - ㉣ 식품산업구조 조사
      - ㉤ 식농연계사례 등 정보활동 지원

- 식농연계원료조달원화화 검토위원회의 개최
- 국산원료조달사례 조사
- 식농연계율 조사
- 식농연계 세미나 개최
- 조사·세미나실시 정보제공
- ㉞ 농수산물기능성활용 추진
  - 기능성성분·활용성 등 조사
  - 기능성식품의 시제품 및 시장성 등 평가
- 나) 식품산업클러스터추진 기술대책
  - ① 식료산업클러스터 축적기술대책의 수립
  - ② 식료산업클러스터형성추진을 위한 행사개최
  - ③ 코디네이터를 통한 연계지원
  - ④ 지적재산의 전략적 활용
  - ⑤ 연계를 위한 조사·정보의 발신
  - ⑥ 팜플릿작성·우송
  - ⑦ 연계추진
- 다) 외식산업·농업 등 연계 비즈니스확립 지원
  - ① 종합추진
  - ② 연계정보 등 종합발신
  - ③ 연계비즈니스확립지원
- 3) 지역식품브랜드육성·관리지원
  - 가) 지역식품브랜드육성·관리위원회의 운영
  - 나) 지역식품 브랜드확립지원
    - ① 지역식품 브랜드보호 지원
    - ② 지역식품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 다) 지역식품브랜드화 지원
    - ① 우량식품·기업 등 추천
    - ② 전국지역식품 행사개최

- ③ 외식산업행사 개최
- 라) 지역식품브랜드 육성·관리대책
  - ① 브랜드평가의 추적조사·분석
  - ② 브랜드유지·관리세미나개최
  - ③ 브랜드조언자파견

## 1.2. 식품산업경영기반강화대책사업

- 1) 식품산업 HACCP 등 보급촉진사업
  - 가) HACCP도입 세미나 등을 개최
  - 나) HACCP책임자·지도자양성연수의 실시
  - 다) 식품의 전사적 품질관리체제구축의 보급계발
- 2) 외식산업원산지 등 표시대책사업
- 3) 식품기업신뢰확보대책추진사업
  - 가) 법령준수확립세미나 실시
  - 나) 정보수집제공의 추진

## 2. 식품유통효율화대책사업

### 2.1. 식품유통합리화·효율화 종합 대책사업

- 1) 신기술활용 비즈니스모델 실증·보급사업
  - 가) 유통효율화추진사업
    - ① 유통효율화추진협의회
    - ② 신기술 등 보급
  - 나) 신기술활용비즈니스모델지원사업
    - ① 신기술활용비즈니스모델 검토위원회

- ② 신기술활용비즈니스모델실증
- 다) 리사이클용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① 리사이클용기 유통관리시스템 검토위원회
  - ② 리사이클용기 유통관리시스템 개발
- 2) 지역유통모델구축 지원사업
  - 가) 모델검토사업
  - 나) 모델실증사업
- 3) 도매시장연계 물류최적화 추진사업
  - 가) 연계강화추진검토사업
  - 나) 연계물류검토대책사업
  - 다) 연계물류실증사업

## 2.2. 식품소매기능고도화추진사업

- 1) 식품소매업 비용절감·기능강화 구조개선사업
  - 가) 식품소매업 비용절감화 사업
    - ① 식품소매업 비용절감 모델검토·실증사업
    - ② 지역수요파악 마케팅강좌사업
    - ③ 식품소매업 경영고도화 지원사업
  - 나) 식의 정보제공 강화사업
  - 다) 식품유통구조개선계획 지원사업
- 2) 식품유통고부가가치모델추진사업
  - ① 모델추진검토사업
  - ② 지산지소 추진모델사업



### 3. 전국산업국제경쟁력강화 대책사업

#### 3.1. 동아시아 산학관네트워크구축 지원사업

- 1) 해외 정보공유화 등 촉진사업
- 2) 식품산업 해외전개지원매뉴얼 작성
- 3) 지적재산권·브랜드보호지원사업

#### 3.2. 식품산업해외 인재육성 지원사업

- 1) 전문가과건사업
- 2) 식품기업의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

#### 3.3. 식품산업기술해외 전개실증사업

### 4. 식품산업 환경대책 종합추진사업

#### 4.1. 식품산업 CO2절감 촉진대책 사업

- 1) 계몽보급사업
- 2) 우수사례표창사업
- 3) 실증사업

#### 4.2. 식품자원순환경성추진사업

- 1) 인증제도구축사업
- 2) 보급계몽사업

#### 4.3. 식품순환자원경제적 처리시스템 실증사업

- 1) 처리시스템 구축사업
- 2) 도시농가 등 수요확보체제 정비사업
- 3) 운용실적평가·검토사업

#### 4.4.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제도원화화 추진사업

#### 4.5.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용기포장 재 상품화시스템 검토사업

#### 4.6. 외식산업 바이오매스 이용실증사업

- 1) 나무젓가락 회수시스템 지역실증모델사업
  - 가) 나무젓가락 지원이용추진계획책정비
  - 나) 회수박스설치 및 포스터 등 작성비
- 2) 외식산업 바이오매스이용 중앙협의회 종합추진사업

### 3. 일본의 식품 관련법 목적 및 개정 시기

#### 1. 식품안전기본법

##### ○ 목 적

-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과 국민의 식생활을 영위하는 환경의 변화에 정확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①식품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을제정하는 동시에 ②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식품 관련사업자의 업무와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③시책의 책정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방침을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④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제정년도

- 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8호

## 2. 식품위생법

○ 목 적

- 이 법률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중위생에 필요한 규제와 조치의 구축을 통해, ①음식에서 기인하는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②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개정년도

- 1947년 12월 24일, 법률 제233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 3. 건강증진법

○ 목 적

- 이 법률은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의 중요성이 증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①국민건강 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②국민의 영양 개선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제정년도

- 2004년 8월 2일, 법률 제103호

#### 4. 농약단속법

##### ○ 목 적

- 이 법률은 ①농약에 대한 등록제도의 설정, ②판매 및 사용의 규제 등의 실행에서 ③농약의 품질 적정화와 안전·적정사용의 확보를 취지로 하여, 농업생산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법 제정년도

- 1948년 7월 1일, 법률 제82호

#####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일,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3호

#### 5. 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 ○ 목 적

- 이 법률은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 등에 관한 규제, 사료의 공정규격의 설정 및 이에 따른 검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개선을 꾀하여 공공의 안전확보와 축산물 등의 생산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정년도 : 1953년 4월

##### ○ 최종개정 : 2007년

#### 6.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 ○ 목 적

- 이 법률은 적정·합리적인 농림물자의 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시켜 ①농림물자의 품질 개선, ②생산의 합리화, ③거래의 단순 공정화(公正化) 및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농림물자의 품질에 관한 적정한 표

시를 실행시켜 소비자의 선택에 기여하여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개정년도
  - 1950년 5월 11일, 법률 제175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일, 2005년 6월 26일, 법률 제87호

## 7. 농산물 검사법

- 목 적
  - 이 법률은 농산물 검사 제도의 설정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적정·확실한 실시를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①농산물의 공정·원활한 거래와 ②품질의 개선, ③농가경제 발전과 ④농산물 소비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개정년도
  - 1951년 4월 10일, 법률 제144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일,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21호

## 8.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

- 목 적
  - 이 법률은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제정하기 하는 등으로부터 안전한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하며, 국민건강의 보호 및 육우생산 및 낙농, 쇠고기에 관련되는 제조, 가공, 유통 및 판매 사업, 음식점 영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 표

- 2002년 6월 14일, 법률 제70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19호

## 9. 소개체식별을 위한 정보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목 적

- 이 법률은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적정 관리 및 전달에 관련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의 기초를 제공하고, 쇠고기에 관련된 해당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며 축산 및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 표

- 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2호

## 10. 식품의 제조과정의 관리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HACP수법 지원법)

- 목 적

- 이 법률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식품으로부터 기인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의 방지와 적절한 품질의 확보를 보증하고, 관리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며, 식품 제조 또는 가공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 표

- 1998년 5월 8일, 법률 제59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8년 6월 6일, 법률 제55호

## 11. 비료단속법

### ○ 목 적

- 이 법률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비료의 공정한 거래와 안전사용 확보를 위해 비료의 규격 및 사용기준의 공정, 등록, 검사를 실행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함.

### ○ 발 표

- 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7호

###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7년 3월 30일, 법률 제8호

## 12. 식교육기본법

### ○ 목 적

- 이 법률은 최근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이 일생동안 건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돈독한 인간성을 키우게 하기 위해 식교육의 추진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기 때문에, ①식교육에 관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②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③식교육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식 교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현재에서 미래로 향해 가는 동안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생활과 활력이 넘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 법 제정년도

- 2005년 6월 10일, 법률 제63호

## 13. 식료·농업·농촌기본법

### ○ 목 적

- 이 법률은 ①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한 시책에 관한 기본이념 및 실현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②국가와 공공단체의 책무 등의 규명으로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련된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 제정년도

- 1998년 7월 16일, 법률 제106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일, 2005년 7월 29일, 법률 제89호

#### 14.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식품리사이클법)

○ 목 적

- 이 법률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및 열회수 그리고 식품 폐기물 등 발생의 억제 및 감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 관련사업자에 의한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식품에 관련된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확보 및 식품 폐기물 배출의 억제를 의도함과 함께 식품 제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 표

- 2000년 6월 7일, 법률 제116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7년 6월 13일, 법률 제83호

#### 15.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목 적

- 이 시행령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4



항 제2호 및 제5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8조 제1항과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음.

○ 발 표

- 2001년 4월 25일, 정령 제176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7년 11월 16일, 정령 제335호

## 16. 특정 농산가공업 경영개선 임시 조치법

○ 목 적

- 이 법률은 최근의 농산물가공품 등의 수입에 관련된 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특정 농산물가공업자의 경영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경제적 환경에 적응시켜, 농업 및 농산가공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 표

- 1988년 7월 1일, 법률 제65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58호

## 17. 산업 활력재생 특별 조치법

○ 목 적

- 이 법률은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는 점에 입각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재구축, 공동사업재편, 경영자원의 재활용, 기술 활용사업 혁명과 경영자원 융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고용 안정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및 사업재생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등 산업의 활력재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내각은 산업 활력재생 특별 조치법의 제2조 제5항 제3호 및 제6호, 제24조 제3항, 제4항, 제8항과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과 중소기업의 현대화 자금 조성법(1956년, 법률 제105호) 제5조 규정에 근거하여, 이 명령을 제정하였음.

○ 발 표

- 1999년 8월 13일, 법률 제131호

○ 개정회수 및 일자

- 최종개정, 2008년 6월 11일, 법률 제61호

○ 발표 및 개정

- 발표, 1999년 8월 27일, 정령 제258호
- 최종개정, 2008년 5월 21일, 정령 제180호

## 부록 5

---

# 국내 식품 관련 법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49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시행

**제15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0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7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2008.2.29, 2008.6.13>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 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6.12.28]

##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 등

**제4조 (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력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5조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6.9.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7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 ① 농림수산물부장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농림수산물부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물부장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물부장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8.4]

- 제8조 (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특산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8.2.29>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 제12조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2008.2. 29, 2008.2.29>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
  2. 생산·저장(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농산물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22] 제15조의2제2항의제15조의2제1항의

**제16조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개정 2001.1.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 제6장 벌칙

**제34조의2 (벌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본조신설 2002.12.26]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5.8.4, 2008.6.13>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우수농산물인증표시·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 [전문개정 2005.8.4]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1.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나.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다.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

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장 양곡의 관리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개정 1999.1.21>)**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2008.2.29>

③ 삭제 <1999.1.21>

**제20조의2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3장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관리<개정 2001.1.26>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친환경농산물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6]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제3조 (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②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2.12.11, 2008.2.29>

③ 삭제 <1999.3.3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3조의2 (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중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하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력·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3.31]

#### 제4장 농약의 유통관리 등

**제20조 (농약의 표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의 명칭·유효성분별 함유량·적용병해충명·약효보증기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23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방제업자 그 밖의 농약사용자는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는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7.12.21>

②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장 축산물의 기준·규격 및 표시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축산물위생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 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판매 등의 일시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③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에 들어있는 항생물질, 농약등 유해성 물질

의 잔류허용기준과 축산물에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등 첨가물의 사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5.24, 2004.1.29,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및 축산물의 가공등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용기등의 규격등<개정 1999.2.5>)**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등이 정하여진 경우 작업장에서는 그 규격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제6조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 1999.2.5>)**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5>

###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4.1.29, 2006.3.24, 2008.2.29>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와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작업장·업소 또는 농업인의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이하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⑤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6.3.24, 2007.12.21, 2008.2.29>

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7.12.21, 2008.2.29>

⑦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6.3.24, 2007.12.21, 2008.2.29>

⑧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7.12.21, 2008.2.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를 제외한다)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⑨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9, 2007.12.21>

⑩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2006.3.24, 2007.12.21, 2008.2.29>

⑪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의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2007.12.21, 2008.2.29>

⑫ 정기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실시비용 및 내용 등과 제1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전문개정 2001.12.31]

## 제5장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6.3.24, 2008.2.29>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동일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2006.3.24>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3.24>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2008.2.29>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 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3.24, 2008.2.29>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1 법률 제8755호], 시행일 2008.12.22,

**제3조 (출생 등의 신고)** ①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표의 부착)**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구역 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5조 (낙농진흥회의 설립)** 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낙농관련단체등으로서 진흥회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1999.9.7>

③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14조 (원유검사)** ①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원유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②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원유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유검사의 결과를 집유조합 및 원유수요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집유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검사기관으로부터 원유검사결과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계약낙농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09호]

### 제1장 총칙

**제4조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2008.2.29>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5조 (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 (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8조의2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제8조의3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개정 2008.3.28>

**제18조 (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 사항과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22조 (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2009.3.29] 제23조제5항

##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개정 2008.3.28>

**제42조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의2 (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의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8.3.28]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8.3>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3.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 (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 1의3.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12.3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6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사업자”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5. “유기가공식품”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회원 상호 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당 산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 등 식품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 등을 일정지역에 집중시키고 식품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기준·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식품명인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

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 상황 등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이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기능전수를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식품명인 활동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2. 컨설팅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3. 컨설팅 결과와 융자·보조 등 지원수단과의 연계
4. 그 밖에 컨설팅 기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부장관은 식품사업자 또는 컨설팅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산지가공산업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예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의 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및 신고
8.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10.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1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12.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점도구역의 지정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별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산지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① 정부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식품성분표의 발간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의 품목·기준·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절차와 기준,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와 선정 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와 이를 판매·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유기가공식품의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
- 2. 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3.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4.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5.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 6.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8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한 자
2. 제25조제9호를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7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명인 지정을 받거나 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유통·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임산물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임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나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에게 품질향상과 생산 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실시시기, 그 밖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개정 2007.12.21>

**제39조 (임산물 규격의 고시)**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산물의 종류별로 규격이나 품질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이나 품질이 고시된 임산물 중 합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격이나 품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도 그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2008.6.13 법률 제9121호], 시행일 2008.12.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위해성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식품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후에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 또는 위해의 내용으로 보아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

2.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실한 경우

③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수·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9.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3.9.29, 2005.1.27, 2006.9.27, 2007.12.21>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라 함은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라 함은 음식기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수수 또는 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있어서 식품의 채취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5.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
- 5의2. “위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6. “표시”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수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6의2. “영양표시”라 함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농업 및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의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식품위생”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집단급식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9의2.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개정 1995.12.29>

**제7조 (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2.8.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

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9조 (기준과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8>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제10조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제10조의2 (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중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06.9.27>]

**제10조의3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과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제5장 식품등의 공전<개정 1995.12.29>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5.24>

## 제6장 검사 등<개정 1991.12.14>

**제13조 (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8.26]

## 제7장 영업

-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 ② 삭제<1995.12.29>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 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2005.3.31>
-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3.31, 2008.2.29>

**제32조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

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8.26]

**제32조의3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42조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식품위생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29, 1999.5.24, 2005.1.27, 2008.2.29>

1.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국민영양의 조사·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 제1절 동업자조합

**제44조 (설립)** ①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2, 2008.2.29>
- ④ 조합은 제3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 ⑤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1988.12.31>

### 제2절 식품공업협회 <신설 1991.12.14>

**제52조 (설립)** ①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으로 국민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12.29>
-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

## 제12장 보칙

**제71조 (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1995.12.29, 2000.1.12>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8.12.31, 2002.8.26>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12.2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31, 1994.12.22, 2000.1.12>

## 제13장 벌칙

**제74조 (벌칙)**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마황)·부자(부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조·가공·조리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종전 제74조는 제74조의2로 이동 <2005.1.27>]

**제74조의2 (벌칙)** 제4조 내지 제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8.26>

[제74조에서 이동 <2005.1.27>]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제7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56조제1항·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76조 (벌칙)**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12, 2002.8.26>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1. 제10조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4항·제5항, 제2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제1항 및 제2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출입·수거 또는 압류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의2. 제20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영업자
4. 삭제<2000.1.12>
5. 제29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6.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폐쇄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7.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등을 함부로 제거 또는 손상한 자

**제77조의2 (벌칙)**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7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06.12.28>

1.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8.12.31, 1995.12.29, 2000.1.12, 2002.8.26, 2005.1.27, 2006.9.27>
1. 제3조, 제26조제1항 및 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5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1의2.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2.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의2.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 3의3.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의4.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5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6. 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③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7.12.2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5.12.23, 2007.12.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23, 2007.12.21>

**제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80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적용의 특례)** 제78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41호]

### 제2장 영업

**제5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4.11, 2008.2.29, 2008.3.2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품목제조신고 등)**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조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준·규격 등에 적합하고, 제18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판매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검사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의 기준·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29>

###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14조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 하여금 당해 식품의 기준·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제17조 (표시기준)** 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건강기능식품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원료·성분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을 수록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2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훈련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

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제27조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②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단체설립)** ①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20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시행일 2008.12.15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5조 (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2008.3.21 법률 제8943호], 시행일 2009.3.22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0.1.1] 제11조제1항

**제12조(영양성분 색상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식품을 우수식품으로 하며, 그 우수식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이하 “색상 표시”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성분을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0.1.1] 제12조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포장 등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52호]

### 제4장 영업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 취수량(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 (기준과 규격)**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

(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표시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수처리제),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제품명(제품명)의 사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4호], 시행일 2009.3.22

### 제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위생·안전관리)** ①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염관리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0조의3 (품질표시)** ① 수입한 염과 염제조업자(부산물염을 제조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제조한 염의 경우에는 해당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7]

**제25조 (식용염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염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천일염
2. 이온 교환막식 기계제법을 이용한 염
3. 재제조된 염
4. 가공된 염(세척·분쇄·압축의 방법이 사용된 것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3장 해양개발 등

#### 제3절 해양산업의 육성

제25조 (수산업의 육성 등) 정부는 지속적인 수산물의 생산기반 유지·확충과 생태적 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 곽명섭. 2004. “식품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입식품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국회보」 통권460호: 108-113. 서울: 국회사무처.
- 권배근. 2007.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법적 개선방안”, 「한양법학」 21: 201-219. 한양법학회.
- 김명환·김병률·유남식. 1998.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용. 2004. “농산물 표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정연구」. 10: 89-120. 농정연구센터.
- 김성용·이계임. 2002. “농산물 품질인증 사용여부의 결정요인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36(4): 45-52. 경상대학교.
- 김성용·이계임. 2001. “식품표시제도의 효과와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 「농촌경제」 24(4): 1-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노영화·김인숙. 1999. 「식품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주요국 식품안전 관리현황 조사.
- 류창호. 2004.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식품안전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박동규·유남식. 1995.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제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방호경. 2004.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변무웅. 2007. “식품안전 영역의 사전대비 원리”. 「한양법학」 21: 339-364. 한양법학회.
- 송송이. 2005. 「원산지규정의 이해와 주요 FTA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비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양병우·박봉균·이병오·황수철. 2003. 「축산식품 안전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농정연구센터.
- 유럽건강소비자국. 2006. 「건강소비자국 보고서」.
- 유영철. 2004. “주요 선진국 식품행정체제의 변화와 방향: 위험분석에 기초한 식품행정조직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2): 173-197. 서울행정학회.
- 이계임·최지현·김민정. 2004.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최지현·김민정·한규재. 2005a. 「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최지현·김민정. 2005b.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기현. 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식품안전 정보 전달 체계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 이동필·성명환·이계임·김철민·황수철·이정연. 2001. 「식료의 안정적 공급 및 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세정. 2006. 「건강기능식품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원우·송재성·이철호. 2007. “식품안전법제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식품법포럼.
- 이종영·김도희. 2004. 「영양표시 의무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부. 2002. 「영양표시를 통한 농축산물 브랜드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 최지현·이계임·김철민·김민정. 200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한응수. 2004. “식품안전법령의 문제점과 기본법 제정 원칙”. 『농협경제연구』 33: 77-117. 농협대학 농협경영연구소.
- 황순옥·이중근·조양희·장경원·이학주. 2003. 「식품등 표시기준 제도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07.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 Bernues, A., A. Olaizola, and K. Corcoran, “Labeling Information Demanded by European Consumers and Relationships with Purchasing Motives, Quality and Safety of Meat”, *Meat Science* 65(2003):1095-1106.
- Bureau, J-C. and Valceschini, “European Food-Labeling Policy: Success and Limitations”,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34(2003):70-76.
- Caswell, J.A., and E.M. Mojduszka. “Using Informational Labelling to influence the Market for Quality in Food Produc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st*. 82(2000): 1248-1253.
-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White Paper on Food Safety.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Food Quality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Designations of Origin, and Certificates of Special Charac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Working Document of the Commission Services, August 2004.

- Golan, E., F. Kuchler, and L. Mitchell, Economics of Food Labeling, USDA, ER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umber 793.
- Kim, S-Y., R.M. Nayga, and O. Capps, Jr. "The Effect of Food Label Use on Nutrient Intakes: An Endogenous Switching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25(July 2000): 215-231.
- Kinsey, J. "GATT and the Economics of Food Safety", *Food Policy*, April 1993: 163-176.
- Kwak, No-Seong et al. "Food Safety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Critical Reviews in Food Science and Nutrition* 39(6)(1999): 539-549.
- Serge Frechette. 2000. *Biotechnology, Food and Agriculture Disputes or Food Safety and International Trade*. 26 Canada-U.S. L.J.
- Warwick, P. M., "Point of View: Energy Factors for Food Labelling and Other Purposes should be Derived in a Consistent Fashion for all Food Components", *British Journal of Nutrition*, 84(6)(2000), 897-902.
- 吉田利宏, 「新食品表示制度」, 一橋出版, 2002.
- 新山陽子, 「食品安全, システムの實踐理論」, 昭和堂, 2004.
- ジュリー, A., カズウエル, 「食品安全と栄養の經濟學」, 農林統計協會, 2004.
- 池戸重信外, 「安心を届ける食品のトレーサビリティ」, *science forum*, 2003.
- 佐藤達夫 □□食品表示の見方がよくわかる本□□, 中経出版, 2001.
- 中村光次 「食品表示制度の現状と課題」 □□農林金融□□ 2003.



---

식품 관련 법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1.

발 행 2008. 11.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mailto: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